

기본 | 19-20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A Study on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김지혜, 이재춘, 이길제, 김정인, 조한진

기본 19-20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A Study on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김지혜, 이재춘, 이길제, 김정인, 조한진

■ 연구진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이재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외부연구진

김정인 (주)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조한진 파리 라빌레뜨 건축대학교 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를 정의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 (구성요소) ① 주거지원 정책: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을 통한 양육 가구 지원 정책, ②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정책, ③ 주거서비스 지원정책: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는 주거관련 서비스
- 2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별 지원 현황을 지역, 주택유형, 아동수, 응답기준 아동연령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구성요소별 개선점을 도출
- 3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 주거지원 정책 발전방안: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 양육에 필요한 주거요소들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층 및 세대 혼합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정책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혜택 제공
- 2 주거인프라 확충방안: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주거인프라 공급 확대,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추진, 비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인프라 공급 방안 마련
- 3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공공부문의 주거서비스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 공동체 중심의 양육 서비스 제공
- 4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 정립
 - ‘양육 친화’와 ‘주거정책’의 개념을 검토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와 범위를 정의함
- 둘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분석
 - 저출산 대응 정책과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양육가구의 주거지원 현황 및 개선점 도출
 - 양육가구의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 및 주거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함
- 넷째,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 제시
 -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과 함께 저출산 대응정책은 출산장려보다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기조인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및 촘촘하고 안정한 돌봄체계를 위한 여건 확충과 관련된 주거정책을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에서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와 달리 양육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음
 - 기존 선행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목표 변수로 설정하고 저렴주택 공급, 대출 지원 방안 등의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는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주거 인프라,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등 주거정책 전반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또한 법률적(사전적), 학문적, 사회적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 및 범위를 정립하였음

2.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함
 - 양육의 대상은 양육친화의 사회적 개념을 감안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영유아(만0~6세) 및 초등학생(만7~12세))으로 설정함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주거지원 정책,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주거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구성됨
 - 주거지원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의미함
 -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양육과정에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함

-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는 주거 관련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양육생활지원 서비스와 양육공동체지원 서비스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공간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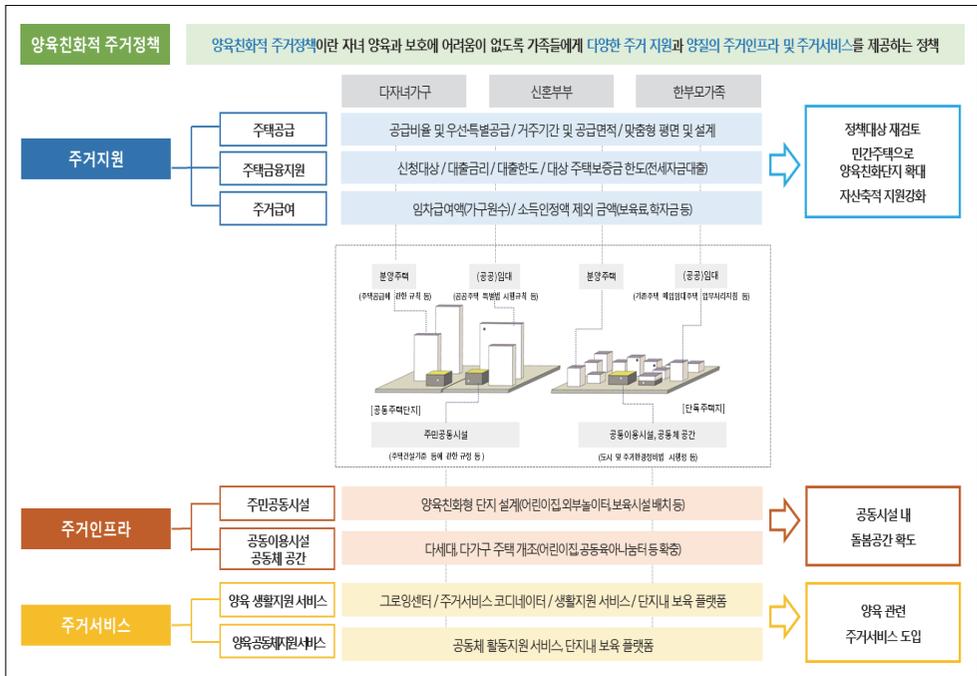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정의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고려할 때,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마을단위 공간으로 설정함
 - 주거인프라의 공간 단위는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근린차원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로 설정하고, 단독주택은 소규모 다가능시설로 설정함

3.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현황 분석

- 본 연구에서 정의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범위는 기존 주거지원 정책뿐 아니라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정책을 재정립함
- 현행 주거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특별공급, 특화단지 공급,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상향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나치게 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보육관련 인프라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건설형과 매입·전세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공동주택의 경우 양육관련 인프라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신규공급과 기존단지에 따라 양육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령 검토가 필요함
 - 단독주택지는 관련 법령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관련 인프라 공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과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부터 현재의 신혼희망타운 특화단지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음

- 그러나 실제 주거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시스템 부재, 공간 및 서비스 간 연계 미비, 주거서비스 수요 파악 미흡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타부처(교육·복지·육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경우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친화 정책은 대부분 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1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와 정책현황



자료: 저자 작성

4. 양육가구 주거지원 현황 및 개선점

□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 검토

- 양육가구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
 - 기혼 여성의 38.8%가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8.3%는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함
- 또한,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 주거 관련 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택가격 안정(21.1%),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10.5%), 양육관련 주거서비스 제공(9.8%), 주거안정성 확보(8.2%) 등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양육관련 시설의 확대(35.9%),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17.9%), 주택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지원 확대(17.6%),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16.9%),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11.7%)의 순으로 분석됨

□ 주거정책 요소별 지원 현황 분석 및 개선점

-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대상이나 공급비율에서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주택의 면적 및 방의 수는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입지적으로는 교육시설 인근에 위치한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주자는 계층 및 세대가 혼합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양육가구는 자가마련을 위한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자가 부담되어 정부의 주택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가구의 비중도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주거인프라 공급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도시와 비아파트에서 양육관련 주거인프라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주거인프라 공급 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공급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 양육가구를 위한 주거인프라를 공급함에 있어서 중요도와 수요를 반영한 이용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인프라별 공급의 우선순위는 1순위(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실외놀이터, 방과후 공부방 등), 2순위(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혹은 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운동시설, 도서관 등), 3순위(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주민자치실 등)로 분석되었음
-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각 부처에서 개발·시행되고 있는 양육서비스를 주택 및 주거인프라와 연계하기 위해 양육가구의 수요와 서비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이를 반영해야 함
 - 주거서비스 항목별 중요도와 향후 이용의향을 분석한 결과, 우선순위 1그룹은 양육프로그램과 아이돌봄서비스, 2그룹은 무인택배와 양육가구 모임지원 서비스, 3그룹은 개별창고, 조식서비스, 카셰어링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 또한, 효율적인 양육관련 주거서비스의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체 중심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체 중심의 양육관련 주거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를 육성·교육하여 공동체 육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양육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함

5. 국내 양육친화 주거지원 및 국외정책 분석

□ 중앙정부의 공공주택 양육친화 특화단지

-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구로구청과 연계하여 단지내 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프라자, 문화공연장 등의 교육, 여가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고 있음
 - 문화복합시설인 오류문화센터를 단지내에 설치하여 아트홀 및 구로문화원, 경로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 미술 수업 등의 양육특화 프로그램도 진행 중
-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자녀 수나 생활패턴 등 신혼부부의 삶을 반영한 단지 및 세대설계를 실시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임
 - 일률적인 거실 중심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 자녀의 연령 변화, 삶의 주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택 내부의 공간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또한 주동의 저층부 및 주동 내부의 코어공간에 공동육아공간,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음
- (보완점) 최초 공급시점에 계획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공간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 향후 입주민 특성 변화를 고려한 공간활용계획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

□ 지방 및 민간의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 (신내동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로 이루어진 육아공동체가 조합을 구성하고 자주적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있음
 - 주택의 1층에 공동육아와 방과 후 교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거주와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계됨
- (은혜공동체)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 용도로 개발된 공유주택으로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 및 공부방, 유아대안학교, 놀이방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주로 다목적 공간(지하1층과 4층)을 활용하여 유아대안학교나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왕십리 KCC 스위첸아파트) 단지 내 유희공간을 초등돌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도 해당 공간을 개방하고 있음
 - 기존 도서관 시설을 실내 놀이터와 주민소통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단지 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교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
- (보완점)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단지 형태의 주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지를 위한 양육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의 일관성과 간소화 등이 요구됨

□ 프랑스의 양육 및 주거지원 정책

- 수당(allocation)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육 및 육아와 관련된 수당으로는 출산 및 양육 수당, 가족 수당, 주택보조금이 대표적임
 - (출산 및 양육 수당) 2004년 이후 가족수당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출산 및 양육 수당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위해 분유, 기저귀 등의 출산 용품 비용(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족 수당) 프랑스의 대표적 수당제도로 2명의 양육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주택보조금)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정책으로 프랑스 자국민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들에게도 지원대상이며, 지원대상에 따라 크게 1개인 주거 보조금(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2사회 주거 보조금(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3가족 주거 보조금(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으로 구분됨

□ 일본의 양육 및 주거지원 정책

- 일본의 양육친화적 지원정책은 보조금의 지급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의 구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금 지급보다는 시설 및 공간 설치를 통한 양육친화적 주거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의 주택정책이 사람과 지역 중심화 되면서 양육관련 정책도 중앙정부 보다는 지자체 주도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고령자, 장애인, 양육가구가 중점 정책대상이 되면서 주거 및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각 세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비영리단체 등 민간을 활용하여 전달체계를 구축하였음
 - 중앙정부는 주요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실행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실행하며, 전달체계로 비영리단체 등 민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 양육가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거나 활용하는 정책을 다수 시행하고 있음
 - 고령자 돌봄 및 상담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사업의 이용 대상을 양육가구로 확대하거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양육가구 간 교류시설을 구축

6.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모든 양육가구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여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이 있는 가구가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공동 육아 및 주거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거여건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안함

- 첫째,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둘째, 아이키우기 좋은 촘촘한 주거인프라 구축 체계 마련
- 셋째,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를 결합
- 넷째, 지역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체계 마련

그림 2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자료: 저자 작성

□ 주거지원 정책 발전방안

-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 확대
 - 모든 양육가구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 구입자금 관련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대상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할 필요
 -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경우’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육에 필요한 주거요소들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적절한 임대료를 위해 보증부 월세보다는 전세형태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료체계는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보증금 수준은 시세 대비 8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위치는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 인근이거나 역세권 위주로 공급될 필요
 -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평형을 다양화 할 필요
- 계층 및 세대 혼합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낙인 효과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의 혼합 및 다양한 연령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정책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혜택 제공
 - 현재 ‘2자녀 이상인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해서 완화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의 규정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책대상을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신청요건이 되는 소득한도를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
 -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자산 축적을 위해 다자녀 저축상품 등을 개발하거나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주거인프라 확충방안

-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주거인프로 공급 확대
 - 대도시 지역은 야외활동이 가능한 장소, 도서관, 주민자치실의 이용의향이 이용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농어촌지역은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주택유형별로는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야외활동 가능 장소, 실외놀이터, 도서관, 실내놀이터, 운동시설, 주민자치실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의향이 이용도보다 높아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추진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주민공동시설로서 ‘방과후 초등돌봄시설’의 의무화 추진 필요
 - 기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 주민공동시설의 ‘방과후 초등돌봄시설’로의 용도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
- 비공동주택(단독·다세대 등)에 대한 주거인프라 공급 방안 마련
 - 주거인프라 공급 시 최근 마련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국가 수준의 최저기준을 고려할 필요
 - 단, 동일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현황에 따라 최저기준은 달리 설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최저기준을 기초로 지역단위의 최저기준을 마련 필요
 - 또한 주거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초생활인프라 중 양육 관련 주거인프라가 국가 최저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자체가 ‘도시재생인정제도(추진 예정)’를 활용하는 방안 추진 검토

□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 양육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양적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간을 양육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순환형 돌봄, 외부활동 연계형 돌봄 등으로 서비스의 공간범위와 내용을 확장할 필요
- 공공부문 주거서비스 체계의 민간 확대
 - 양육관련 주거서비스를 도입하는 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 양육친화형 주거서비스를 단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할 필요
- 공동체 중심의 양육서비스 확대
 - 공동체 중심 양육서비스를 희망하는 주거단지 및 공동체에게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양육전문가를 적극 양성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필요

□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

-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 공통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처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은 2019년 구성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연령대별 정책 사각지대 및 실질적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양육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
 - 양육 정보 플랫폼은 관련 부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육 지원 정책의 정보를 포함하되, 대상은 아동뿐 아니라 양육주체인 부모도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이용자간 정보교환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보 플랫폼 개선과 양육 정책 보완에 활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지역 환경에 따라 양육가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역맞춤형 정책방안 마련 필요
 - 지역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단위에서 주기적으로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

차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요 약	ii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11

제2장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양육친화 및 주거정책에 관한 검토	15
2. 구성요소와 공간단위	20

제3장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현황 분석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5
2. 양육관련 주거정책	28
3. 타부처(교육·복지·육아) 정책	59
4. 요약 및 시사점	69

제4장 양육가구 주거지원 현황 및 개선점 도출

1.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 검토	75
2. 주거정책 요소별 지원 현황 분석	79
3. 주거정책 개선점 분석	86
4. 요약 및 시사점	101

제5장 국내 양육친화 주거지원 및 국외정책 분석

1. 국내 사례 105
2. 해외 양육지원 정책 및 주거지원 사례 119
3. 요약 및 시사점 143

제6장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149
2. 주거지원 정책 발전방안 152
3. 주거인프라 확충방안 155
4.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158
5.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 160

참고문헌 165
SUMMARY 174
부 록 179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10
〈표 2-1〉 주거기본법 상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17
〈표 2-2〉 양육친화적 주거서비스 유형별 분류	21
〈표 3-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기별 추진 목표	26
〈표 3-2〉 주거지원정책 중 주택공급 관련 법령	29
〈표 3-3〉 분양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공급 비율 및 근거 법령 내용	30
〈표 3-4〉 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공급 비율 및 근거 법령 내용	31
〈표 3-5〉 분양주택 신혼부부 주택 공급 비율 및 근거 법령 내용	32
〈표 3-6〉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 공급 비율 및 근거 법령 내용	33
〈표 3-7〉 공공주택 유형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34
〈표 3-8〉 공공주택 공급면적 및 공급비중	35
〈표 3-9〉 주거지원정책 중 주택금융 관련 법령	37
〈표 3-10〉 구입자금 대출지원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39
〈표 3-11〉 전세자금 대출지원 :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41
〈표 3-12〉 주거지원정책 중 주거급여 관련 법령	42
〈표 3-13〉 2019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현황	43
〈표 3-1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양육 및 보육요인으로 제외하는 금품	44
〈표 3-15〉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관련법 정의	46
〈표 3-16〉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관련 법령	47
〈표 3-17〉 공공주택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주요 법령 내용	48
〈표 3-18〉 공공주택 내 보육시설 설계기준	49
〈표 3-19〉 행복주택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관련 주요 법령 내용	50
〈표 3-20〉 신혼희망타운 주민공동시설 설계기준	51
〈표 3-21〉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지원 관련 주요 법령 내용 · 56	
〈표 3-22〉 부처별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현황 및 확대계획	64
〈표 3-23〉 다함께 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	67

〈표 3-24〉 타부처 돌봄체계 현황	68
〈표 3-25〉 교육·복지·육아 부문의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71
〈표 4-1〉 국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76
〈표 4-2〉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1순위)	77
〈표 4-3〉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78
〈표 4-4〉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82
〈표 4-5〉 주거인프라 이용여부	83
〈표 4-6〉 주거인프라 만족도	84
〈표 4-7〉 주거서비스 이용여부	85
〈표 4-8〉 주택공급 지원정책의 향후 이용의향	86
〈표 4-9〉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적 고려사항	87
〈표 4-10〉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1순위)	87
〈표 4-11〉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및 적절한 방의 수	88
〈표 4-12〉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수준과 계층 및 세대혼합 필요성	89
〈표 4-13〉 주택금융 지원정책의 향후 이용의향	90
〈표 4-14〉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미의향 이유	91
〈표 4-15〉 양육친화적 주거요소로서 중요한 주거인프라(1순위)	92
〈표 4-16〉 주거인프라 향후 이용의향	93
〈표 4-17〉 주거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요소	95
〈표 4-18〉 양육친화적 주거요소로서 중요한 주거서비스(1순위)	96
〈표 4-19〉 주거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97
〈표 4-20〉 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 여부	99
〈표 5-1〉 서울 오류 행복주택 주택형(type)별 임대조건	107
〈표 5-2〉 공동체 주택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	113
〈표 5-3〉 은혜공동체의 대가족별 평면구성	115
〈표 5-4〉 은혜공동체 공유공간에서 가능한 활동	116
〈표 5-5〉 2019년 출산 및 양육 수당기준	123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5-6〉 기초 양육 수당 지원체계	124
〈표 5-7〉 가족수당 지원체계	125
〈표 5-8〉 가족구성원별 평균 주택지원 기준	127
〈표 5-9〉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의 종류와 내용	131
〈표 5-10〉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36
〈표 5-11〉 육아를 배려한 주택 가이드라인	137
〈표 5-12〉 도쿄 육아지원주택 인증기준(신축)	139
〈표 5-13〉 지역 육아응원 맨션인증제도 인증내용	141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공간단위	22
〈그림 3-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	27
〈그림 3-2〉 신혼부부 선호 반영 평면 적용 : 신혼희망타운 평면 예시	36
〈그림 3-3〉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 : 신혼희망타운	36
〈그림 3-4〉 365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및 조경시설물 당선작	52
〈그림 3-5〉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돌봄 공간 예시	53
〈그림 3-6〉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	57
〈그림 3-7〉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도입 체계	58
〈그림 3-8〉 부처간 협업을 통한 보육플랫폼 조성	58
〈그림 3-9〉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와 정책현황	72
〈그림 4-1〉 주거지원 정책 현황분석	80
〈그림 4-2〉 주거인프라의 중요도 및 향후 이용의향	94
〈그림 4-3〉 주거서비스의 중요도 및 향후 이용의향	98
〈그림 4-4〉 공동체 육아 서비스의 적정 제공자	100
〈그림 5-1〉 오류 문화센터	108
〈그림 5-2〉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공간구성	109
〈그림 5-3〉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의 커뮤니티 공간	110
〈그림 5-4〉 신내동 공동주택의 공동육아 및 방과 후 공간	114
〈그림 5-5〉 은혜공동체 개요 및 전경	115
〈그림 5-6〉 단지 내 구립 어린이집 위치와 유아 및 초등학생 보육지원 현황 (왕십리 KCC 스위트아파트)	117
〈그림 5-7〉 프랑스 1인당 출산율	120
〈그림 5-8〉 일본 출산율 (2001년 이후)	128
〈그림 5-9〉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 실시개소 추이	132
〈그림 6-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151
〈그림 6-2〉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	163



1

CHAPTER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 11

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주거정책의 필요성 증가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변화된 정책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출산이나 육아와 주거정책의 관련성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저출산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및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전환되었다. 이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에서 밝혔듯이 저출산 현상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적응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였음을 나타낸다.

주거 문제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책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조가 출산율 회복에 있었던 만큼 관련 주거정책도 물리적인 주택공급 및 주거부담 완화에 집중되어 있어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주택공급 측면에서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의 특화형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대한 삶의 질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양육지원을 위한 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정책들은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양육가구의 거주공간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가구단위의 양육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역사회 기반의 양육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주거정책도 이에 대응하여 공동체육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양육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조성이 핵심이다.

이와 같이 주거정책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안정적·지속적 삶의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주거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을 진단한다. 또한, 실증분석 및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방향 및 발전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저출산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선, ‘양육친화’와 ‘주거정책’의 개념을 검토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와 범위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현행 저출산 대응 정책과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현황 분석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구득가능성 및 설문조사 시점 등을 고려하여 2018~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양육친화 및 주거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저출산 관련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검토,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정책 지원 현황 분석,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요소별 지원 실태 및 개선점 도출, 국내외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정책 및 사례 검토, 저출산에 대응하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 제시로 구성되었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및 이론 검토

문헌 연구 및 이론 검토를 통해 양육지원 및 주거정책 관련 이론과 정책, 양육환경과 주거정책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정의하고 분석의 기준 및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해외에서의 대응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2) 정책협의 및 전문가 자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거정책과 양육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과 정책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학계, 정책관련 전문가, 유관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수행자들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연구 자문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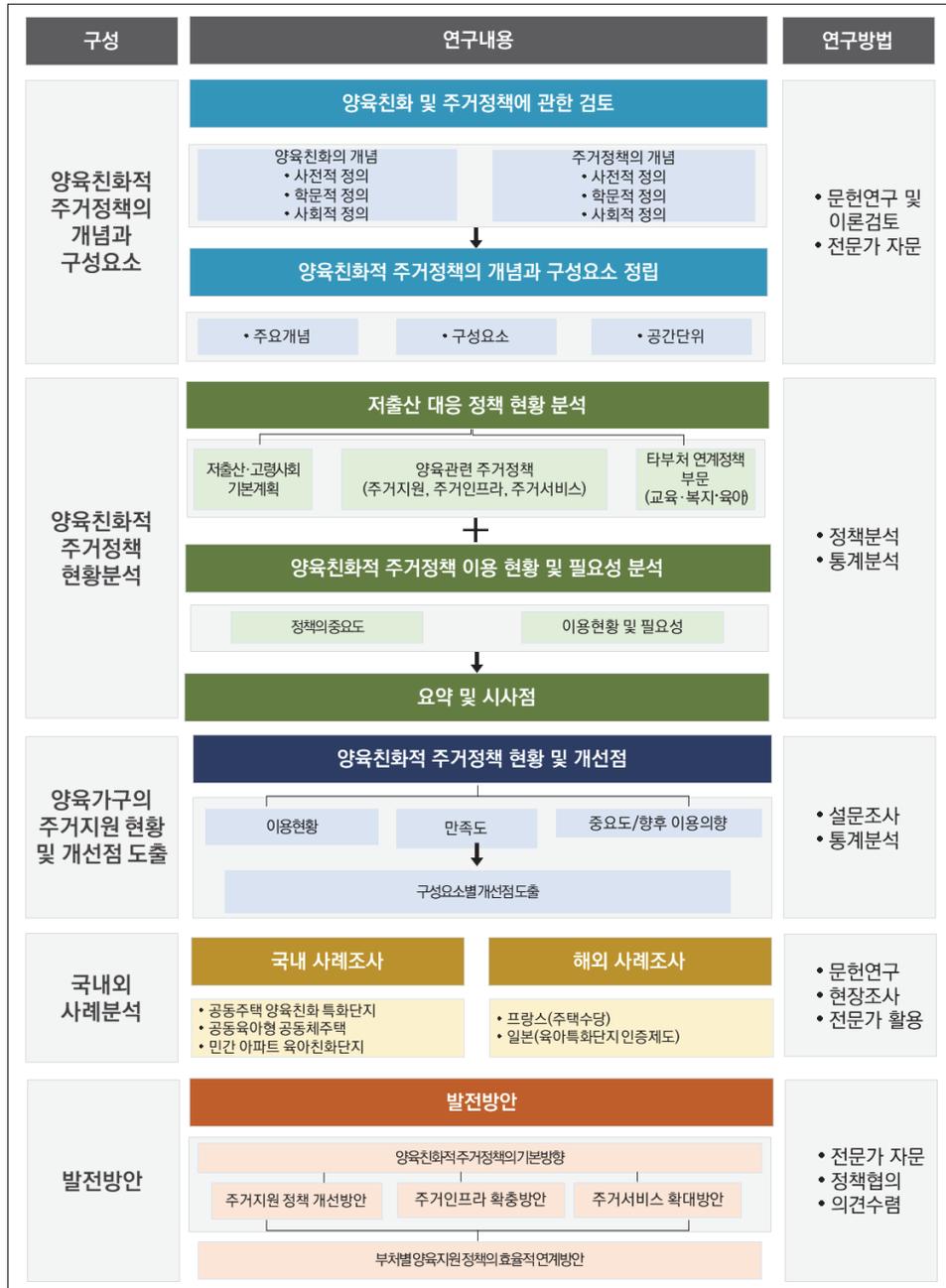
(3) 통계분석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각 요소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보조자료 등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현황,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요소별 개선점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육 관점에서 주거정책의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주거실태조사 및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사례조사 및 해외 정책조사

사례조사는 국내 공공임대주택 중 육아특화단지, 공동체주택 중 공동육아 활성화 사례, 민간(공동)주택 내 육아친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해외 정책조사는 프랑스와 일본을 대상으로 양육 관련 주거정책의 현황과 구체적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양육 관련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지원방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그림 1-1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출산과 주거지원 정책과의 관련성, 육아 및 가족친화적 주거인프라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 출산과 주거지원 정책의 관련성

출산과 주거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주택의 가격이나 규모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주택가격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이 출산율을 감소시키거나 출산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의철(2012), 도난영, 최막중(2018), 천현숙 외(2012)가 있다. 정의철(2012)은 전세가격이 증가할수록 가구형성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택가격이 가구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도난영, 최막중(2018)은 지역주택가격이 결혼과 첫째 및 둘째자녀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쇄적 과정의 맥락에서 단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을 상승시켜 출산시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둘째를 출산할 경우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임차가구의 자녀 출산시점과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현숙 외(2012)는 SD(System Dynamics)모형을 통해 저출산과 주택시장 매커니즘의 관계를 파악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 제고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정책은 재정정책, 공급정책, 금융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정책을 종합 사용할 경우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산율과 주거환경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천현숙 외(2013)가 대표적인데, 출산율과 도시주거환경 조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택·도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로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지역환경에 해당하는 생활편의성이 근린환경만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며 출산의사에는 육아친화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육아 및 가족친화적 주거인프라 연구

육아 및 가족친화적 주거인프라에 관련된 연구는 아동 및 육아 환경수준을 평가하거나 중요도-만족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주립, 구자훈(2013)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육아 환경에 대한 물리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는 크게 보육시설 환경, 양육지원 환경, 공원·녹지 환경, 문화 환경, 복합산업 환경, 의료 환경, 육아 환경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4개의 구간으로 구분·점수화되어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주립, 구자훈(2015)은 송파구 내 아파트 단지과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근린생활권의 육아환경 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기피시설(술집·유흥시설)과의 이격 요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은 보행환경, 보차분리, 놀이터 등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 및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고, 다가구·다세대지역은 단열과 방음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둔 기존연구와 달리 양육환경에 대한 주거만족도 향상을 통한 양육세대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목표 변수로 설정하여 대부분 저렴주택 공급, 대출지원 방안 등의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육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 변수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주거지원 정책과 주거인프라,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등 주거정책 전반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I (전현숙 외 2012) 연구목적: 출산지원을 위한 주거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저출산가구의 주거실태 및 수요 특성 파악(통계자료분석): 한국노동패널자료와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활용 해외사례 SD(System Dynamics)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에 대한 조작적 정의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사회규범과 가치, 경제사회적 요인, 도시 및 지역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검토 저출산 관련 국내 정책 현황 및 실태분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II(전현숙 외 2013) 연구목적: 출산지원을 위해 출산, 양육친화적인 도시주거환경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도시주거환경지수 체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지표 및 통계자료 검토 - 가용 지표별 시뮬레이션 전문가 AHP조사 사례대상지 분석 시나리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주거환경의 개념과 기준지표들에 대한 이론적 동향 도시주거환경 예비지표체계 개발 가임기 여성의 근린단위 생활권 만족도와 출산의도 관계분석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이주림, 구자훈 2013) 연구목적: 서울시 육아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과 적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심층면접 통한 평가항목 설정(6 대분류, 18 세분류) 전문가 설문 통한 최종평가항목 설정 평가항목을 서울시 구별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된 평가항목에 따라 서울시 25개 구를 평가, 육아환경과 영유아비, 육아환경과 출산율을 4분면으로 분석 출산율이 높고 영유아밀도도 높은 지역(강동, 강서, 구로, 성동, 성북, 송파) 등이 육아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의 방향 - 신혼·육아세대의 수요 특성을 중심으로(정소이 외) 연구목적: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방향 제시 및 공공주택단지의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연구 및 주거실태 분석 해외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친화형 주택단지에 대한 일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안정성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공공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 요인과 평가, 불만족 요인 분석 공공주택 공급방식 개선방안 기존주택 활용한 민간임차가구 주거안정성 제고방안
본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에 대한 정책 기조가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된 만큼 주거정책의 방향도 주택공급, 대출지원 등의 주거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성 확보뿐 아니라 양육환경 개선을 고려한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의 확대·발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육가구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이론 검토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분석 지역별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현황 및 이용 실태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중요도와 만족도, 수요 분석 국내외 양육 관련 주거정책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별 발전방안 제시 	

자료: 저자 작성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실성을 고려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기존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주거정책 구성요소별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 변화된 저출산 정책기조 아래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 및 근린환경과 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양육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 강화방안들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목표 달성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학술적 기대효과

출산율 제고가 아닌 양호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공간적 범위를 정립함으로써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거특성에 따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니즈 분석을 위한 지역별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현황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중요도 및 만족도 자료 등과 같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는 양육과 연계한 다양한 주거정책 개발 등 후속연구의 촉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HAPTER 2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 1. 양육친화 및 주거정책에 관한 검토 | 15
- 2. 구성요소와 공간단위 | 20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본 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핵심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의하였다. 양육과 주거정책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존재하나,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명확히 정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친화와 주거정책에 대한 법률적(사전적), 학문적, 사회적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주요 구성요소와 공간단위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1. 양육친화 및 주거정책에 관한 검토

1) 양육친화의 개념

(1) 사전적 정의

양육은 사전적으로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고 정의되며 친화는 ‘사이좋게 잘 어울림’을 의미¹⁾한다. 이러한 양육과 친화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양육친화는 ‘아이를 키우기에 편리하고 친근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학문적 정의

학문적으로 양육친화라는 개념을 정의한 대표적 연구로는 정민자 외(2008)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에게 정

1)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2019년 6월 29일 검색).

신적·물질적 지지와 지원 및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양육친화(child care familiar)를 정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도 기존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자녀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나 노력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현숙 외(2013)에서는 도시주거환경 차원에서 출산·양육친화를 ‘개별 가구가 출산을 결정하고 양육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외 양육친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 양육’ 과 ‘양육 대상’ 이 있는데 양육은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 보살핌과 정서적 욕구 충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정의는 연구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백지혜(2009)는 아이를 길러 자라게 하는 것으로,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등의 일상적 돌봄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한 보호, 교육, 정서적 욕구충족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백혜선 외(2018)에서는 양육의 사전적 의미에 기반을 두어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으로 육아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였다. 장명립 외(2018)는 영유아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발달 시기에 맞춰 가르치고 교육하는 부모의 양육지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양육의 대상은 개인의 생애주기 기준으로 할 경우 임덕영 외(2017)에서 밝힌 것처럼 생물학적인 연령과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event)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인기로 구분하거나 사건 기준에 따라 취학, 취업, 결혼, 분가, 은퇴, 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가구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취학기, 초등교육기, 중·고등교육기, 성인기 이후(권동현, 이영호, 2007)로 구분하거나 배영순 외(2015)처럼 태아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회적 정의

사회적으로 양육은 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넓게는 태아에서 청소년까지를 포함하지만

통상적으로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까지를 말한다. 청소년기도 양육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성인의 축소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양육은 주거환경보다 정서적·심리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진로 결정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교육 환경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어 영유아기나 초등학교 시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2) 주거정책의 개념

(1) 법률적 정의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정책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거정책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은 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주거비 지원, 주택관리, 주거환경 정비, 주택시장의 정상적 기능 유지, 주택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거정책의 법률상 정의는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과 주택시장정책, 주택산업정책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1 | 주거기본법 상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p>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기본법, 제3조 (법률 제16391호, 2019. 4. 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 (2019년 6월 24일 검색)을 참고하여 작성

(2) 사전적 정의

사전적 의미로 주거(住居)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거주(居住))을 의미한다. 복지정책에서의 ‘주거’란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 즉 건강, 보장, 가족 및 인간관계 등의 인간 삶의 양식과 질적인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은 사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주거와 정책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주거정책은 삶의 공간과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3) 학문적 정의

기존의 주거정책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영역으로 한정되어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시장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김은혜(2005)는 주거의 의미를 공간으로서의 주택과 그 공간을 둘러싼 건강, 보장, 환경 등의 질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거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박윤영(2011)은 주거정책의 의미를 주택시장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한 의미로 정의하되 각각의 정책이 포함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택시장정책은 주택시장의 가격과 관련된 정책으로 조세정책, 거래투명성 확보 정책, 투기억제 정책 등이 속하며,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주택의 공급, 재원·대출지원, 주거급여 등의 복지 정책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남원석(2008)은 주거정책을 주거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주거문제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둔 사회적 실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주거문제는 주택의 확보 → 거주 → 이주라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개별 세대들이 주거권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주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보았다. 남원석(2012)에서는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보조, 주택개량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4) 사회적 정의

주거는 물리적인 공간을 칭하는 주택과는 달리, 주택에 거주하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사)대한건축학회, 2010). 이러한 주거의 문제를 다루는 주거정책은 좁은 의미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들로 주택 공급, 주택시장 관리 방안, 금융지원, 급여지원 등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주거정책을 바라본다면,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과 주택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및 거주자의 주거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앞서 살펴본, 양육친화와 주거정책의 다양한 정의를 고려하여 각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육친화는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정서적 보살핌이 용이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주거정책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의 주거지원 정책과 주택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나 거주자의 주거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 양육의 대상은 양육친화의 사회적 개념을 감안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영유아(만0~6세) 및 초등학교(만7~12세))으로 설정한다.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2. 구성요소와 공간단위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

(1) 주거지원 정책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로서의 주거지원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의미한다. 주택공급은 공공 및 민간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비율 배분, 특별공급 우선권 부여, 거주기간 연장 및 공급면적의 확대, 단위세대 특화형 평면 제공 등의 정책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2)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양육친화적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양육과정에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주거인프라는 시설측면으로 공동이용시설(주택내·외의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과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도서실,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3) 주거서비스 지원정책

양육친화적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는 주거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주거서비스는 개별 가구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재화를 포함하는 모든 재화(service)를 의미한다(서수정 외, 2017. p.2. ; 윤주현 외, 2005. p.17).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양육 생활지원 서비스와 양육 공동체지원서비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양육 생활지원서비스는 부모와 아동의 가사생활 및 육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가사지원, 건강·여가

생활지원, 생활편의지원, 육아·교육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육 공동체지원서비스는 양육가구의 공동체 형성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양육공동체 지원, 생활공동체 지원, 공동체 구성원 업무·창업지원으로 구성된다.

표 2-2 | 양육친화적 주거서비스 유형별 분류

구분	서비스 유형	내용
양육 생활 지원서비스	가사지원	조식 서비스, 세탁, 하우스 클리닝, 장비기/배달 대행 등 가사생활 관련 지원 서비스
	건강·여가생활지원	각종 건강지원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여행 및 캠핑, 주민교류 지원 프로그램 등 건강 및 여가생활 지원 서비스
	생활편의지원	무인택배/택배보관, 카셰어링, 개별 창고, 인테리어, 이사/청소알선, 생활용품 공유 및 대여 등 생활편의 증진 서비스
	육아·교육지원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의 양육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 서비스
양육 공동체 지원서비스	양육공동체 지원	양육세대 모임,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 아이돌봄, 늦은시간 아이돌봄, 아픈 아이돌봄), 교육 정보 제공, 보육서비스 등 육아세대 커뮤니티를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서비스
	생활공동체 지원	주민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활동, 동호회 지원, 열린장터, 공동구매 등 공동체 활동관련 지원 서비스
	공동체 구성원 업무·창업 지원	OA 오피스 룸 대여, 세미나실 운영, 비즈니스 센터 운영 등 업무공간 및 시설대여 지원 관련 서비스

자료: 서수정 외. 2016.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p.19-20, 강순주 외. 2018. 신혼희망타운 주거서비스 운영방안 제안. p.141-142를 참고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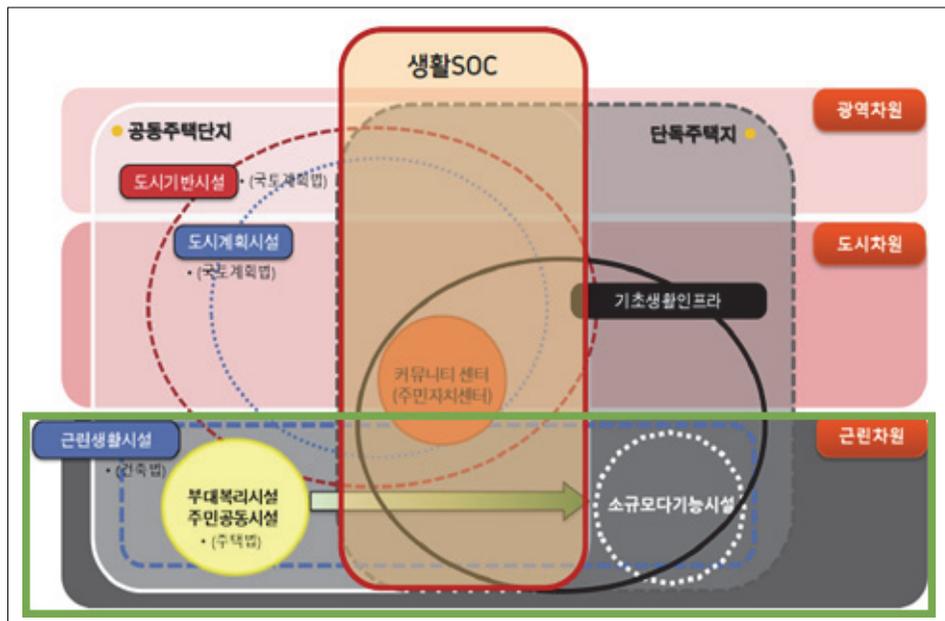
2)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공간단위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고려할 때 마을단위 공간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양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양육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중요하다. 또한 양육관련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은 도보기준 15분 내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간적 범위는 마을단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단위의 공간은 공동체 공간에 대한 단위 이론에서 근린생활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도년, 2017. p.17). 근린생활권은 소생활권, 근린주구단위, 초등학교 통학권, 행정단위인 등을 의미하며, 근린생활권 개념을 활용한 생활권계획은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주로 사용되며 경험주의적이며 실무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주거인프라의 공간 단위는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근린차원의 주거인프라의 공간 단위는 공동주택의 경우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로 설정하고, 단독주택은 소규모다기능시설로 설정한다.

그림 2-1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공간단위



자료 : 성은영 외(2019),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 국토교통부를 참고하여 재작성



CHAPTER 3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현황 분석

-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5
- 2. 양육관련 주거정책 | 28
- 3. 타부처(교육·복지·육아) 정책 | 59
- 4. 요약 및 시사점 | 68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정책 현황분석은 크게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저출산 관련 정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주거정책에서 양육친화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령 및 양육가구를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타부처(교육·복지·육아 부문)의 양육 정책 또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요

2000년대부터 본격화한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의 급격한 진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김종훈 외, 2018, 21-2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이 5개년 단위 계획으로 구현된 이래로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계획이 수립·추진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육지원이 핵심으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는 알·가정 양립이 핵심 정책으로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주요 과제였다. 제3차 계획에서는 2020년 합계출산율 1.50명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1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기별 추진 목표

시기	추진목표
제1차 (2006-2010)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2011-20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제3차 (2016-20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주 : 제1차, 제2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 관련 추진과제는 부록 참조
 자료 : 천현숙 외. 2012.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1). p.100

하지만 기본계획이 당초 취지였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 구조의 장기적·전반적 개혁 및 종합적 인구 전략 마련에서 벗어나, 2차, 3차로 갱신되면서 개별 사업단위별로 파편화되고, 수치적 목표와 수단 중심으로 시야가 좁아졌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김종훈 외, 2018, p. 22). 특히,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심화되면서 합계출산율과 같은 목표에 대비하여 정책성과나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에서는 정책적 의미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하여 근본적 인구정책 목표를 수립하며, 생애주기 차원에서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구조화하였다(김종훈 외, 2018, p. 37).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의 정책방향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에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계층·성·세대간 통합·연대 등 포용국가”로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출산 장려”가 아닌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였고, “결혼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가 아닌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으로 정책대상으로서 가족의 관점도 전환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수정)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해 ①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③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④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⑤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3)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조성 관련 사업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의 추진 과제는 중 양육친화적 주거정책과 관련된 과제는 돌봄(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과 기반(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의 영역에 해당한다.

돌봄의 영역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설 뿐 아니라 가정 내 돌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그 중 4개 추진과제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인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기반의 영역은 “일자리·주거지원을 통해 청년과 여성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 구성의 3개 과제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는 금융지원, 주택공급확대와 같은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된 과제이며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 조성은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20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2016~20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양육관련 주거정책

1) 주거지원 정책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원사항이 정의된 관련 법령 검토, 공급 비율 및 우선·특별공급과 같은 공급 대상기준, 거주기간 및 공급면적, 평면 및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양육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관련 법령 검토를 기반으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에 대한 신청기준, 대출금리 및 한도를 분석하였으며 주거급여도 주거급여법 등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검토하였다.

(1) 주택 공급

① 주택공급 관련 법령

주택공급 지원은 공급유형에 따라 분양과 임대로 구분된다. 분양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 의해 대상계층과 공급비율 등이 정의되어 있다. 정책대상계층에 대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신혼부부로 규정하였다. 또한 대상계층별 공급비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신혼부부 공급 비율을 제시하였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서 명시되어 있다.

공공임대주택 부분의 양육가구 지원은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다자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급비율 및 대상계층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과 동일

하지만 예비신혼부부까지를 정책대상계층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한부모가구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표 3-2 | 주거지원정책 중 주택공급 관련 법령

구분		주요 내용	법령
주택 공급	분양 (민간,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분양주택에서 다자녀 가구 공급비율 규정 -다자녀 가구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 (신혼부부) 분양주택에서 신혼부부 공급비율 규정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1조 제1항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 대상으로 특별공급비율 규정	다자녀가구 및 노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국민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전세(국민임대준용)에 대하여 우선공급 비율 규정 -다자녀 가구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전세(국민임대 준용), 행복주택에 대하여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비율 규정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국민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행복주택에 대하여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비율 규정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매입 임대 · 전세 임대	·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 규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 「다자녀가구 및 노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 2018.5.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5호, 2019.3.28., 일부개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 2018.11.22., 제정). <http://www.law.go.kr/> (2019년 6월28일 검색)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② 공급 비율 및 우선·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다자녀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분양주택에서 다자녀가구의 공급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다자녀가구 주택의 특별공급비율을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3 | 분양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공급 비율 및 근거 법령 내용

유형	비율	근거 법령 내용
분양주택 (민간, 공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①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이하의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에게 특별공급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제2조제5호(국민주택) 및 제7호(민영주택)에 따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 대상 - 다자녀가구 주택: 건설량의 10%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공급 비율 증감 -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 가능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 2018.5.8., 일부개정), <http://www.law.go.kr/> (2019년 6월 28일 검색)

분양주택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다자녀가구의 우선공급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의 경우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총 공급물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

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구임대는 우선공급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태아를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자녀 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공급하고 있다. 매입임대도 우선 공급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입주택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4 | 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공급 비율 및 근거 법령 내용

유형	비율	근거 법령 내용
영구임대	-	· 우선공급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수급자 중 자녀 있는(태아를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 1) 자녀 수가 많은 사람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국민임대	1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2. 우선공급 다. 다자녀가구에 10퍼센트 범위로 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 충족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10%	· 분양주택과 같음
장기전세	10%	·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특별공급 비중이 관련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기준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준용(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음) - 실제 총 공급물량의 10% 정도를 '3자녀 이상' 에게 공급
매입임대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우선 공급 - 세대주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경우)로서 매입주택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세임대	-	· 해당 없음
행복주택	-	· 해당 없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5호, 2019.3.28., 일부개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 2018.11.22., 제정). <http://www.law.go.kr/> (2019년 6월28일 검색)

③ 공급 비율 및 우선·특별공급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분양주택에서 신혼부부의 공급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도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를 제1순위로 하여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제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분양주택은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20% 범위, 공공분양주택은 30%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5 | 분양주택 신혼부부 주택 공급 비율 및 근거 법령 내용

유형	비율	근거 법령 내용
민간분양	2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 - (국가·지자체·NH 등) 30퍼센트의 범위(제18조) 1. 공급요건(모두충족)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 소득 有 : 120%) 이하 라. 입주자저축에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인정 2. 공급순위 : -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그 외의 신혼부부 3.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공공분양	30%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
<http://www.law.go.kr/> (2019년 6월28일 검색)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신혼부부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인 경우 대체로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제1순위로 하여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순위경쟁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표 3-6 |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 공급 비율 및 근거 법령 내용

유형	비율	근거 법령 내용
영구임대	1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2. 우선공급 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자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중, 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혼인기간에 차등 점수 부여 후 총점이 높은순
국민임대	3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 우선공급 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 충족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중, 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세대 월평균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혼인기간에 차등 점수 부여 후 총점이 높은순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3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 2.특별공급 나. 1. 공급요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납입인정 6회 이상인 자 - 자산요건(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8,500천원 이하) 충족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 소득 有 120%) 2. 공급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장기전세	30% (SH)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준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의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중 관련법 명시하고 있지 않음
매입임대	-	· 우선공급 비율 없음(별도 모집)
전세임대	-	· 우선공급 비율 없음(별도 모집)
행복주택	80% (최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에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80퍼센트 공급가능 다)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주택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5호, 2019.3.28., 일부개정)
<http://www.law.go.kr/> (2019년 6월28일 검색)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비율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영구임대 10%, 국민임대·분양전환형 공공임대·장기전세 30%, 행복주택 80%(최대)로 차이가 있다. 장기전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고 있으며, 현재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은 30%이다¹⁾. 행복주택 일반형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비율이 80%이며, 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우선공급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별도로 모집·공급하고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존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 7. 5.)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신혼부부 지원물량에 한부모가족도 신청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 이용시 입주자 선정기준의 가점제 항목 중 ‘혼인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한다.

표 3-7 | 공공주택 유형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구분		기 존	개 선
영구임대	지원	① 일반공급 1순위 자격	①과 동일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2% 이하	좌 동
매입임대 전세임대	지원	② 일반공급 1순위 자격	② + 신혼부부 매입·전세
	소득기준	상 동	평균소득 100% 이하도 신청가능
국민임대	지원	③ 20% 범위에서 우선공급	③ + 신혼부부 우선공급(30%)
	소득기준	상 동	평균소득 50~100%도 신청가능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지원	④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④ + 신혼부부 특별공급(30%)
	소득기준	상 동	평균소득 100% 이하도 신청가능
행복주택	지원	별도 규정 없음	신혼부부 물량(40%) 신청가능
	소득기준		평균소득 100% 이하도 신청가능
공공분양	지원	별도 규정 없음	신혼부부 특별공급(30%) 신청
	소득기준		평균소득 100% 이하도 신청가능

자료: 관계부처 합동,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2018.7.5. p.33

1) 마이홈포털. 장기전세주택. <https://www.myhome.go.kr/> (2019년 6월 28일 검색)

④ 거주기간 및 공급면적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다른데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이며, 신혼부부는 기본적으로 6년이지만 자녀수에 따라 거주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최대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이상인 경우 10년으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의 40% 수준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유형이나,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면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 7. 5.)에서는 넓은 평형 공급을 확대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행복주택에서 36㎡의 비중이 전체 물량의 75% 이상이었으나 전용 59㎡를 15%, 전용 44㎡의 비중을 35%, 전용 36㎡의 비중을 50% 수준으로 평형 비중을 조정하였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에서 3인가구의 면적기준이 전용 36㎡이라는 점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장래 1-2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까지를 고려한 것이다.

표 3-8 | 공공주택 공급면적 및 공급비중

전용면적	36㎡ (방1+거실)	44㎡ (방2+거실)	59㎡ (방3+거실)	평균면적 (재정지원기준)
현행	75%	25%	-	27.6㎡
개선	50%(무자녀)	35%(1자녀)	15%(2자녀)	29.6㎡

자료: 관계부처 합동,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2018.7.5. p.12

⑤ 맞춤형 평면 및 설계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전략 중 하나로 제시된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은 세대별 여건변화에 따라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강화하고 공간 및 품목을 선택형 평면으로 제공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일부 벽체를 가변형으로 설계하여 공간활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납공간 시스템 가구, 침실 불박이장 및 시스템에어컨 등 다양한 옵션품목을 입주자가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2 | 신혼부부 선호 반영 평면 적용 : 신혼희망타운 평면 예시



자료 : LH. 2018.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전략. p.2

또한,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전략 중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디자인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아파트 외부 입면에 독창적인 개념의 색채를 적용하는 등 개성 있는 외부 디자인 설계와 아이와 신혼부부의 감성을 자극하는 실내디자인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3 |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 : 신혼희망타운



자료: LH. 2018.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전략. p.7

(2) 주택 금융지원

① 주택 금융지원 관련 법령

주택금융지원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청대상기준 및 대출한도, 우대금리 등의 사항이 정의되어 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일반가구에 비해 신혼부부²⁾ 및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도 상향해주고 있다. 금리 측면에서는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해 자녀수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한부모 가구에 대해 신청기준, 대출한도,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유사한 내용으로 양육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대출대상 측면에서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사항 외에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3-9 | 주거지원정책 중 주택금융 관련 법령

구분		주요 내용	법령
주택 금융 지원	주택 구입자금대출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신청대상 및 대출한도 상향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자녀수별 우대금리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대출로 신혼부부 지원강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주택도시기금법
	주택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신청대상 및 대출한도 상향 ·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자녀수별 우대금리 적용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로 신혼부부 지원강화	

자료 : 저자 작성

2)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드의 대출대상 기준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대상과 동일함(주택도시기금. <https://enhuf.molit.go.kr/> (2019년 11월 12일 검색))

② 구입자금 대출 : 신청대상, 대출금리 및 한도

구입자금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일반적인 신청대상이다. 순자산의 기준금액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순자산 평균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9년 9월부터 신청대상 기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인 대출 신청 대상과 달리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는 신청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에 따라 지원사항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신청대상에 있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혹은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신청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신혼부부는 0.2%p, 한부모가족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신혼부부는 2.2억원으로 일반 가구에 비해 2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2.4억원으로 4천만원 더 높게 설정하고 있다.

한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일반 만기별 금리가 2.00~3.15%임에 비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1.70~2.75%로 0.3~0.4%p 더 낮은 수준이다. 실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보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금리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다. 또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는 2.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2.4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3-10 | 구입자금 대출지원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구분		주요 내용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초,신혼,2자녀이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디딤돌대출 대상목적물 이외 분양권, 조합입주권 소유시 대출불가					
	대상주택	· 시가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 (단독세대주) 3억원 이하, 전용 60㎡ 이하					
	대출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일반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00	2.10	2.20	2.30
		2~4천만원이하		2.45	2.55	2.65	2.75
4~6천만원이하 (생초구입 7천만원이하)		2.85	2.95	3.05	3.15		
		① 신혼가구 0.2%p 우대,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p, 한부모 0.5%p 우대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19.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2%p·2자녀 0.3%p·3자녀 이상 0.5%p,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5%)					
대출한도	· 2억원 (DTI 60% 이내시 LTV 70%까지), 단독세대주는 1.5억원 · 신혼부부: 2.2억원 · 2자녀이상: 2.4억원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생애 최초 신혼 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	신청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디딤돌대출 대상목적물 이외 분양권, 조합입주권 소유시 대출불가					
	대상주택	· 시가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일반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1.70	1.80	1.90	2.00
		2~4천만원이하		2.10	2.20	2.30	2.40
4~7천만원이하		2.45	2.55	2.65	2.75		
		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②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19.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③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 * ①과 ②과 ③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2%)					
대출한도	· 2.2억원 (DTI 60% 이내시 LTV 70%까지) · 2자녀 이상: 2.4억원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자료: 주택도시금융. 주택구입자금대출. <http://nhuf.molit.go.kr/> (2019년 6월 28일 검색) 및 2019년 제5차 주택도시금융운영계획 변경(p.13-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③ 전세자금 대출 : 신청대상, 대출금리 및 한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은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으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설정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도 신청대상과, 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 대출한도에서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구 여부,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한도는 기본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이지만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1%p 우대금리(최저금리 1.0%)를 적용한다. 대출한도에 있어서 기본은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이지만,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으로 자녀수가 많으면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한편 ‘버팀목 전세대출’과 별도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프로그램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나 대출금리는 1.2~2.1%로 ‘버팀목 전세대출’보다 0.8~1.1%p 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의 우대금리(최저금리 1.0%)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금융지원에 있어서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여부, 자녀수에 따라 신청대상 확대,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확대,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의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표 3-11 | 전세자금 대출지원 :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구 분		주요 내용					
버팀목 전세 대출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 등)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대상주택 (보증금)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100㎡)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자녀 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	1억~3억 (지방은 2억 이하)	
		소득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4천만원	2.5	2.6	2.7				
4천~5천만원 (신혼부부 등 6천만원)	2.7	2.8	2.9				
대출한도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 우대 ② 1자녀 0.2%p·2자녀 0.3%p·3자녀 이상 0.5%p, ③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③번은 ①과 ②과 중복우대 불가능 (최저금리: 1.0%)						
상환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신혼 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지원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보증금)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100㎡)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자녀 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	1억~1.5억원	1.5억원 초과
		소득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4천만원	1.5	1.6	1.7	1.8			
4천~6천만원	1.8	1.9	2.0	2.1			
대출한도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수도권 2억원, 수도권외 1.6억원)						
상환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주: 주택도시금융. 주택전세자금대출. <http://nhuf.molit.go.kr/> (2019년 6월 28일 검색)

(3) 주거 급여

① 주거 급여 관련 법령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양육가구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주거급여법」 제7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볼 수 있다. 「주거급여법」 제7조는 임차급여액 산정기준으로 가구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는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보육 및 교육비 등을 실제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표 3-12 | 주거지원정책 중 주거급여 관련 법령

구분		주요 내용	법령
주거 급여	임차급여액 산정	·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	주거급여법 제7조
	소득인정액 산정	· (보육 및 교육비 실제소득 산정 제외)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유사한 금품의 실제소득 산정 제외 · 양육요인으로 인한 가구특성 지출요인 차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자료 : 주거급여법. 2018. 법률 제 15358호(2018.1.16. 일부개정) 제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018. 대통령령 제 29180호(2018.9.18. 개정). 제 5조

② 주거 급여 임차급여액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주거급여는 임차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로서 임차급여를, 자가수급자에게는 현물급여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한다. 임차급여는 최저주거수준을 고려하는 기준 임대료와 수급자의 가구원 수, 지역여건, 부담 수준, 거주 형태 등을 감안하여 급여액을 결정하여 지급되고 있다.

양육친화적 관점에서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달리 한다는 점에서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급여액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임차급여액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

표 3-13 | 2019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현황

(단위 : 만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3.3	20.1	16.3	14.7
2인	26.7	22.6	17.8	16.1
3인	31.6	27.2	21.3	19.4
4인	36.5	31.7	24.7	22
5인	37.7	32.9	25.8	22.9
6인	44.1	38.9	29.6	26.7

자료 :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19. p.40

③ 주거 급여 소득인정액

주거급여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다³⁾.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은 ① 실제 소득에서 ②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③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④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중 ‘보육·교육 등을 위한 보육료, 학자금’은 실제 소득(①) 산정에서 제외하며,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②)에 해당하여 소득에서 차감한다.

3)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하고,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의 차액에 자기부담률(0.3)을 적용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표 3-14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양육 및 보육요인으로 제외하는 금품

항목	주요 내용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나) 보육·교육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3)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6)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8)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9)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10)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다)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양육비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3)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월20만원 지급) (5) 「입양특례법」제3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6)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자료 : 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9. p.98-100.

이처럼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임차급여 산정에 반영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보육·교육 등을 위한 보육료, 학자금’을 실제 소득에서 제외하고,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을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차감한다는 점에서 양육친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먼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정의한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의 개념을 고려하여 주거인프라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의 현황은 중앙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보육관련 인프라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건설형과 매입·전세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주거인프라 관련 법령

주거인프라에 해당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데 용어와 개념, 범위 등이 개별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을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동일하게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개념과 범위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주민공동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도서실, 독서실, 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표 3-15 |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관련법 정의

구분	개념 및 범위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주택법	간선시설	·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내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건축법	근린생활시설	· 판매 및 서비스 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공공서비스시설, 집회시설, 관리 및 지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집회장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자료 : 김도년 외. 2017.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공공생활 지원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 SH도시연구원. p.21.

즉, 주거인프라는「주택법」상의 ‘주민공동시설’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동이용시설로 한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의 ‘공동체 공간’ 은 입주자들이 회의실, 육아방,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개념적 정의에 부합하므로 주거인프라의 범위에 포함한다.

표 3-16 |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관련 법령

구분	주요 내용	법령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 공용취사장,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도변경)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단독주택 (저층주거지)	공동 이용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공동 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
	공동체 공간 · 입주자들이 회의실, 육아방,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체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목적 시설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자료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2018. 대통령령 제 29459호(12월 31일 개정).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9. 대통령령 제 30147호(2019년 10월 22일 개정). 별표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8. 법률 제 15317호(2017년 12월 26일 일부개정).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 법률 제 16383호(2019년 4월 23일 일부개정). 제2조 및 제 4조.,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7. 서울특별시조례 제 6598호(2017년 7월 13일 제정) 제2조.

(2) 주거인프라 지원 현황: 보육중심 공동시설 확대

① 건설형 공공주택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단지내 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의 면적, 설치규모, 외부놀이터, 보육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면적 기준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동일하다. 공공주택에서는 어린이집 정원을 1,500세대를 기준으로 단지내 세대 수에 따라 규정하고 있고, 행복주택은 일반 공공주택과 별도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의료·보육·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택배·세탁·간단수리·심부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대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주민 일상생활 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17 | 공공주택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주요 법령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법령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면적 기준 규정(영유아 1명당 4.29㎡ 이상) · 어린이집 정원 기준에 따른 설치 규모 규정(행복주택 제외) · -1,500세대 미만 : (50+(전체 세대수-500)×0.05)명 이상 · -1,500세대 이상 : (100+(전체 세대수-1,500)×0.01)명 이상 · 단지내 놀이터를 제외한 보육시설의 외부놀이터 면적 기준 규정(영유아 1명당 1㎡ 이상) · 보육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 기준 규정(표 22 참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4
입주민 일상생활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세대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의료·보육·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 단지 여건에 따라 사회적 기업등의 입주공간을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을 통해 택배·세탁·간단수리·심부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대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주민 일상생활 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6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국도교통부훈령 제1185호, 2019.5.1., 일부개정)
<http://www.law.go.kr/> (2019년 6월28일 검색)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 외 보육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에 대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인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배치할 때 보차분리 등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고, 평면계획에서는 계단의 경사도, 너비, 단높이, 난간의 간살 간격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단지 내 전면부 혹은 중앙부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다. 보육시설의 시설환경은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여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 평면계획 상에서는 보육실의 남향 배치. 영아보육실에 간단한 샤워시설을 구비 등을 통해 아동이 쾌적하고 양호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18 | 공공주택 내 보육시설 설계기준

구분	설계기준
배치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차분리 등을 통한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 2.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 3. 단지규모를 감안하여 접근성 및 인지성이 좋은 단지 전면부 또는 중앙부에 우선배치 4. 가급적 독립적인 건물로 계획
평면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부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기동식 구조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적용 2. 부대복리시설과 복합건물일 경우 별도의 화장실, 출입문, 외부놀이공간을 확보 3. 보육실은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천정고는 2.4~2.7미터로 계획 4. 영아보육실과 유아보육실로 구분 계획하며, 영아보육실 안에 간단한 샤워시설 설치 5. 교구 및 교자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6. 유희실은 외부놀이 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보육시설이 대규모인 경우 유아와 영아의 유희실을 분리하여 계획 7. 영·유아 화장실 변기수는 8~10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며, 문 높이는 교사 및 보모가 볼 수 있도록 1~1.2미터로 계획 8. 놀이 후 손 씻는 공간을 외부놀이터에 인접하여 설치 9. 계단 설치시 경사도는 30도 이하로 하고, 계단 너비 20~25센티미터, 단높이는 14~16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10. 난간의 높이는 60~90센티미터,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아이들의 몸이 빠져나가지 않는 10센티미터 내외로 설치 11. 주방·식당 안에 10명 내·외의 유아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9 (국토교통부훈령 제1185호, 2019.5.1., 일부개정) <http://www.law.go.kr/> (2019년 6월28일 검색)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단, 행복주택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 규모는 전체 세대수가 아닌 신혼부부와 주거급여수급자 세대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편의시설 및 특화된 주민공동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가 가능한 특화시설로 입주민 보육·경로시설에 해당하는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

대여실, 옥외 유아놀이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주주민의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개방형 복합공간 또는 가변형 구조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9 | 행복주택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관련 주요 법령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법령
어린이집	· 어린이집 정원 기준에 따른 설치 규모 규정 -((신혼부부 세대수)×0.33+(주거급여수급자 세대수)×0.1)명 이상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4
지역 편의시설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 지역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변여건 상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협의를 거쳐 기준보다 작은 면적으로 하거나 확보하지 않을 수 있음 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200㎡ 이상 2.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 350㎡ 이상 3. 7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500㎡ 이상 4. 1,000세대 이상 : 750㎡ 이상 5. 1,500세대 이상 : 1,000㎡ 이상 · 지역편의시설은 지역주민과 행복주택 입주주민이 교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 지역편의시설은 가급적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연계 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재원 분담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의 운영기관에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귀속 가능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7
주민공동 시설특화	· 행복주택 입주주민의 특성에 따른 이용 수요,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선택하여 설치가능 1. 기본설비 : 무인택배보관함 설비, 무선인터넷통신 설비, 대학생·청년에 공급하는 주택의 빌트-인 설비 2. 입주민 생활편의시설 :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 방문자숙소 등 3. 입주민 소통교류시설 : 주민카페, 주민휴게시설, 다목적회의실 등 4. 입주민 성장발전시설 : 도서실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컴퓨터·사무기기실 등 5. 입주민 건강체육시설 : 피트니스센터, 단체운동실, 옥내외 스포츠·운동시설 등 6. 입주민 취미여가시설 : 동아리방, 교육·체험실, 전시·공연장, 영상·음악감상실, 유희실 등 7. 입주민 보육·경로시설 :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대여실, 옥외 유아놀이터, 고령자 휴게·활동실 등 · 주민공동시설은 필요한 경우 입주주민의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개방형 복합공간 또는 가변형 구조로 설치 가능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입주계층 및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시설 또는 지역편의시설 등 다른 시설로 대체 가능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8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85호, 2019.5.1., 일부개정)
<http://www.law.go.kr/> (2019년 6월28일 검색)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행복주택보다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한 신혼희망타운은 종합보육센터 및 타 주민공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 친화형 환경조성을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 케어시설이 집적된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보육센터는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방과후 교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스마트 환기시스템과 화상방지 수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가 및 주거서비스 운영과 입주자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목적실, 게스트하우스,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실 등을 타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3-20 | 신혼희망타운 주민공동시설 설계기준

구분	설계기준
종합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친화형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케어시설을 집적화한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한다. - '종합보육센터'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방과후 교실 등의 시설들로 계획한다. - 맘스카페는 종합보육센터 내 또는 단지 주출입구 차량대기장소(Drop-off Zone)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설계규모를 반영하고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종합보육센터 내 기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규모 확대 등 공간 활용의 가변성을 고려한다. -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스마트 환기시스템 및 화상방지 수전 설치 등 설비시설을 특화한다.
타 주민공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보육센터 외 편의 및 여가시설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실 및 다목적실 등을 설치한다. - 다용도 기능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가변성 높은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입주자 방문객 응접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다. - 종합보육센터 및 기타 주민공동시설을 통한 주거서비스 운영요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16 (국토교통부훈령 제1185호, 2019.5.1., 일부개정) <http://www.law.go.kr/> (2019년 6월28일 검색)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실제 신혼희망타운에서는 단지 내 육아관련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단지 중앙에 집적화시킨 그로잉 센터(Growing Center)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로잉센터(Growing Center)는 확충된 육아관련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중앙에 집적 배치하여 영·유아 케어 및 부모들의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아이들이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있는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맞춤형 놀이터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선정안을 보면 외부환경에 영향 없는 놀이공간을 구현하여 초미세먼지에도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차양막 설치 및 대형녹음수 식재로 날씨에 상관없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계획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아이들의 놀이 행태에 따라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구분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놀이터를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림 3-4 | 365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및 조경시설물 당선작



자료: 환경과 조경. 2018. “LH, 신혼희망타운 ‘맞춤형 조경시설·놀이시설’ 공모 당선작 발표.”. 9월19일.
<http://www.lak.co.kr/news/boardview.php?id=5346> (2019년 11월 13일 검색)

② 매입·전세형 공공주택

2018년 7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건설형 임대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육지원시설이 열악한 매입임대주택 내에도 아이 돌봄공간을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이 돌봄공간은 동(棟)단위로 매입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확충하고, 이를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19년 시범사업을 실시(가정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총 10개소)하고, '22년까지 매입임대주택 내 돌봄 시설 100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중랑구에 공급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층 상가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돌봄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시설은 블록놀이공간, 독서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주민 외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그림 3-5 |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돌봄 공간 예시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8.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방안. p.10

3) 주거서비스 정책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관련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현황을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최근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주거서비스 지원현황은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 중 양육친화적 서비스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1) 주거서비스 관련 법령

20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및 입주자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에서는 ‘복지서비스시설’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지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시설의 개념은 본 연구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동법 제3조와 제10조의 3에 제시되어 있다.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중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9에서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설계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생애주기, 육아 및 보육여건을 고려한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에서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처리지침 제82조 주거서비스 활성화 관련 조항은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주거서비스 전문기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2) 주거서비스 지원 현황

① 양육관련 주거서비스 세부규정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에서는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을 국가가 지원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 주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생애주기, 육아 및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설계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설계기준에서는 종합보육센터 및 타 주민공동시설을 통한 주거서비스 운영요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주거인프라와 주거서비스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복지·보육·가족지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의 경우 가급적 중앙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전문기관, 임대사업자 등 여러 주체에 대해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선정된 전문기관은 입주계층에 특화된 평면설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주거서비스 관리계획 수립 지원과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입주 시 주거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의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반영할 수 있다.

표 3-21 |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지원 관련 주요 법령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법령
공공주택	<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p>
	<p>·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은 가급적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할 수 있음</p>	<p>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7</p>
	<p>· 신혼희망타운 주택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생애주기, 육아 및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설계를 해야 함</p>	<p>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9</p>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기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전문기관은 입주계층에 특화된 평면설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주거서비스 관리계획 수립 지원,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함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입주 시 주거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의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반영할 수 있음 	<p>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p>

자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016. 법률 제 13805호(2016년 1월 19일 타법개정). 제3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2018. 국토교통부훈령 제 1057호(2018년 7월 25일 일부개정). 제34조의 7 및 제34조의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8. 국토교통부훈령 제 1052호(2018년 7월 23일 일부개정). 제 82조.

② 양육친화적 주거서비스: 보육플랫폼 조성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행복주택의 특화시설 강화를 위해 아동의 연령대별로 보육지원, 청소, 생활가전 렌탈, 카세어링 등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유아대상 서비스로는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공동육아나눔 공간 마련이 있으며 소아는 키즈카페 및 실내놀이터 설치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취학아동에게는 쿠킹클래스와 어린이공방 등의 여가 및 보육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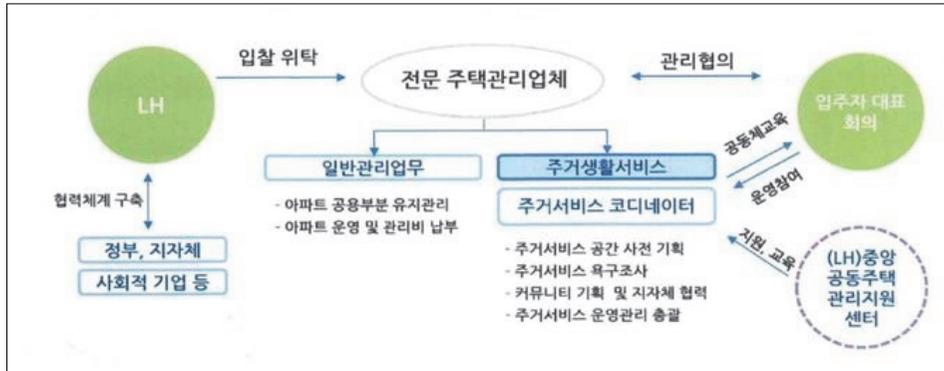
그림 3-6 |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

육아·교육 등 특화 서비스 제공					
1단계(유아)		2단계(소아)		3단계(취학)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쿠킹클래스	어린이공방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p-7

신혼희망타운은 입주대상자 대다수가 양육가구 혹은 예비양육가구로서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육아·교육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7대 전략에서는 육아관련 커뮤니티 시설이 집적된 그로잉 센터(Growing Center)에 전문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주택관리업체가 시설물관리 등 일반관리 업무 외에 주거서비스 운영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의 주거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커뮤니티 활동 등을 계획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지 내 주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3-7 |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도입 체계



자료: LH. 2018.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전략. p.3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을 새로운 개발방향으로 제시하고,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에서 주거와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결합한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서는 신혼부부 특화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소통공간 등 유아부터 취학아동까지 필요한 보육시설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조성하는 보육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3-8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보육플랫폼 조성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8.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방안. p.11

3. 타부처(교육·복지·육아) 정책

전통적으로 양육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부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아동의 연령과 정책의 성질에 따라 3개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이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감안하여 영유아(만0~6세)와 초등학생(만7~12세)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주거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정책들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1) 영유아 정책 부문

영유아 대상 정책은 2017년 12월 발표된 ‘유아교육 혁신방안’과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이 대표적이다.

(1) 유아교육 혁신방안: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모든 유아가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크게 4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 중 ‘교육의 공공성 실현’ 방향에서는 세부 추진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5년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이다.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⁴⁾하고 있다. 이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주거인 프리와 관련이 깊은 정책방안으로 택지개발지구나 취약지구에 대한 관리와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교육부. 2018.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달성. 2월 12일. 보도자료

① 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 국공립 유치원 확충 사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 사업⁵⁾은 당초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이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19년 내 전국 1,000개 학급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증설을 통해 약 2만여 명의 유아가 추가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이며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공급방식도 단설유치원을 비롯하여 매입형이나 공영형으로 다양화하였다.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

2006년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시되면서 저출산의 해결 방안으로 복지차원의 보육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보육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7월 「제1차 중장기보육 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보육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거쳐 2017년 12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이르렀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으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는데 중점⁶⁾을 두고 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증가와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보장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추구한 것이다. 또한, 4개 정책과제 중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는 각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를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일종의 주거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는 주거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육부. 2018.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12월 6일. 보도자료

6) 보건복지부. 2017.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발표. 12월 27일. 보도자료

① 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 1: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⁷⁾

해당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부터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각 시군구별 연 1개소 이상 시설 확충 및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보육수요 1천명 이상의 읍면동에 우선 설치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을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공급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에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임대 주택 단지내 국공립 설치 원칙 등을 마련하여 실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매년 240개소 이상 시설을 확충하여 2022년까지 1,2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② 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 2: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사업⁸⁾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공급을 확충하고 온오프라인 양육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가정양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영유아 수를 고려하여 거점형·이동형 센터를 도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시군구 단위에 양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③ 정책 지원 계획 및 현황 3: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사업⁹⁾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이원화되었던 자격기준을 통일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맞벌이 1천원 자부담, 월 80시간과 기본형 2천원 자부담, 월 40시간의 두 종류 서비스가 있었으나, 자부담 1천원, 월 최대 80시간 지원으로 일원화하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7) 보건복지부. 2018.12.2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p.19.

8) 보건복지부. 2018.12.2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p.33.

9) 보건복지부. 2018.12.2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p.34.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문화센터나 복지센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 및 지역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2) 초등학생 정책 부문

초등학생 대상의 정책은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아동 돌봄의 질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정책은 방과후돌봄 정책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교육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방과후돌봄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체계이다.

온종일 돌봄체계는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상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개념¹⁰⁾으로, 기본 방향은 다양한 돌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을 확대하고 중앙, 지방, 돌봄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돌봄 내실화¹¹⁾이다.

온종일 돌봄체계의 3대 과제는 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선도모델 개발·확산, 기존 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역량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반 마련으로 구성된다. 돌봄

10) 범정부 공동추진단. 2017.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12월 28일. 보도자료

11) 범정부 공동추진단. 2017.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12월 28일. 보도자료

생태계 선도모델 개발·확산은 아동 중심의 돌봄 생태계 구축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역량 제고는 시설구축과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며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틈새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반 마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공급 목표는 현재 33만명 수준인 돌봄 이용 아동의 수를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각각 34만명과 19만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돌봄의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위주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되, 저학년은 맞벌이 가정 돌봄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확대하며 고학년은 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운영 시간은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할 계획에 있다.

온종일 돌봄사업은 앞서 설명했듯이, 크게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구분되는데, 추진계획에 맞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학교돌봄은 교육부에서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약 24만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마을돌봄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어린이집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까지 53만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의 증축 및 마을돌봄 관련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사업의 확대 및 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표 3-22 | 부처별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현황 및 확대계획

구분		초등돌봄 이용 대상	이용 아동 수
현행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대상 약 24만명 - 1~2학년: 21만명 - 3~6학년: 3만명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취약계층 대상 8.2만명
		방과후 어린이집(복지부)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중심 0.6만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취약계층(4~6학년) 대상 0.6만명
총 합			약 33만명



구분		초등돌봄 이용 대상	계획 아동 수	
계획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대상 약 34만명(△10만명) - 돌봄교실 확대(△7만명) - 교실활용(△3만명)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취약계층 대상	10.4만명(△1만명)
		방과후 어린이집(복지부)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중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취약계층(4~6학년) 대상	
		다함께 돌봄(복지부)	초등학생(만6~12세) 대상 9만명(△1만명)	
총 합			약 53만명	

자료 : 청와대 보도자료. 2018.4.4. 문재인 대통령, 서울경동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방문. p.3을 참고로 재작성

① 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 1: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사업¹²⁾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학생으로 주로 저학년 대상이며, 대상 선정의 기준은 소득과 맞벌이

12) 교육부. 내게 꼭 맞는 혜택, 교육지원 한눈에. <https://eduone.moe.go.kr/search.html?type=tab4>. (2019년 6월 29일 검색).

여부를 조사하여 단위 학교 자체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17시까지 제공되며,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은 돌봄공간 증축과 겸용교실 리모델링 및 신설 학교의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를 통해 2022년까지 3,500실, 연간 700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돌봄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시 마을돌봄 사업과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② 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 2: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¹³⁾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교육하고 보호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존손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맞벌이가족의 초·중학생 아동이며,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상, 주5일로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주말 운영도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숙제지도와 교과학습지도 등의 교육과 체험학습, 아동상담 및 보호자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 3: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어린이집 사업¹⁴⁾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어린이집 사업은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에게 독서, 학습, 인성교육 등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는 영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맞벌이가구의 아동에 우선권을 주고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20%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농산어촌과 같이 방과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20~50% 범위 내에

13) 보건복지부. 인구아동 정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102&PAGE=2&topTitle=%EC%A7%80%EC%97%AD%EC%95%84%EB%8F%99%EC%84%BC%ED%84%B0. (2019년 6월 29일 검색).

1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30000/d1_600058/d1_600220/d1_600226.jsp. (2019년 6월 29일 검색).

서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4시간 이상 제공하되, 19:30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최소 5명 이상이 종일반 보육을 지속해야하며,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필요하다.

④ 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 4: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¹⁵⁾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에 초등학교 4~6학년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중 저소득층(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방과 후부터 21시까지로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지역 여건 및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체험활동, 기초학습, 급식,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이며,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 26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¹⁶⁾

⑤ 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 5: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 사업¹⁷⁾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 사업은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한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와 제6조를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16일 이후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서 다함께 돌봄 센터의 기능, 서비스의 종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15)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4.do. (2019년 6월 29일 검색).

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소개. <http://www.youth.go.kr/yaca/about/about.do>. (2019년 6월 29일 검색).

17)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표 3-23 | 다함께 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6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p.5-6을 참고하여 작성

사업의 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만 6~12세)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대상 선정의 기준은 소득과 맞벌이 여부를 조사하여 단위 학교 자체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상시돌봄과 일시돌봄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시돌봄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시돌봄은 일정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하며 일시적돌봄은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비정기적으로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1,817개소(9만명)를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내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연계 및 병행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⑥ 돌봄체계 현황

교육·복지·육아 부문의 부처별 돌봄체계를 아동의 연령과 일과시간을 고려하여 분석했을 때, 방과 후 초등돌봄에 공백이 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적영역에서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며 그 해결하는 방안으로 돌봄 시설의 신규 공급뿐 아니라 기존 유휴 시설과 주거 및 근린환경을 활용하여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4 | 타부처 돌봄체계 현황

연령(만)	영유아							초등학생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시	- 어린이집, 유치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학교 정규수업 (만7-8: 13시, 만9-10: 14시, 만11-12:15시)					
13-19시								- 초등돌봄교실					
19시 이후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 지역아동센터					

자료 : 청와대 보도자료. 2018.4.4. 문재인 대통령, 서울경동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방문. p.3을 참고로 재작성

4.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정책 및 타부처 양육지원 정책의 법률적 기반과 정책 지원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현상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적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관련 부처들에서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거정책의 경우 인간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육가구 정책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환된 저출산 정책의 기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문적·법률적·사회적으로 주거정책이라 하면 시장 측면의 주택 정책과 복지적 관점이 반영된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의 주거지원 정책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양육가구 관점에서 주거정책의 범위는 기존 주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거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특별공급, 특화단지 공급,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상향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거지원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아닌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주택 이용이나 주택관련 대출에 있어 지원이 부족하므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거인프라 정책은 필요시설의 공급을 위해 주택 유형 및 신규 공급 여부에 따라 해당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경우 양육관련 인프라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신규공급과 기존단지에 따라 양육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법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단독주택지는 관련 법령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관련 인프라 공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양육 시설에 대한 수요 및 필요 시설의 종류, 공급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공급시설의 종류와 위치,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서비스 정책은 과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부터 현재의 신혼희망타운 특화단지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어왔다. 하지만 실제 주거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시스템 부재, 공간 및 서비스간 연계 미비, 주거서비스 수요 파악 미흡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주거서비스 정책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기존의 문제점 및 이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육아 등 타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친화 정책은 대부분 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하기 위해서는 공간확보가 요구되며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시설 확충 정책과제를 대략 9가지 정도이다. 영유아 대상 시설로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교육부),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보건복지부)가 해당된다. 초등학생 대상 시설로는 학교돌봄 영역에 속하는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마을돌봄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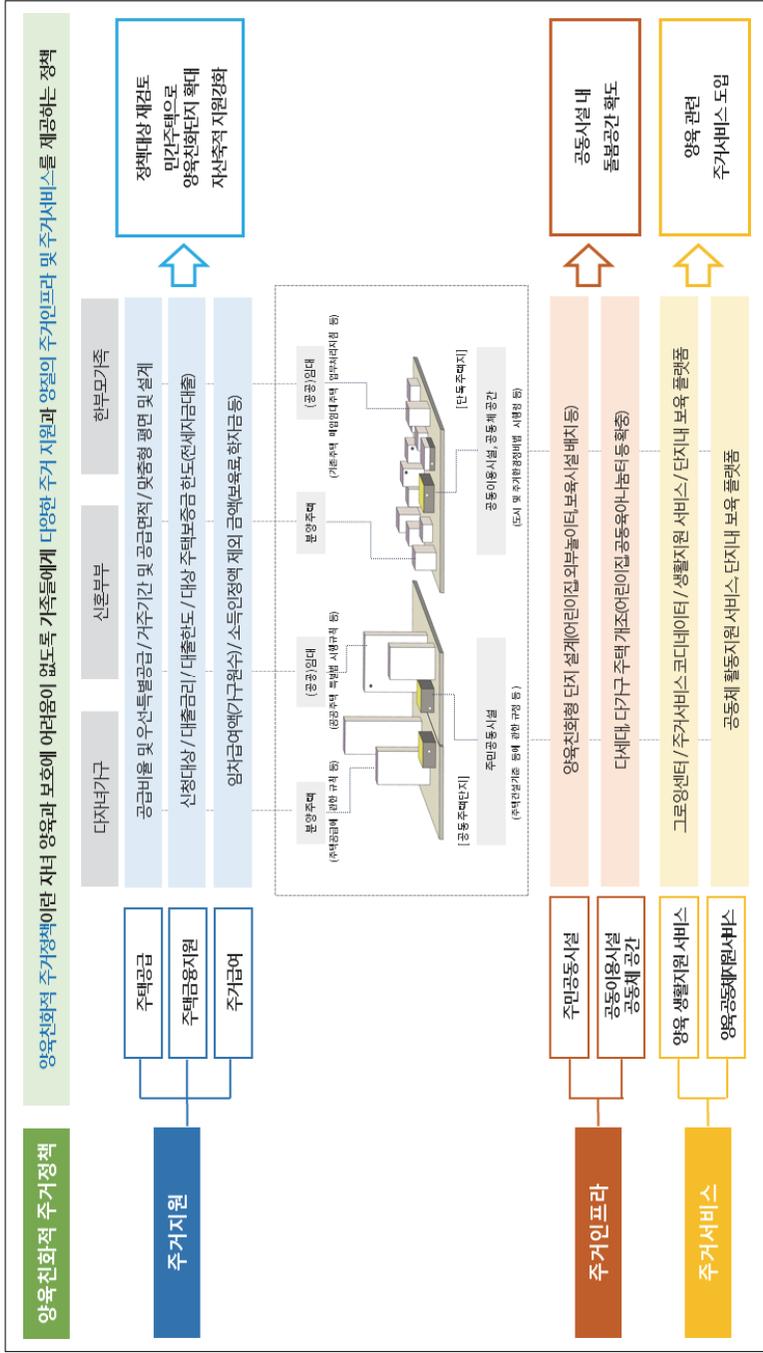
표 3-25 | 교육·복지·육아 부문의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구분		내용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영역		
영유아	국공립 유치원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시설 신·증설	주거인프라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급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온오프라인 양육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를 추진			
	시간제 보육 서비스 (복지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이원화되었던 자격기준을 통일하여 지원을 확대			
초등 학생 대상	학교 돌봄 (교육부)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마을 돌봄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교육하고 보호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방과후 어린이집 (복지부)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에게 독서, 학습, 인성교육 등을 지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가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다함께 돌봄 (복지부)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한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자료 : 저자 작성

이러한 시설들은 본 연구의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요소에서 주거인프라지원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설확충과 수요자의 이용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사업의 주관 부처간의 협력 및 연계성 강화와 함께 주거공간을 활용한 공급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양육친화적 시설들의 이용자가 만 0~12세 아동을 고려할 때 거주지의 위치, 유형, 주택과 시설과의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이 시설 공급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9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와 정책현황



자료: 저자 작성



4

CHAPTER

양육가구 주거지원 현황 및 개선점 도출

- 1.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 검토 | 75
- 2. 주거정책 요소별 지원 현황 분석 | 79
- 3. 주거정책 개선점 분석 | 86
- 4. 요약 및 시사점 | 100

양육가구 주거지원 현황 및 개선점 도출

본 장에서는 양육가구의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 주거지원 현황 및 주거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양육가구의 주거지원 현황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인 주거지원 정책,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구성요소별 정책 정책지원 현황과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택유형, 아동연령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의 개선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 검토

1) 정부의 출산과 양육 지원 필요성

기혼 여성(15~49세)의 경우 정부의 출산과 양육지원 필요성에 대해 38.8%는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8.3%는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2%만이 국가의 지원이 별로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지원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0.4%에 그치고 있다. 즉, 정부의 출산과 양육지원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97.1%로 거의 대부분의 기혼 여성이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1 | 국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구분	비중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8.8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58.3
별로 지원할 필요 없다	2.2
전혀 지원할 필요 없다	0.4
모르겠음	0.4
계	100.0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277을 참고하여 재작성

2)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 여건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을 분석한 결과, 소득 향상 및 고용 안정이 2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주택가격 안정이 21.1%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10.5%),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9.9%), 양육관련 주거서비스 제공(9.8%)과 주거안정성 확보(8.2%) 순서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 여건 중 주거 관련 여건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육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거정책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는 소득향상 및 고용안정(25.8%), 대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안정(각 24.0%, 22.9%)을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 응답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양육가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여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준 아동연령별로 분석했을 때는 영아 및 유아는 주택가격 안정(각 24.7%, 26.1%), 초등 저, 고학년은 소득향상 및 고용안정(각 22.3%, 23.4%)을 가장 바람직한 여건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유아의 경우 양육 관련 주거 서비스 제공을 바람직한 여건으로 13% 정도 응답하였고 나머지 연령유형은 7.2~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다른 연령유형에 비해 3.5~6.2%p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주거서비스를 중요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 |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지역			응답기준 아동연령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소득향상 및 고용 안정	22.4	19.8	25.8	19.8	23.6	20.3	22.3	23.4
주택가격 안정	21.1	24	17.7	22.9	24.7	26.1	15.9	17.9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10.5	9.7	10.0	14	11.8	9.5	10.2	10.6
자녀 양육 비용 부담 해소	9.9	9.3	9.3	12.9	11.8	9.4	11.1	7.3
양육관련 주거서비스 제공	9.8	10.4	9.3	9.4	7.2	13.4	9.9	8.7
주거안정성 확보	8.2	8.2	8.7	7.0	7.2	5.5	11.3	8.7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6.9	8.2	6.5	4.6	2.7	4.7	6.8	13.2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5	4.9	5.6	3.5	6.1	4.7	6.8	2.3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2.5	2.5	3.3	0.6	2.3	2.7	1.9	3.3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2.4	1.4	2.7	4.1	1.9	1.9	2.3	3.5
양성평등 구현	1.1	1.4	0.9	1.2	0.8	1.2	1.5	1.1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0.1	0.0	0.2	0.0	0.0	0.4	0.0	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양육친화 주거정책 우선순위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양육 관련 시설의 확대(35.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17.9%), 주택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지원 확대(17.6%),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16.9%),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11.7%)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13.6%)와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19.2%)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반면, 중소도시는 주택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지원 확대(18.9%),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18.1%)의 응답비중이 높았고, 농어촌지역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양육관련 시설의 확대(40.9%)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기준 아동연령별로는 영아인 경우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21.3%)와 주택공급 확대(14.1%)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유아는 양육관련 시설 확대(39.8%)와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19.%)를 다른 연령에 비해 중요한 정책으로 손꼽았다. 초등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가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3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단위: %)

구분	전체	지역			응답기준 아동연령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양육관련 시설의 확대	35.9	33.7	35.9	40.9	31.2	39.8	38.3	34.5
주택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지원 확대	17.6	17.7	18.9	14.0	16.6	13.7	19.1	20.8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16.9	15.8	18.1	16.4	21.3	13.0	17.2	15.8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11.7	13.6	9.5	12.9	14.1	13.9	8.6	10.3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17.9	19.2	17.6	15.8	16.8	19.6	16.8	18.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1: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사/생활지원 등의 주거서비스 확대와 아동이 이용 가능한 주거서비스 확대의 비중의 합계임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주거정책 요소별 지원 현황 분석

1) 주거지원 정책

(1) 주거지원 정책 현황 분석

주거지원 정책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인지도, 이용도와 만족도를 일반가구, 신혼부부,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일반가구(73.4%), 신혼부부(80.7%), 양육가구(81.2%)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신혼부부나 양육가구가 기타 주택개량·개보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혼부부와 양육가구 사이에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용도 측면에서는 모든 가구에서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가구(7.4%)에 비해 신혼부부(17.4%)와 양육가구(17.0%)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각 가구별 이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순위를 비교했을 때도 일반가구는 주택 구입자금대출지원(7.4%) > 공공임대주택(5.1%) >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2.8%) >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는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각 17.4%, 17.0%) >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각 8.5%, 5.0%) > 공공임대주택(각 4.7%, 5.0%) > 공공분양주택(각 1.0%, 1.2%)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만족도 면에서는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제 일반가구, 신혼부부, 양육가구 간 만족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두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 공공임대주택 >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의 순서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주거지원 정책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인지도, 이

용도, 만족도 면에서 신혼부부와 양육가구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일반가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가 유사한 특성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중심의 정책대상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 주거지원 정책 현황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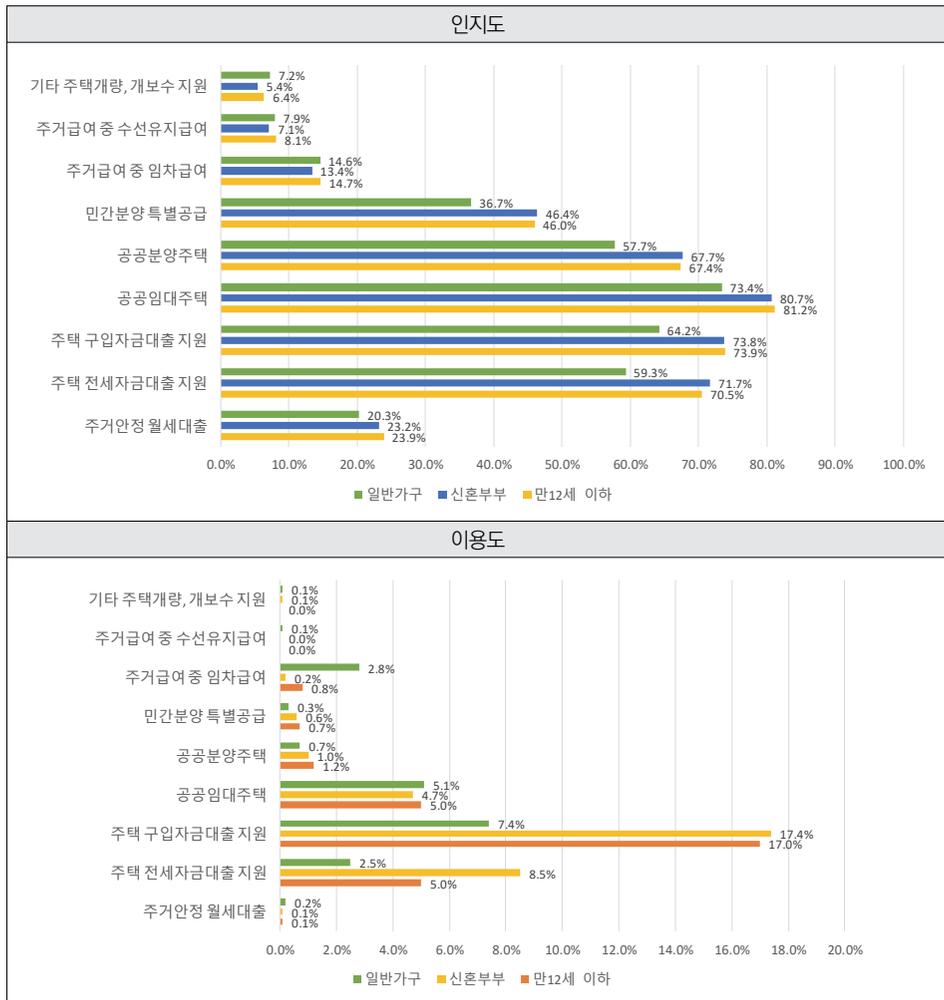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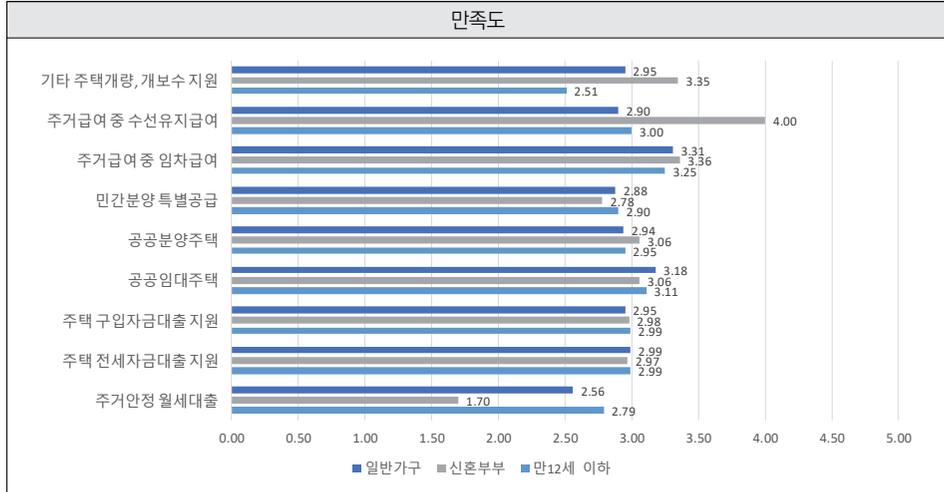


그림 4-1 | 주거지원 정책 현황분석 (계속)

(단위: 점)



주1 :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7년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육가구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주2 :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 약간 불만족 2점, 대체로 만족 3점, 매우 만족 4점으로 응답

자료 :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주거지원 정책 필요성 분석

가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모든 가구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의 순위 면에서는 가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14.7%) > 전세자금 대출 지원(11.1%) > 장기공공임대 공급(7.6%) > 공공분양주택 공급(6.5%)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각 27.7%, 25.0%) > 전세자금 대출 지원(각 14.9%, 11.1%) > 공공분양주택 공급(각 9.5% 8.4%) >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각 7.9%, 7.0%)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아 점유형태 측면에서 임차보다는 자가 마련이 용이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혼부부와 양육가구 간에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순위나 비중 면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거지원 정책의 정책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양육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단위: %)

구분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1순위+2순위)					
	일반가구	신혼부부	양육가구(만12세 이하)			
			전체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월세보조금 지원	4.8	2.1	1.8	2.2	1.3	1.8
전세자금 대출 지원	11.1	14.9	11.1	11.8	10.0	10.9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14.7	27.7	25.0	24.9	25.1	24.5
주택개량, 개보수 지원	4.6	2.9	3.6	3.4	3.7	4.4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	6.1	7.9	7.0	7.3	6.2	9.0
장기공공임대 공급	7.6	6.4	5.5	6.1	4.6	7.0
공공분양주택 공급	6.5	9.5	8.4	9.0	7.6	8.7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등	4.1	4.6	4.2	4.5	3.8	4.5

주1 : 2018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주2 :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7년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육가구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주3 : 조사에서 귀 가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1순위 또는 2순위에 응답한 가구에 대한 비율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1)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현황 분석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의 현황 분석은 양육관련 주거인프라별 이용여부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주거인프라의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실외 놀이터가 70%대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외 놀이터에 대한 이용(78.4%), 실내놀이터(49.5%), 운동시설(34.4%), 주민자치실(33.0%)은 중소도시에서 이용비중이 높았

고 그 외 인프라는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주민자치실을 제외한 양육관련 주거인프라에 대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양육가구의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외놀이터와 운동시설의 경우 아파트 거주 양육가구가 비아파트 거주 양육가구에 비해 각각 14.0%p와 19.0%p 높은 이용도를 보였다. 이는 실외놀이터와 운동시설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로서 세대수에 따라 세부 규정은 차이가 있으나 비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 공급이 용이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4-5 | 주거인프라 이용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지역			주택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아파트	비아파트
어린이집/유치원	56.7	54.6	58.6	57.0	58.1	53.0
야외활동 가능한 장소	42.8	38.9	44.6	47.3	44.9	37.2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	19.5	17.3	19.4	25.1	19.6	19.3
실외놀이터	76.1	73.9	78.4	75.5	79.9	65.9
도서관	55.4	50.9	57.6	60.2	57.9	48.7
실내놀이터(키즈카페)	47.8	46.2	49.5	47.4	48.8	45.2
운동시설(피트니스)	32.0	29.8	34.4	30.9	37.1	18.1
공동육아나눔터	6.6	6.5	5.8	8.8	6.4	7.1
주민자치실	29.6	25.2	33.0	31.0	29.3	30.5

주 : 이용여부는 주거인프라(주거지원시설) 이용여부에 대한 응답문항 중 '①예' 라고 응답한 수의 비중임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주거인프라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대도시가 실내놀이터(80.1%)와 운동시설(86.9%)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는 타지역에 비해 야외활동 가능 장소(87.6%), 주민자치실(83.0%)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농어촌 지역은 어린이집/유치원(87.6%), 방과후 공부방(83.7%), 실외놀이터(79.1%), 도서관(87.3%), 공동육아나눔터(73.2%)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주택유형을 고려했을 때는 이용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아파트 거주 양육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대도시와 비아파트에서 양육관련 주거인프라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인프라 공급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6 | 주거인프라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지역			주택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아파트	비아파트
어린이집/유치원	87.1	87.4	86.6	87.6	86.5	88.7
야외활동 가능한 장소	42.8	86.6	87.6	85.2	88.3	81.1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	79.9	79.9	78.0	83.7	82.5	72.6
실외놀이터	74.7	74.7	73.1	79.1	77.3	66.4
도서관	84.7	83.1	84.9	87.3	86.4	79.3
실내놀이터(키즈카페)	77.5	80.1	78.0	70.3	79.2	72.7
운동시설(피트니스)	83.0	86.9	80.1	82.9	82.4	86.4
공동육아나눔터	65.3	56.8	69.2	73.2	65.6	64.6
주민자치실	80.6	77.9	83.0	79.2	81.1	79.3

주 : 만족도는 응답분항(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만족) 중 '③만족'과 '④매우만족' 응답수를 합한 비중임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3) 주거서비스 지원정책

(1) 주거서비스 지원정책 현황 분석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은 전체 양육가구 및 지역별, 주택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여부별로 주거서비스의 이용여부를 분석하였다. 전체 양육가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양육 프로그램이 19.6%로 가장 높은 이용도를 보였으며 무인택배가 17.1%, 가사지원서비스가 12.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양육프로그램(각각 18.5%, 21.2%)의 이용이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지역에서는 무인택배(22.2%)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무인택배(21.6%)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비아파트의 경우 양육프로그램(19.3%)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비아파트의 경우 무인택배함과 같은 인프라를 설치할 공간 마련이 쉽지 않을뿐더러 인프라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주체와 비용 마련의 문제가 있어 주거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 거주여부를 살펴보면, 공공임대 거주 가구의 경우 무인택배(21.1%), 아이돌봄 서비스(7.7%), 가사지원 서비스(12.3%) 등의 주거서비스를 공공임대 비거주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목할 만 한 점은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주거서비스가 꼽혔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7 | 주거서비스 이용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지역			주택유형		공공임대 거주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아파트	비아파트	거주	비거주
아이돌봄 서비스	4.7	4.4	4.9	5.3	4.8	4.6	7.7	4.2
양육프로그램	19.6	18.5	21.2	18.1	19.7	19.3	14.5	20.5
가사지원 서비스	12.0	12.5	11.3	12.3	12.8	9.6	12.3	11.9
조식 서비스	0.9	1.2	0.7	0.6	0.9	0.7	2.6	0.6
무인택배	17.1	13.3	18.4	22.2	21.6	4.6	21.1	16.4
개별 창고	3.1	3.7	2.2	4.1	2.5	4.9	2.7	3.2
양유가구 모임지원	2.1	1.7	1.8	4.1	1.7	3.2	2.6	2.0
카셰어링	2.6	2.8	2.9	1.2	2.1	3.8	7.8	1.7

주 : 향후 이용의향은 주거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응답문항 중 '①예' 라고 응답한 수의 비율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3. 주거정책 개선점 분석

1) 주거지원 정책

(1) 주택공급 지원정책의 향후 이용의향과 개선점

① 향후 이용의향

주거지원 정책의 프로그램별 현재 이용 가구의 비중과 향후 이용의향이 있는 가구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장기공공임대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같은 임차형태보다는 자가 마련이 용이한 분양전환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일수록 주택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아졌으며 아동 수는 1명인 경우가 2명 이상인 가구보다 이용의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4-8 | 주택공급 지원정책의 향후 이용의향

(단위: %)

구분	현재 이용 비중				향후 이용의향 비중				
	장기공공 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분양	장기공공 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분양	
전체	7.8	5.5	5.4	1.0	34.3	16.9	31.8	19.1	
지역	대도시	6.9	7.0	3.0	0.9	37.6	21.7	33.9	22.3
	중소도시	7.9	4.9	6.1	1.3	31.4	13.8	31.8	16.9
	농어촌	9.9	3.5	8.6	0.7	33.9	13.5	26.9	17.6
아동수	1명	7.6	6.4	6.1	2.0	33.5	21.5	33.4	25.5
	2명	8.3	4.4	4.2	0.2	35.3	13.3	30.7	13.8
	3명 이상	6.4	6.1	7.3	0.0	32.8	10.2	28.2	12.1

주1 : 현재 이용여부는 각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의 94.0%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90.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75.2%, 공공분양주택은 84.4%임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② 개선점 분석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공급 대상과 공급 비중 측면에서 아동 수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아동 수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규모가 30.6%, 자산이 9.1%, 혼인가간이 7.8% 순서로 분석되었다.

표 4-9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적 고려사항

(단위: %)

구분	아동수	소득	자산	아동의 나이	혼인가간	부부의 나이	맞벌이 유무	계
비중	31.7	30.6	9.1	8.0	7.8	7.3	5.6	100.0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세부 개선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는 교육시설 인근(학원, 학교 등)이나 역세권(대중교통 등 편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낮거나 아동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교육시설 인근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0 |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1순위)

(단위: %)

구분	교육시설 인근	역세권	직장근처	병원, 복지관 및 공공시설 주변	상업 및 문화시설 주변	기타	계	
전체	48.4	26.6	13.1	7.8	3.7	0.3	100.0	
아동 수	1명	43.3	30.3	15.2	8.2	2.7	0.2	100.0
	2명	49.9	25.7	12.1	7.6	4.2	0.4	100.0
	3명 이상	69.2	10.4	6.8	6.7	7.0	0.0	100.0
응답 기준 아동 연령	영아	35.4	30.4	17.9	11.0	5.0	0.4	100.0
	유아	48.4	27.2	12.2	9.1	2.8	0.4	100.0
	초등 저학년	53.7	26.9	11.9	4.9	2.7	0.0	100.0
	초등 고학년	56.3	22.0	10.4	6.4	4.5	0.4	100.0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 내부 요소들에 관해서는 전용면적을 확대하고 방의 수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기를 희망하였다. 면적의 경우 85㎡이상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56.4%로 과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방의 수는 3개라고 응답한 비중이 83.1%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넓은 면적과 적절한 방의 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1 |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및 적절한 방의 수

(단위: %)

구분	전용면적				방의 수			
	40㎡ 미만	40~60㎡ 미만	60~85㎡ 미만	85㎡ 이상	1~2개	3개	4~7개	평균(개)
비중	0.5	4.3	38.9	56.4	10.2	83.1	6.7	3.0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그 외 보증금 비율은 주변 시세대비 8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대도시의 경우 시세대비 50%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 대도시일수록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계층 및 세대 혼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0%를 넘는 양육가구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적으로 농어촌보다 대도시에서 계층 및 세대 혼합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또한 아동의 수나 응답기준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계층 및 세대 혼합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유사한 소득계층과 가구특성을 가진 가구가 밀집하여 거주하게 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이를 계층과 세대가 혼합된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신혼부부 중심의 주택공급 방향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4-12 |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수준과 계층 및 세대혼합 필요성

(단위: %)

구분	보증금 수준(시세대비)					계층 및 세대혼합 필요성		
	50% 이하	60%	70%	80%	80% 초과	예	아니오	
지역	대도시	35.7	23.1	29.1	11.0	1.2	70.7	29.3
	중소도시	38.8	28.6	22.1	7.8	2.7	72.2	27.8
	농어촌	45.0	17.5	28.1	6.4	2.9	68.9	31.1
아동 수	1명	38.3	23.4	26.6	9.5	2.1	69.5	30.5
	2명	37.7	25.5	27.1	7.8	1.9	72.2	27.8
	3명 이상	45.5	25.8	15.1	10.1	3.5	73.8	26.2
응답기준 아동연령	영아	36.9	22.4	29.6	9.5	1.5	66.2	33.8
	유아	33.6	27.5	29.9	7.0	2.0	69.2	30.8
	초등 저학년	42.4	21.3	24.3	9.7	2.3	73.4	26.6
	초등 고학년	41.3	27.2	20.0	8.8	2.6	75.4	24.6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2) 주택금융 지원정책의 향후 이용의향과 개선점

① 향후 이용의향

향후 이용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주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마련 대출로 60.2%의 양육가구가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마련 대출 다음으로 전세 자금 대출과 월세자금 대출이 각각 34.3%와 17.5%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양육가구가 대체로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보다는 자가 형태의 주택점유형태를 선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주택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일관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나 응답기준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 프로그램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 주택금융 지원정책의 향후 이용의향

(단위: %)

구분	현재 이용 비중			향후 이용의향 비중			
	주택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자금 대출	주택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자금 대출	
전체	16.0	10.6	0.2	60.2	34.3	17.5	
지역	대도시	14.2	11.3	0.4	62.4	35.6	17.8
	중소도시	16.0	11.5	0.0	58.2	32.7	18.0
	농어촌	19.9	6.5	0.0	60.3	35.7	15.8
응답기준 아동연령	영아	17.3	17.5	0.6	64.2	41.8	19.3
	유아	17.1	10.4	0.0	60.7	32.6	17.4
	초등 저학년	15.4	7.9	0.0	56.9	31.3	15.6
	초등 고학년	14.0	5.3	0.0	59.1	31.6	17.9

주1 : 현재 이용여부는 각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내집 마련 대출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의 87.5%이며, 전세자금대출은 75.6%, 월세자금대출은 58.6%임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② 개선점 분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출이자가 부담되어서(34.1%)였으며 두 번째는 대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과 대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아동이 1명인 양육가구의 경우 대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22.3%로 아동이 2명인 양육가구와 비교하여 정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택금융 프로그램 중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 규정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보육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리우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수가 증가할수록 대출가능금액이 적어서 주

택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므로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대출한도를 상향해주는 등 주택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4 |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미의향 이유

(단위: %)

구분	대출받지 않아도 충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서	회사/지인으로부터 빌릴 수 있어서	이자가 부담되지 않아서	대출을 받고 싶지 않아서	대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대출가능 금액이 적어서	프로그램을 몰라서	기타	
전체	20.0	2.7	34.1	12.1	21.6	5.6	3.1	0.9	
아동 수	1명	21.6	2.4	36.0	10.0	22.3	3.5	3.0	1.2
	2명	19.1	3.1	34.4	13.7	20.0	5.8	3.2	0.7
	3명 이상	15.6	2.9	21.9	15.6	25.1	15.7	3.2	0.0
응답 기준 아동 연령	영아	30.0	2.7	17.9	13.8	25.9	4.1	2.8	2.8
	유아	18.3	2.2	32.6	14.3	24.9	5.4	2.3	0.0
	초등 저학년	15.5	2.0	42.1	12.7	15.9	7.0	3.9	1.0
	초등 고학년	18.5	4.1	39.6	7.9	21.1	5.5	3.3	0.0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2)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1)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개선점

① 중요도 및 향후 이용의향

주거인프라 중 양육가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의 교육·보육관련 시설이었으며 다음으로 야외활동 가능 장소와 방과후 공부방(초등 돌봄공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의 경우 중소도시(14.8%)보다 대도시(17.6%)와 농어촌지역(20.5%)에서 더 중요한 주

거인프라로 생각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주택유형별 분석에서는 비아파트가 아파트에 비해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을 중요한 주거인프라로 보는 비중이 4.7%p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아동이 초등학교생인 경우 가장 중요한 주거인프라로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을 선택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5 | 양육친화적 주거요소로서 중요한 주거인프라(1순위)

(단위: %)

구분	어린이집/유치원	야외활동 가능 장소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	실외 놀이터	도서관	실내 놀이터	운동시설(피트니스)	공동육아 나눔터	주민 자치실	
전체	26.1	20.3	16.9	11.3	9.1	7.5	5.0	3.7	0.4	
지역	대도시	26.3	19.9	17.6	10.5	9.6	5.9	7.2	2.6	0.5
	중소도시	25.7	20.5	14.8	12.4	9.8	8.8	3.8	3.8	0.2
	농어촌	26.4	20.4	20.5	10.0	5.8	7.6	2.9	5.9	0.6
주택 유형	아파트	26.8	20.1	15.6	11.0	8.7	8.0	5.8	3.6	0.4
	비아파트	23.9	20.8	20.3	11.9	10.1	6.0	2.7	3.9	0.4
응답 기준 아동 연령	영아	39.2	18.6	7.6	12.6	0.8	11.4	4.9	5.0	0.0
	유아	41.3	16.6	11.0	10.6	5.4	9.1	2.8	3.2	0.0
	초등 저학년	14.4	23.5	27.5	9.9	10.6	5.4	5.3	2.3	1.1
	초등 고학년	10.1	22.3	21.0	11.9	19.3	4.1	6.9	4.1	0.3

주 : 중요도는 양육친화적 주거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인프라(주거지원시설) 1순위 응답 기준결과임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주거인프라의 향후 이용의향 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이용의향이 7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운동시설, 야외활동 가능 장소, 실외놀이터와 같은 여가나 체육관련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자치실 이용의향이 40% 이상이었고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이 어린이집/유치원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지역별 분석결과에서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향후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에서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수요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도서관을 제외하면 아파트 거주자는 운동 시설, 비아파트 거주자는 실외 놀이터에 대한 이용의향이 두 번째로 높았고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이용의향이 가장 낮은 반면 공동육아 나눔터는 약 3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응답기준 아동연령에서 영아는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의향이 54%로 다른 응답 유형보다 높아 주거인프라 중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4-16 | 주거인프라 향후 이용의향

(단위: %)

구분	어린이집/유치원	야외활동 가능 장소	방과후 공부방 (초등돌봄)	실외 놀이터	도서관	실내 놀이터	운동시설 (피트니스)	공동육아 나눔터	주민 자치실
전체	27.8	65.1	59.4	66.4	79.7	54.7	68.4	38.9	42.9
지역	대도시	29.2	67.3	56.7	67.1	81.0	56.8	67.0	43.3
	중소도시	23.3	66.1	59.1	62.2	76.8	51.4	70.1	41.3
	농어촌	35.3	56.6	67.2	73.9	83.9	58.0	67.8	45.8
주택 유형	아파트	26.5	64.6	59.6	62.0	78.9	55.2	72.5	41.4
	비아파트	30.9	66.4	58.9	73.3	81.6	53.6	60.1	47.1
응답 기준 아동 연령	영아	92.5	67.2	59.1	74.3	84.1	80.4	70.4	48.6
	유아	25.2	69.9	74.8	91.8	83.5	78.8	71.6	44.4
	초등 저학년	14.9	61.7	56.9	61.9	78.8	45.4	61.6	33.3
	초등 고학년	12.3	62.4	43.4	53.0	67.5	30.9	70.7	24.5

주 : 향후 이용의향은 주거인프라(주거지원시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응답문항 중 '①예' 라고 응답한 수의 비율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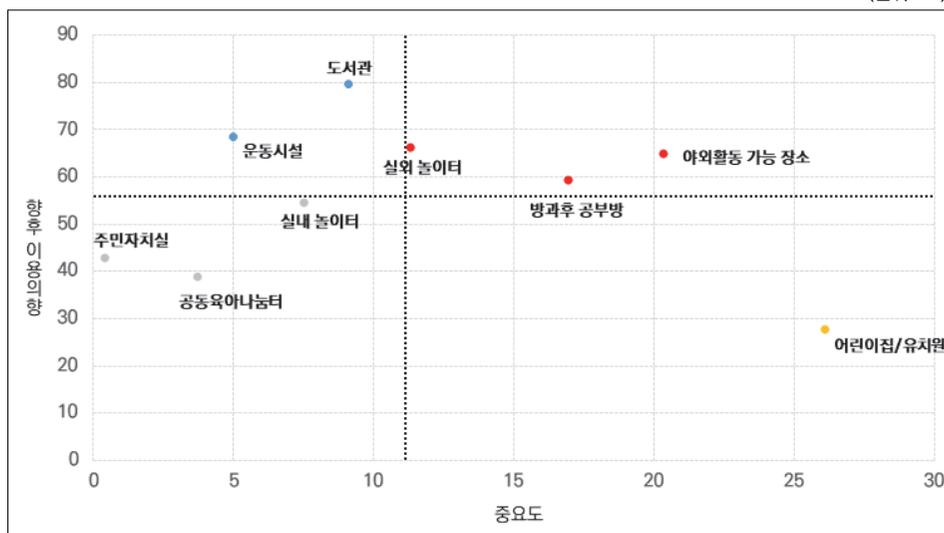
② 개선점 분석

주거인프라에 대한 중요도와 향후 이용의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각 평균값을 중심으로 4개의 사분면으로 구분하여 주거인프라 공급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요도와 향후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난 실외놀이터, 방과후 공부방, 야외활동 가능 장소는 우선공급 1순위(중요도↑, 향후 이용의사↑)에 해당하여 양육관련 주

거인프리를 공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공급 2순위는 중요도가 높고 향후 이용의사가 낮거나 중요도가 낮고 향후 이용의사가 높은 그룹(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혹은 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으로 운동시설, 도서관, 어린이집/유치원이 포함된다. 반면 우선공급 3순위는 중요도와 향후 이용의사가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그룹(중요도↓, 향후 이용의사↓)으로 주민자치실,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¹⁾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가구를 위한 주거인프리를 공급함에 있어서 중요도와 수요를 반영한 이용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프라별 공급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시 우선순위가 높은 인프라에 가점을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공급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림 4-2 | 주거인프라의 중요도 및 향후 이용의향

(단위: %)



주1: 주거인프라 중요도의 평균은 11.14%이며 향후 이용의향의 평균은 55.92%임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1)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최근 도입된 제도로 아직 인지도가 낮아 중요도나 향후 이용의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주거인프라의 대한 개선사항으로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설확충이 각각 39.2%,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육관련 주거인프라의 공급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단순한 주거인프라 공급이 아니라 인프라의 질적 수준도 중요함을 나타내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관련 주거인프라 공급 시 양육가구가 이용에 불편함에 없도록 양질의 시설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시설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이 타지역에 비해 5.8%p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확충과 더불어 주거인프라의 질적 수준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 비아파트 가구 모두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시설 확충 순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비아파트 가구에서는 저렴한 이용료에 대한 응답이 아파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준 아동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도 저렴한 이용료 항목이 시설확충과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나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표 4-17 | 주거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요소

(단위: %)

구분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시설확충	저렴한 이용료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과 서비스 연계	없음	계	
전체	39.2	24.3	18.8	9.8	7.2	0.7	100.0	
지역	대도시	43.2	22.5	18.5	10.0	5.1	0.7	100.0
	중소도시	36.3	24.4	20.1	9.8	8.4	0.9	100.0
	농어촌	37.4	28.1	16.4	9.4	8.8	0.0	100.0
주택 유형	아파트	40.6	24.7	17.6	9.4	7.1	0.5	100.0
	비아파트	35.3	23.1	22.1	10.9	7.4	1.0	100.0
응답 기준 아동 연령	영아	41.8	22.8	16.7	10.3	8.0	0.4	100.0
	유아	40.5	27.3	17.3	7.5	7.5	0.0	100.0
	초등 저학년	34.7	24.8	24.4	9.2	6.1	0.8	100.0
	초등 고학년	39.9	22.5	16.7	12.3	7.1	1.5	100.0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3) 주거서비스 지원정책

(1)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개선점

① 중요도 및 향후 이용의향

주거서비스 중에서 아이돌봄서비스(40.2%)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육관련 프로그램, 가사지원서비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모두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각각 40.1%, 40.4%, 39.3%)가 중요한 주거서비스로 나타나 지역에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양육프로그램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영아이거나 유아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4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타연령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요한 주거서비스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8 | 양육친화적 주거요소로서 중요한 주거서비스(1순위)

구분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 프로그램	가사지원 서비스	조식 서비스	무인 택배	개별 창고	양육가구 모임지원	카 셰어링	계
전체		40.2	23.4	18.4	5.8	5.2	3.5	2.5	0.9	100.0
지역	대도시	40.1	20.7	20.1	4.9	6.1	4.4	2.5	1.2	100.0
	중소도시	40.4	24.2	18.1	6.7	4.2	2.9	2.5	0.9	100.0
	농어촌	39.8	27.5	15.2	5.9	5.8	2.9	2.3	0.6	100.0
주택 유형	아파트	42.5	20.9	18.6	6.7	5.6	2.8	2.1	0.8	100.0
	비아파트	33.9	30.3	17.8	3.5	4.2	5.5	3.5	1.4	100.0
응답 기준 아동 연령	영아	46.8	19.1	18.2	4.2	5.7	3.4	1.5	1.1	100.0
	유아	45.6	24.1	15.8	4.0	4.0	2.4	2.4	1.9	100.0
	초등 저학년	36.8	22.9	20.9	8.4	4.5	4.6	1.9	0.0	100.0
	초등 고학년	32.0	27.7	18.5	6.7	6.6	3.6	4.1	0.7	100.0

주 : 중요도는 양육친화적 주거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서비스 1순위 응답 기준결과임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각 주거서비스에 대한 양육가구의 향후 이용의사를 살펴본 결과, 중요도와는 다르게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양육프로그램(60.6%)과 아이돌봄서비스(44.7%)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아동의 양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특히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는 무인택배서비스(44.3%)나 가사지원서비스(38.2%), 양육가구 모임지원서비스(37.8%)와 같이 간접적으로 양육가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향후 이용의향에서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나 양육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이 높아 관련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기준 아동연령 측면에서는 대체로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9 | 주거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단위: %)

구분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 프로그램	가사지원 서비스	조식 서비스	무인택배	개별 창고	양육가구 모임지원	카 셰어링
전체	44.7	60.6	38.2	23.7	44.3	33.5	37.8	20.0
지역	대도시	41.4	59.0	37.6	24.4	42.8	33.0	19.6
	중소도시	45.3	59.4	34.4	21.0	43.5	34.1	20.0
	농어촌	50.7	67.2	49.3	28.8	50.4	32.9	20.7
주택 유형	아파트	45.5	58.7	39.2	25.1	46.3	35.1	20.8
	비아파트	42.5	65.6	35.6	19.8	39.9	29.1	17.7
응답 기준 아동 연령	영아	56.5	70.4	40.9	20.7	45.0	33.7	23.1
	유아	52.6	60.2	35.8	23.9	40.0	32.1	19.4
	초등 저학년	41.0	59.1	34.8	24.9	41.1	32.9	15.4
	초등 고학년	28.9	52.7	40.9	25.1	50.7	35.3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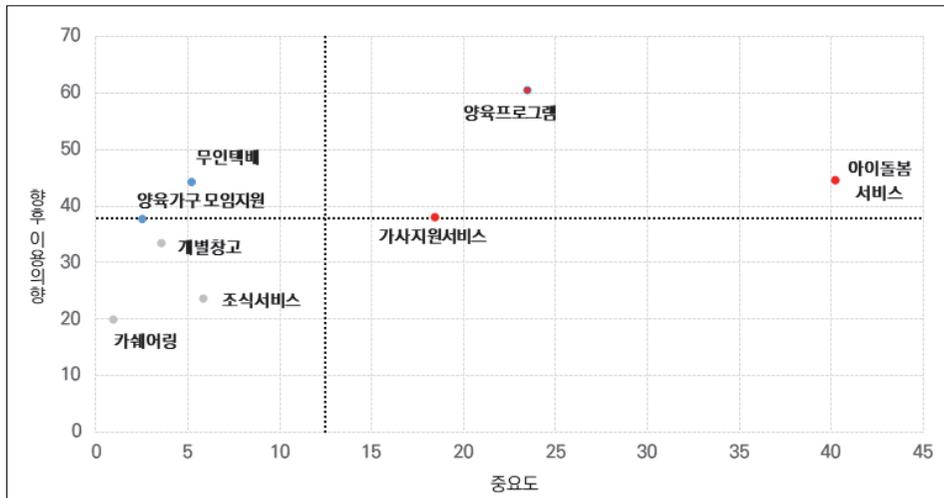
주 : 향후 이용의향은 주거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응답문항 중 '①에' 라고 응답한 수의 비율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② 개선점 분석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의 개선점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거서비스 항목별 중요도와 향후 이용의향을 분석한 결과, 우선순위 1그룹은 직접적인 양육지원 서비스인 양육프로그램과 아이돌봄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순위 2그룹은 무인택배와 양육가구 모임지원서비스로 중요도는 다소 낮은 편이나 향후 이용의사는 높은 항목들이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우선순위가 낮은 3그룹은 개별창고, 조식서비스, 카셰어링으로 아동의 양육이나 양육가구의 생활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아니지만 생활의 편의성은 높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부처별에서 개발·시행되고 있는 양육서비스를 주택 및 주거인프라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양육가구의 수요와 서비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4-3 | 주거서비스의 중요도 및 향후 이용의향

(단위: %)



주1: 주거서비스 중요도의 평균은 12.49%이며 향후 이용의향의 평균은 37.85%임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또한 양육관련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되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아동의 연령이 낮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동을 양육 하는데 어려움이 따라 조부모 세대까지 함께 양육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의 양육을 가족이 전담해야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육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저출산의 부작용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양육에 대한 인식을 가족에서 공동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서비스도 공동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양육가구의 73.1% 가량이 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육가구의 공동체 중심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0 | 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 여부

(단위:%)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계
전체	73.1	26.9	100.0
자녀 연령	영아	26.3	100.0
	유아	25.1	100.0
	초등 저학년	31.1	100.0
	초등 고학년	25.0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7	100.0
	외벌이	3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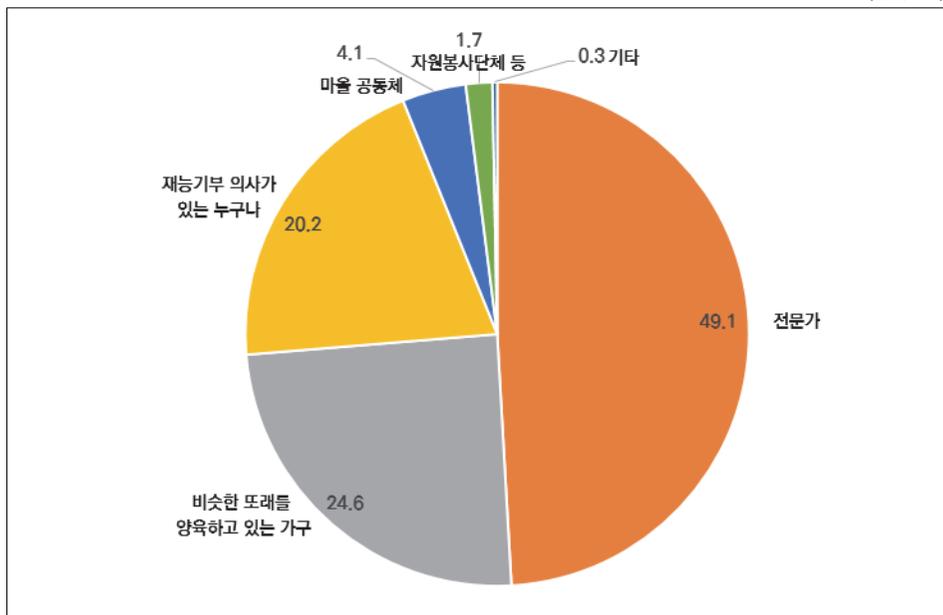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그러나 경험이 없는 양육가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활동만으로 초기 공동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주거서비스 운영·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육가구들 또한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어 공동체 육아 서비스의

적정 제공자로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체 중심의 양육관련 주거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를 육성·교육하여 공동체 육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양육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4-4 | 공동체 육아 서비스의 적정 제공자

(단위: %)



주 : 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 본 과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양육가구의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과 주거지원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양육가구의 주거지원 현황과 개선점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주거지원 정책,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주거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혼 여성의 38.8%가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8.3%는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양육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 주택가격 안정(21.1%),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10.5%), 양육관련 주거서비스 제공(9.8%), 주거안정성 확보(8.2%) 등 주거 관련 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민고 안심할 수 있는 양육관련 시설의 확대(35.9%),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17.9%), 주택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지원 확대(17.6%),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16.9%),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11.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면에서 신혼부부와 양육가구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일반가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대상이나 공급비율에서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주택의 면적 및 방의 수는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지적으로는 교육시설 인근에 위치한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주자는 계층 및 세대가 혼합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육가구가 점유형태 면에서 임차보다 자가 선호하는 만큼 주택금융 프로그램도 자가마련을 위한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자가 부담되어 정부의 주택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가구의 비중도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와 비아파트에서 양육관련 주거인프라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인프라 공급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양육가구를 위한 주거인프라를 공급함에 있어서 중요도와 수요를 반영한 이용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인프라별 공급의 우선순위는 1순위(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실외놀이터, 방과후 공부방, 야외활동 가능 장소), 2순위(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혹은 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운동시설, 도서관, 어린이집/유치원), 3순위(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주민자치실,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주거인프라 공급 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공급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주거서비스 지원정책 중 양육프로그램이 19.6%로 가장 높은 이용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무인택배가 17.1%, 가사지원서비스가 12.0% 순서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인프라 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주거서비스 항목별 중요도와 향후 이용의향을 분석한 결과, 우선순위 1그룹은 양육프로그램과 아이돌봄서비스, 2그룹은 무인택배와 양육가구 모임지원서비스, 3그룹은 개별창고, 조식서비스, 카쉐어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부처별에서 개발·시행되고 있는 양육서비스를 주택 및 주거인프라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양육가구의 수요와 서비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효율적인 양육관련 주거서비스의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체 중심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달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체 중심의 양육관련 주거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를 육성·교육하여 공동체 육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양육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CHAPTER 5

국내 양육친화 주거지원
및 국외정책 분석

- 1. 국내 사례 | 105
- 2. 해외 양육지원 정책 및 주거지원 사례 | 119
- 3. 요약 및 시사점 | 143

국내 양육친화 주거지원 및 국외정책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양육친화 주거단지 공급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양육친화적 주거 지원의 현황과 실태, 한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육친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랑스와 일본의 양육친화 정책 및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보조금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보조금 정책 등의 다양한 수당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일본은 중앙 및 지자체의 양육친화적 주거지조성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 국내 사례

우리나라 양육친화 주거단지 공급은 현재까지는 주거단지 자체를 양육친화형으로 계획·설계하였다기 보다는 부대시설로 양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주택의 건설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세대규모가 1,500세대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어린이집의 규모를 정하는 등 단지규모에 따른 시설 설치가 주요 방법이었다.

최근에는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희망타운과 같이 양육수요를 반영하여 양육관련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거나 물리적 설치기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육관련 프로그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한층 진일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급방법은 물론 공급주체별로도 양육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 나누어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앙정부의 공공주택 양육친화 특화단지

공공주택 양육친화 특화단지란 신규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단지내외에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대기공간,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단지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을 위주로 계획되고 있다.

공공주택 양육친화 특화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공동육아 나눔터 등과 같이 주거서비스 공간을 활용하여 양육관련 시설의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여러 사례 중 서울 오류 행복주택과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의 사례를 제시한다.

(1)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역 바로 옆에 위치한 초역세권 행복주택으로, 2015년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및 ‘신혼부부 특화단지 시범지구¹⁾’로 선정되었고, 2018년 2월 입주한 단지이다. 전체 84,139㎡의 부지에 4개동 890가구가 공급되었다.

공급면적별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가 134가구, 36㎡가 232가구, 29㎡가 336가구가 공급되었으며 가장 작은 평형으로는 16㎡가 188가구 공급되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만큼 전체의 40%이상을 전용면적 36㎡ 이상의 투룸형이 차지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공급면적에 따라 보증금 3,726~9,411만원 정도이며, 월임대료는 12.4~31.4만원 정도이다.

1)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서울 오류, 하남미사, 부산정관, 과천지식, 성남고등, 수서역세권을 신혼부부 특화단지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함

표 5-1 | 서울 오류 행복주택 주택형(type)별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주택 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 료 (천원)
							기타 공용	주차 장		계	계약금	잔금	
	합계	445	445										
16	대학생 계층	47	94	16A	16.84	9.06	0.94	6.92	33.77	26,890	5,370	21,520	96
	사회초년생 계층	47								28,470	5,690	22,780	102
29	대학생 계층	41	83	29A 29B	29.76	16.02	1.66	12.23	59.68	47,530	9,500	38,030	170
	사회초년생 계층	42								50,320	10,060	40,260	180
	고령자 (주거약자용)	33	33							52,590	10,510	42,080	188
	고령자 (주거약자용외)	30	30							41,520	8,300	33,220	148
	주거급여 수급자	22	22										
36	고령자 (주거약자용)	4	4	36A 36B	36.85	19.83	2.06	15.14	73.90	65,130	13,020	52,110	233
	신혼부부 계층	112	112	68,560	13,710	54,850	245						
44	신혼부부 계층	67	67	44A	44.83	24.13	2.51	18.42	89.90	83,400	16,680	66,720	298

자료 : LH 청약센터 임대공고문. 서울 오류동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16.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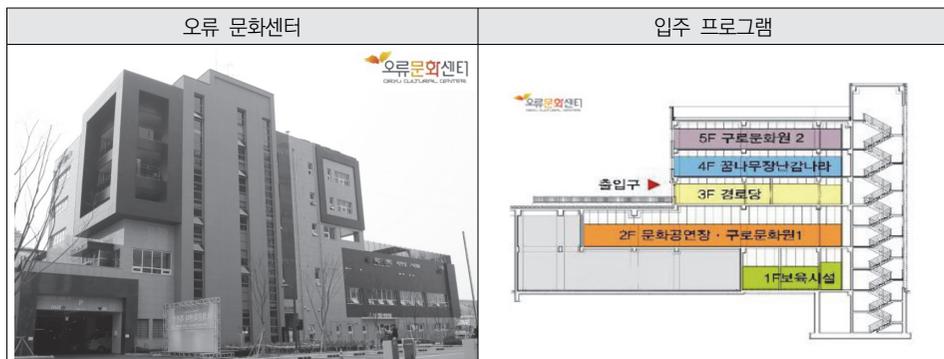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에는 다수의 양육친화적 시설과 서비스가 공급되었는데 보육 및 육아를 위한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소아과 등과 같은 육아에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특히, 구로구청과 연계한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프라자, 문화공연장 등의 여가 공간도 조성되어 있어 양육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348㎡ 크기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었고 장난감,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소모임 진행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음악, 미술 등의 수업과 같은 양육특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이웃간에 어린이를 돌보는 '가족품앗이' 라던가 초등돌봄 서비스도 실시하며 간단한 학습지도나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²⁾

2) 시사경제신문(2019.3.21.),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오픈,

그리고, 단지내에는 구로구청과 행복주택이 연계하여 설립한 문화복합시설인 오류 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단지 주민과 아동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센터 내에는 약 50명을 수용하는 구립 오류행복어린이집, 365석 규모의 아트홀 및 구로문화원, 경로당,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꿈나무 장난감나라,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이 운영 중이다.

그림 5-1 | 오류 문화센터



자료 : 구로문화재단 블로그, 오류 문화센터 소개(<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arts&logNo=22126134969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2019년 11월 21일 검색)

(2)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단지인 만큼 육아에 적합한 시설 등을 패키지로 다양하게 제공하며 주거내부 디자인 또한 가변형 주택평면 등을 적용할 예정으로 2019년 12월 공급예정인 단지이다.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수서역세권공공주택지구 A3 블럭에 위치하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46㎡와 55㎡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3세대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의 ‘공공임대주택 디자인 혁신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인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7678>(2019년 11월 21일 검색)

설계공모대전’을 통한 공모 당선작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으며 신혼부부의 사회적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2018)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의 단지 및 세대설계방향³⁾은 개별 가구의 자녀 수나 생활패턴 등 신혼부부의 삶을 반영하여 평면과 공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기존의 일률적인 거실 중심의 생활 패턴이 아닌 자녀의 연령 변화, 세대별 생활 방식 변화, 삶의 주기 변화 등에 따라 방과 방의 연결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닛간의 복도 설계는 일반적인 편복형이 아닌 주머니공간이라는 세대와 복도를 연계하는 반 개방공간으로 설계하여 세대 공간과 공용 공간을 연계하고자 하였다.

그림 5-2 |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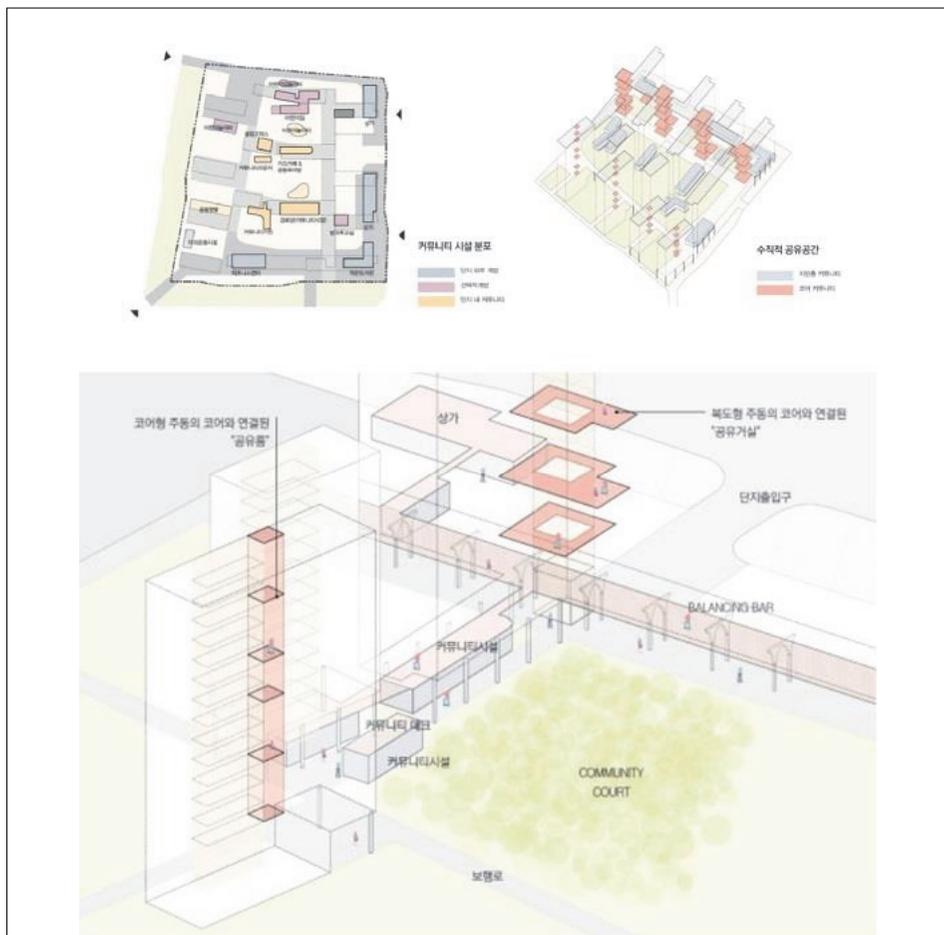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2018.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당선작. (㈜숨비 건축사사무소, 노드플랜 건축사사무소(주), Life:BALANCE_The Balancing Bar

3) 시행예정으로 당선작의 내용을 기술함

또한, 커뮤니티 시설을 주동의 저층부에 배치하여 각 세대가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동 내부의 코어공간에는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즉, 공동육아공간, 아동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목적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림 5-3 |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의 커뮤니티 공간



자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2018.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당선작. (주)숨비 건축사사무소, 노드플랜 건축사사무소(주). Life:BALANCE_The Balancing Bar

(3) 보완점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 특화주택의 경우 양육관련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양육친화적 주거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오류동 행복주택의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육아 및 문화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노력들이 초기형성단계이고 일부시설의 경우 입주민의 요구나 지역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재, 박소윤(2018)에 따르면 이미 입주한 행복주택의 사례에서 계획 상에는 육아에 초점을 맞춘 양육관련시설을 다수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 이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입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되어도 빈 공간으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시설의 초기 공급은 물론 입주 후 시설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관리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양육친화 특화단지에는 양육관련 시설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은 시설에서의 활동이나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것까지는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최초 입주 시에는 양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단지에 집중될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아동들이 성장하게 되고 주민들의 이주가 이루어 질 경우 초기 계획된 양육친화 관련시설의 수요 공급의 불일치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대한 보완책도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지방정부 및 민간 협력주택)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단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다. 공동체 주택이란 최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주거모델로 주택 혹은 준주택에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⁴⁾을 말한다.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간을 설계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희망자의 공통적인 특징 및 관심사에 맞은 공동체 주택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공동육아형, 노인돌봄형, 다문화형, 청년일자리형, 동일직업형, 1인가구형 등으로 분류되며, 특히 공동육아형의 경우 육아가구의 편의 향상에 대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 서울특별시의 공동체주택 지원

서울특별시는 2017년 7월 제정된 「서울시 공동체주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체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동체 주택은 공급방식에 따라 자가소유형(조합소유형), 공공임대형, 민관협력 임대형, 민간임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급방식에 따라 입주대상 및 임대료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임대하거나, 공동체주택의 관리·위탁, 공동체주택의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력 지원, 공동체주택 건설 관련 택지 정보와 입주민들의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형태로 공동체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공동체주택 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 현재는 공동체주택 인증 및 금융지원, 공동체주택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육성 등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7. 서울특별시조례 제 6598호(2017년 7월 13일 제정)

표 5-2 | 공동체 주택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입주대상	임대료	
자가소유형	·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건설하는 형태	누구나	개별 소유권 취득	
임대형	공공임대형	· 공공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	특정 목적 또는 공동체 활동에 합의하는 주거취약계층	공급주택에 따라 임차료 차이
	민관협력 임대형	· 공공이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은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최장 40년)	무주택자	주변시세 이하
	민간임대형	· 임대사업자가 임대형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	누구나	자율적 시행

자료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플랫폼 홈페이지. <https://soco.seoul.go.kr/cohousingIntro.do> (2019년 6월 28일 검색),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신내동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준공공임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신내동 공동체 주택은 공동육아형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로 이루어진 육아공동체가 주거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자주적인 주택관리를 목적으로 건립한 주택이다. 신내동 공동체 주택은 대지면적 1,184㎡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2,491㎡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총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이 지상권을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⁵⁾으로 준공공임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입주자격은 공동육아 및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원하는 무주택자에게 있으며⁶⁾, 보증금은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주변 아파트 시세(전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있고, 장기(최장 40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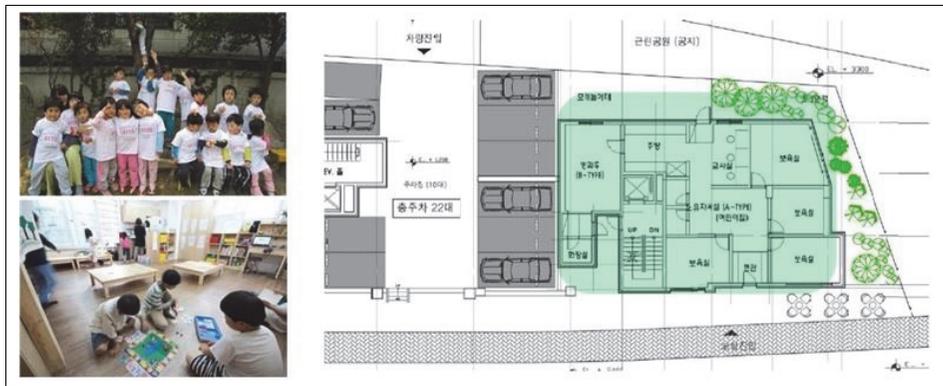
신내동 공동체주택 1층에는 공동육아와 방과 후 교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거주와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간 이용은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가정의 아동 외에 주변지역 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5) 이투데이(2017.4.11.), SH공사·소행주, 신내동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공급, <http://www.etoday.co.kr/news/view/1479128>, (2019년 11월 23일 검색)

6) 이투데이(2017.4.11.), SH공사·소행주, 신내동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공급, <http://www.etoday.co.kr/news/view/1479128>, (2019년 11월 23일 검색)

사회에 개방하고 있고, 부모 참여형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방과 후 공간 운영을 위해 방과 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낮 시간 대에 건물내의 커뮤니티실에서 ‘마을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숙제, 간식 챙겨주기) 활동과 지역 자원과 결합된 프로그램(독서, 미술, 야외놀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내동 공동체주택에서는 공용공간 이용방안 마련 등의 과정에서 입주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입주민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체 입주자의 성향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5-4 | 신내동 공동주택의 공동육아 및 방과 후 공간



자료 :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2019. 신내동 공동체주택 설명회 자료. p.12

(3) 은혜공동체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에 위치한 은혜공동체는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 용도로 개발된 공유주택의 하나이다. 은혜공동체는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였고 연면적 99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2017년 완공되었다. (이명아, 이연숙, 2019, 35) 은혜공동체 건설비용은 조합비와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초기 서울시의 한국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받아 토지매입을 진행하였다⁷⁾.

은혜공동체는 초기에는 종교공동체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공유공동체를 목적으로

7) 휴정심(2017.10.31.), 은혜공동체엔 사람을 끄는게 있다, <http://well.hani.co.kr/807373>, (2019년 11월 23일 검색)

바뀌었으며, (이명아, 이연숙, 2019, 35) 공동체 조직형태로 가족의 집합체인 ‘부족’이라는 명칭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가족 형태를 구성하였고 부족이 모여 은혜공동체 전체를 구성하는 일종의 대가족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은혜공동체는 47인 14가족, 4부족(대가족), 1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5-5 | 은혜공동체 개요 및 전경



자료: 협동조합주택 은혜공동체 설계과정 이야기. p.3, p.53, p.9(좌측부터)

양육친화적 특성으로는 부족(대가족)별로 4개의 다양한 특징을 가진 공유공간이 존재하는데 각 대가족별로는 세대내 거실을 공유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는 저층부에 거주하도록 하며 다기능 거실이나 공부방이 포함된 공유공간을 가진다. 또한 별도의 다목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식당, 음악실, 방과 후 돌봄 공간, 집회 및 콘서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표 5-3 | 은혜공동체의 대가족별 평면구성

대가족별 평면구성	가족구성의 특징	공유공간의 특징
대가족1	자녀연령 다양, 성인 비율 높음	다기능의 거실, 공부방, 저층부 위치
대가족2	자녀연령 어림	놀이터로서의 거실, 저층부 위치
대가족3	성인 비율 높음	책장이 높은 다락방 느낌의 도서관, 홈 오피스
대가족4	자녀연령 중/고, 성인 비율 높음	식당, 소규모 파티, 다기능의 거실, 서재/공부방
총별공유기능	-	계절옷방, 세탁방, 창고

자료 : 협동조합주택 은혜공동체 설계과정이야기. p.4

공유공간 중 양육에 특화된 시설로는 어린이 책 거실, 유아대안학교, 놀이방 등 3곳이 있다. (이명아, 이연숙, 2019, 37) 유아대안학교에서는 공동육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 혹은 미혼 성인 2인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공동육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아, 이연숙, 2019, 40)

표 5-4 | 은혜공동체 공유공간에서 가능한 활동

전체공유 공간	주방	식탁	공연	영화	운동	이벤트	집회	학교	공동체	영화	휴식·놀이	텃밭·정원
다목적(4층)	○	○	○	○	○	○	○	○	○	○	○	○
필로티(1층)	○		○			○						○
다목적(지하1층)	○	○	○	○	○		○		○	○		○

자료 : 협동조합주택 은혜공동체 설계과정이야기. p.4

(4) 왕십리 KCC 스위첸아파트(민관 협력형 육아친화단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왕십리 KCC 스위첸아파트는 2016년 입주한 아파트단지로서 연면적 38,150㎡, 3개동 272세대의 소규모 민간분양단지로 전용면적 60㎡ 이하가 42세대, 60~85㎡가 230세대인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인 ‘아이꿈누리터’ 1호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육아친화형 민간 아파트단지로 잘 알려져 있다.

아이꿈누리터 1호는 성동구가 2018년 7월 왕십리 KCC 스위첸 아파트측에게 단지 내 유휴공간을 초등돌봄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10월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간의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 추진하게 되었다⁸⁾. 특히, 거주가구의 대다수가 젊은 맞벌이 가구로 영·유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육아관련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8) 시정일보(2019.2.18.).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올해 27개 확충,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102>, (2019년 11월 23일 검색)

그림 5-6 | 단지 내 구립 어린이집 위치와 유아 및 초등학생 보육지원 현황 (왕십리 KCC 스위트아파트)



자료: 한경옥, 2019.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사례. 교육부 정부청사 발표. 발표자료. p.12. p.28

또한, 기존 도서관 시설을 실내 놀이터 및 주민소통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단지 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교실을 설치하였다. 이곳은 입주주민대표와 성동구청 간의 협약을 통해 주중(월~금)에는 어린이 돌봄 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고, 주말(토, 일) 및 공휴일에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 편의와 돌봄을 함께하는 공유공간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5) 보완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육아 공동체주택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해당주민들이 주택건립시 자발적으로 육아공간의 설치 및 양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초기공동체 형성은 해당 주민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공급방식별로도 특징 차이가 큰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양육가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육아형 공동체주택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주택형태로 발전하기에도 아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된 경우에도 대부분 소규모주거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향후 보편적인 유형의 친양육형 주거형태로 대단위 세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이꿈누리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단지에 공립양육시설의 설치를 제안한 형태로 민간의 양육수요와 맞물려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양육시설을 주거단지 안에 공급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공양육시설의 설치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지는 기본적인 양육시설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비아파트지역에 대한 설치가 우선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이 자발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용도변경 허가를 득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지자체는 용도변경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자체별로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주거단지의 행정구역에 따라 시설변경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육아시설의 설치 및 용도변경에 따른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단지공동시설을 육아시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인 만큼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외 양육지원 정책 및 주거지원 사례

1) 프랑스⁹⁾

(1) 프랑스 출산현황

World Bank의 국가별 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EU의 1인당 출산율은 2017년 기준으로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벨기에(1.68명), 덴마크(1.79명), 스웨덴(1.85명), 아일랜드(1.81명), 영국(1.79명), 독일(1.60명), 프랑스(1.92명) 등이 EU 1인당 출산율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¹⁰⁾. 특히 프랑스는 EU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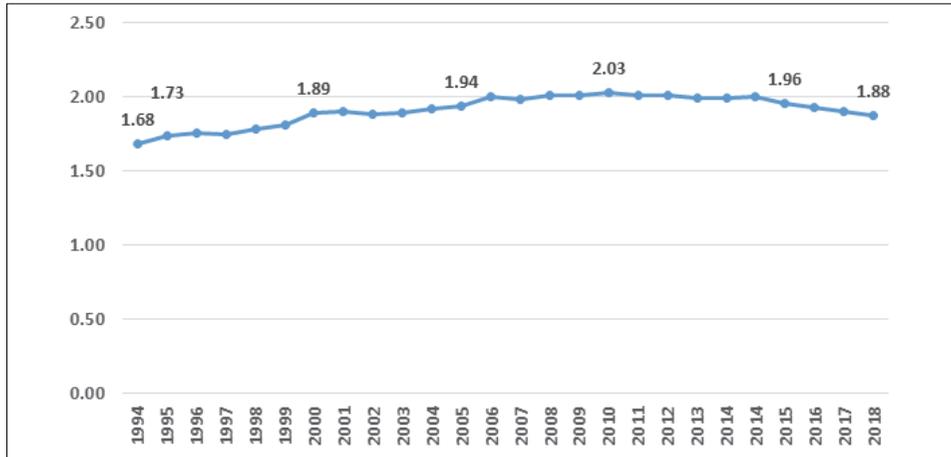
최근 프랑스 통계청에서 발표된 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출산율이 1.88명¹¹⁾ 수준이며 평균 출산연령은 3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34세인 경우가 100명당 출산율이 12.7명으로 가장 높고 25-29세가 11.0명, 35-39세가 6.9명 순이었다. 또한 15-24세의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50세의 출산율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출산율이 EU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동거관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파스(PACS: 시민 연대 협약)라는 동거문화가 정착되어 왔으며, 동거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여 부부와 동일한 가족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프랑스 가족의 평균 자녀수는 2명이며 평균 출산 나이는 30.1살이고 이중 비결혼 출산비율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9) 프랑스의 양육지원 정책 및 주거지원 사례는 조한진(파리 라빌레트 건축대학교 연구원)과의 협동연구 결과임

10) World Bank, Fertility rate, total(virths per woman)참고,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EU-FR-IE-SE>

11) 프랑스 통계청(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INSEE). Fertility, Demographic balance sheet 2019, <https://www.insee.fr/fr/accueil> (2019년 9월 20일 검색)

그림 5-7 | 프랑스 1인당 출산율



자료 : 프랑스 통계청(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INSEE). Fertility, Demographic balance sheet 2019, <https://www.insee.fr/fr/accueil>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2019년 9월 20일 검색)

그런데 프랑스의 출산율과 신생아 수가 2010년 1인당 출산율이 2.03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가치관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자녀의 출산을 과거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늦은 나이에 임신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¹³⁾. 이는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 자녀 양육보다 자신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도 개선·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출산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오래전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과 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양육지원

12) 프랑스 인구 통계청. 프랑스 출산율. <https://www.insee.fr/fr/accueil> (2019년 9월 15일 검색)

13) 르몽드. 2019년. 1월 15일. "프랑스의 출산율은 유럽 내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9/01/15/le-nombre-de-naissances-continue-de-baisser-en-france-qui-reste-malgre-tout-le-pays-le-plus-fecond-de-l-ue_5409337_3224.html (2019년 9월 20일 검색)

에 정책을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프랑스 가족지원 정책 개요

프랑스정부의 양육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회보장체계와 마찬가지로 수당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양육에 관한 국가가 양육을 지원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육에 관련된 수당지원 정책은 1939년 가족 출산법 제정과 1945년 가족지원금 지원율을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가족지원금 지급 규정 원칙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2자녀 이상 가족은 조건 없이 지원, ② 첫째 자녀부터 가족지원금 지원, ③ 셋째 출산 시 지원금 지급, ④ 임신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다. 하지만, 1965년 의료보험 및 노후 수당의 지출 증가로 재정 문제가 발생하자 가족수당 정책을 재정비하여 수혜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었다. 또한, 2014년에는 가족부문 예산중 7억 유로('19년 9월 기준 약 9,169억원)를 감축하였고, 2017년에는 주택보조금(특히 임대주택관련 지원금) 15억 유로(약 1조9천6백억원)를 감축하기도 하였다.

반면, 불평등한 지원제도 및 지원 방향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되었는데 1981년에는 지급 기준을 낮추고 한 부모 가족이나 동거인 가족에 대한 가족 보조금 지급 권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아동을 위한 공간을 늘리는 사업을 지속하였고, 2013년에는 애호(Ayrault) 총리 주도로 “가족정책 개혁” 수립을 통해 사회보장 적자감소 노력을 한 동시에 어린이 보육시설 증대 등으로 지원방향을 변경하였으며¹⁴⁾, 2018년에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 3만 곳 증설 및 지원을 포함하는 신(新)가족수당 정책을 발표하였다.¹⁵⁾

14) 프랑스 가족보조금(Caisse d'allocation de familiales: CAF) 홈페이지 <http://www.caf.fr/allocataires/actualites/2020>을 참고하여 작성 (2019년 9월15일 검색)

15) 일부에서는 2012년 이후 추진된 가족수당 감소정책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 근거로 지난

(3) 프랑스 가족 보조금

프랑스의 가족보조금(Caisse d'allocation de familiales: CAF)은 사회보장법에 의거 중앙정부기관인 국립가족수당기금(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과 농업협동조합(La Mutualite Sociale Agricole: MSA)에서 지원금의 관리와 배부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가족수당기금은 프랑스 전국 101지역에 설치된 가족보조금 사무소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¹⁶⁾

가족 보조금은 어린이집의 설치와 같은 공공육아시설의 설치와 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 설치는 가족보조금 사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사업으로 지자체, 지역협회, 기업 등과 함께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공간 마련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공간 마련 사업은 미혼모 혹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공간이나, 보호 시설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 공간 등과 같은 어린이 공간을 찾고 선택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 설치 실적은 2000년 이후에는 가족보조금에 의해 119,500 개소의 어린이집이 지어졌고 지역사회, 협회, 병원과 같은 공공 시설 혹은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중 70%는 지역사회가 운영하고, 5%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¹⁷⁾

일반인에게는 수당(allocation)으로 불리며 현금을 지급하는 가족보조금으로는¹출산 및 양육 수당, ²가족 수당, ³주택보조금, ⁴장애인 보조금, ⁵실업 수당 등을 포함하며 가족보조금 사무소에서 관리 및 지원, 신청자의 수급 자격검토 및 지급 등 담당하고 있다. 그중 양육 및 육아와 관련된 출산 및 양육 수당, 가족 수당, 주택보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0년간 인구변화가 가족정책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2016~2017년 출산율이 감소를 제시하고 있음(프랑스 법안 발전을 위한 자문 사이트에서 발췌. <https://conseildansesperanceduroi.wordpress.com/2018/01/17/la-population-francaise-poursuit-sont-accroissement-mais/> (2019년 9월20일 검색)

16) 프랑스 가족보조금(Caisse d'allocation de familiales: CAF)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http://www.caf.fr/> (2019년 9월 15일 검색)

17) 프랑스 가족보조금(Caisse d'allocation de familiales: CAF), 2018년. La branche famille de la société sociale. p. 8 <https://www.caf.fr/sites/default/files/plaquette%20branche%20famille%20francais.pdf> (2019년 9월 15일 검색)

① 출산 및 양육 수당

출산 및 양육 수당은 기존에 가족 수당과 함께 운영되어 왔으나 2004년 출산과 관련된 수당을 통합하면서 가족 수당과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⁸⁾ 출산 및 양육 수당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위해 분유, 기저귀 등의 출산 용품 비용(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출산(예정)가구로 임신이 확인되면 944.51유로(약 124만 원)를 지원하며 출산 예정일 기준 2달 전부터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¹⁹⁾ 또한 부모가 기본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출산 및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가구가 해당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수에 따른 가계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외벌이인 경우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족인 경우 각각 가계 연소득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이때 가계의 연소득은 임대료, 토지 및 가구 소득, 농업 이익 등을 포함한 소득에서 각종 비용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년 가계 연소득기준을 재산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표 5-5 | 2019년 출산 및 양육 수당기준

(단위: 유로)

자녀 수	가계 연 소득	
	외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및 한부모 가족
1 명	31,659	41,840
2 명	37,991	48,172
3 명 이상	45,589	55,770
추가 자녀당	7,598	

자료 : 프랑스 공공서비스 사이트. 출산 지원금 관련 내용.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550> (2019년 9월 15일 검색)

18) 주프랑스대사관,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을 참고하여 작성, 2017.4.12.

19) 프랑스 공공서비스 사이트. 출산 지원금 관련 내용.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550> (2019년 9월 15일 검색)

기초 양육 수당은 출산 후 3년간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규모는 부양자녀 수와 부모의 경제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한 아동당 85.61 유로 혹은 171.23 유로가 지급된다. 기초 양육 수당은 일정 소득이하의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출산 및 양육 수당과 마찬가지로 가계 연소득은 가구의 연소득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여 계산되며 매년 지급기준별 소득 기준이 새롭게 산정되어 공표되고 있다.

표 5-6 | 기초 양육 수당 지원체계

(단위: 유로)

자녀 수	85.61 유로 지급기준		171.23 유로 지급기준	
	외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및 한부모 가족	외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및 한부모 가족
1 명	26,499이상 ~ 31,659이하	35,020이상 ~ 41,840이하	26,499 이하	35,020 이하
2 명	31,799이상 ~ 37,991이하	40,320이상 ~ 48,172이하	31,799 이하	40,320 이하
3 명	38,159이상 ~ 45,589이하	46,680이상 ~ 55,770이하	38,159 이하	46,680 이하

자료: 프랑스 공공서비스 사이트 기초 양육 지원금 지원체계.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552> (2019년 9월 15일 검색)

② 가족 수당

가족 수당제도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수당제도로 보편주의 원칙, 가족규모와 소득규모에 따른 재분배, 저소득 한부모 및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²⁰⁾ 보편주의 원칙은 자녀의 수가 동일하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각 가구의 보육 부담액 비율이 일정하도록 수당 액수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규모와 소득규모에 따른 재분배 원칙은 가족수당이 자녀수와 가구 연소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

20) 유은경. 201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프랑스 가족수당제도 연구. 춘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8-10. p. 31~32.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자녀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원칙도 정책 도입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가족수당의 지원대상은 2명의 양육 자녀가 있는 가족이며 지원기간은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가구의 연소득, 실업상태와 같은 경제적 상황, 부모의 이혼여부, 부양가족 중 장애인 유무 등과 같은 사회적 상황과 양육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매월 지급된다. 2019년 가족수당의 지급 규모 및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이 많이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양 자녀 중 14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수당의 규모는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16.45유로(저소득 가구), 32.89유로(중소득 가구), 65.78유로(고소득 가구)를 지급하고 있다.

표 5-7 | 가족수당 지원체계

(단위: 유로)

자녀수	가계 연소득	수당 규모	14세 이상 자녀
2	68,217유로 이하	131.55유로	65.78유로 추가
	68,217유로 이상 ~ 90,926이하	65.78유로	32.89유로 추가
	90,926이상	32.89유로	16.45유로 추가
3	73,901유로 이하	300.10유로	65.78유로 추가
	73,901유로 이상 ~ 96,610유로 이하	150.05유로	32.89유로 추가
	96,610유로 이상	75.03유로	16.45유로 추가
4	79,585유로 이하	468.66유로	65.78유로 추가
	79,585유로 이상 ~ 102,294유로 이하	234.33유로	32.89유로 추가
	102,294유로 이상	117.16유로	16.45유로 추가

자료: 프랑스 공공서비스 사이트. 가족수당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3> (2019년 9월 15일 검색)

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자녀로 보고 있어 자녀가 20세가 되면 가족수당이 감소(혹은 미지급)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갑작스런 가족수당 감소로 인해 가구가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으로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세가 된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해당 자녀의 수입이 932.29유로(약 122만원, 최저임금의 55%)를 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²¹⁾

③ 프랑스 주택 보조금 정책

주택보조금 지원정책은 1970년대 이후 주택재고가 늘어나면서 주택정책의 중심이 주택공급에서 임대료 보조로 전환되면서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프랑스 자국민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들에게도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주택보조금 지원의 주관기관은 가족보조금 사무소로 세입자의 주거 지역, 집세, 위치, 면적, 소득수준 등을 기준에 따라 책정된 지원금을 매월 보조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보조금은 지원대상에 따라 크게 ¹개인 주거 보조금(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²사회 주거 보조금(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³가족 주거 보조금(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으로 나뉜다.²²⁾

첫째는 개인 주거보조금(l'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으로 1977년 건설 및 주거 관련 법안에 근거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 학생이나 직장인들, 노인 등도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협정이 체결된 임대주택인 HLM(Habitation a Loyer Modere), 기숙사, 일반 주거지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부모가 서명한 계약서가 있으면 주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주거보조금(L'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은 1971년 사회보안관련 법안에 근거하며, 주로 무자녀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거주면적 9㎡ 이하 혹은 총 면적 20㎡ 이하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직장인, 실업자, 구직자 등도 지원하며 HLM에 거주할 경우 최저 집세로 거주 가능하다. 다만, ALS는 다른 보조금(APL 혹은 ALF)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21) 프랑스 공공서비스 사이트. 가족수당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3> (2019년 9월 15일 검색)

22) 프랑스 공공서비스 사이트. 주택 보조금.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20360> (2019년 9월 15일 검색) 내용을 재정리함

셋째, 가족 주거보조금(L'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은 1948년의 사회 안전관련 법안을 근거로 하며, 가족 혹은 동거인과 거주하거나, 용자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와 월세,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ALF는 가족의 수입과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수와 가계 연소득에 따라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주택마련을 위한 용자혜택도 받을 수 있다.

표 5-8 | 가족구성원별 평균 주택지원 기준

(단위: 유로)

가족 구성원	지역별 평균 지원금		
	1존	2존	3존
자녀가 없는 1인 가족	295.05	257.14	241.00
부양가족이 없는 부부	355.85	314.74	292.16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	402.18	354.17	327.59
부양가족 1인당 추가	58.34	51.54	46.95

주 : 1존은 파리와 주요 대도시, 2존은 파리 외곽지역과 주요 위성도시, 3존은 기타지역으로 본 보조금 체계는 주거형태, 집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료: 프랑스 법령포탈. 부양가족 주택 보조금.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88784&dateTexte=20190930>(2019년 9월 15일 검색)

그 외 다자녀 가족 이사비용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 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에 한해 양육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사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이사 이후 6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조되는 이사비용은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3자녀인 경우 991.58유로, 4자녀인 경우 1,074.22유로이며 추가자녀에 대해서는 82.63유로가 지급된다.²³⁾

23) 가족보조금(CAF), 가족수당기금을 참고하여 작성 <http://www.caf.fr/> (2019년 9월 15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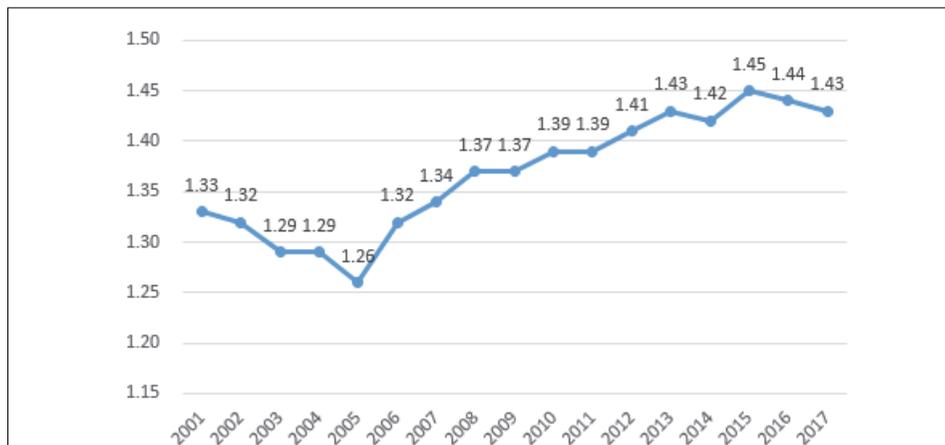
2) 일본²⁴⁾

일본의 출산율은 유럽국가 등에 비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05년 1.26을 저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프랑스와는 달리 수당 보다는 주거지 내 양육시설과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해온 경향이 있다.²⁵⁾

(1) 일본의 출산현황

일본의 출산율은 2018년 기준으로 1.42를 나타냈으며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신생아수도 2001년 117만명에서 2017년 현재 약 9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및 신생아수의 감소는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 만혼화, 가치관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림 5-8 | 일본 출산율 (2001년 이후)



자료 : World Bank, Fertility rate, total(virths per woman)참고,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EU-FR-IE-SE>

24) 일본의 양육지원 정책 및 주거지원 사례는 김정인(주생생활연구소 연구위원)과의 협동연구 결과임

25) 가비지뉴스(ガベージニュース). 2018.09.28. 일본의 출산율과 출생수를 그래프로 보다(日本の出生率と出生数をグラフ化してみる), <http://www.garbagenews.net/archives/2013423.html> (2019년 11월 20일 검색)

(2) 일본의 양육친화적 정책 개요

일본의 양육친화적 지원정책은 보조금의 지급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의 구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프랑스에 비해 종류나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 일본의 보조금은 아동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인 경우 3세 미만은 월 1.5만엔, 3세에서 초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첫째나 둘째 아이에게는 1만엔, 셋째 이상은 1.5만엔을 지급한다. 또한 중학생에게는 월 1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전호성, 2015, p. 305)

일본의 양육친화적 주택정책은 인구의 감소기로 접어들고 인구의 노령화 출산율 및 혼인 등의 저조로 인해 기존 주택의 양적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친육아적, 친출산적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후생노동성이나 국토교통성 등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양육친화 인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친화적 주거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후생노동성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정책 [중앙정부]

① 후생노동성의 육아친화적 정책 배경²⁶⁾

일본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초고령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미혼비율 증가, 맞벌이세대 증가 경향과 더불어 많은 국민이 사회생활과 결혼, 출산,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데 점차 어려움을 느껴 저출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2012년에 제정된 아동·육아 관련 3법²⁷⁾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효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보호자의 자녀육아 책임강화를 강

26) 본 절의 내용은 『후생노동백서 2018』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 (2019년 9월 20일 검색)

27) 「아동·육아지원법」,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아동·육아지원법 및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일부 개정법 시행에 수반되는 관련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조하기는 하지만 범정부차원에서 유아기 아동의 학교교육·보육, 지역의 아동·육아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¹유치원, 보육원, 통합형인증시설(子ども園)을 통한 공통 급여(시설형 급여)와 소규모 보육 등에 대한 급여(지역형 보육급여)의 신설, ²통합형인증시설 제도의 개선, ³지역 실정을 반영한 아동·육아지원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이 제도는 기초지자체(시정촌)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유아기 아동의 학교교육, 보육, 지역의 아동·육아지원에 필요한 급여지원,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내각부에 아동·육아 본부가 발족되기도 하였다.

② 후생노동성의 아동·육아지원²⁸⁾

후생노동성의 아동·육아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으며 첫째는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 둘째, 육아지원활동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아동관(아동센터)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은 지자체별로 육아지원을 수행할 거점을 지정하여 ¹육아 가족의 교류의 장 제공과 교류 촉진, ²육아 상담 지원, ³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과 ⁴육아 및 육아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보육소, 아동관(아동센터) 등 지역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고,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NPO등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육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8) 출처: 후생노동성 아동·양육지원 제도 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kosodate/index.html
(2019년 9월 20일 검색)

2018년 기준으로 7,431개소에서 육아지원 거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며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은 사업의 범위와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정도에 따라 일반형과 연계형으로 분류된다. 일반형은 지역의 육아거점을 상설 설치하여 육아를 지원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과업의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육아 가족 간 교류공간을 제공하고 교류 촉진을 위해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계형은 아동관, 아동복지시설 등 다양한 양육지원에 관한 시설에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양육지원을 하는 것에 과업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육아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육아 관련 강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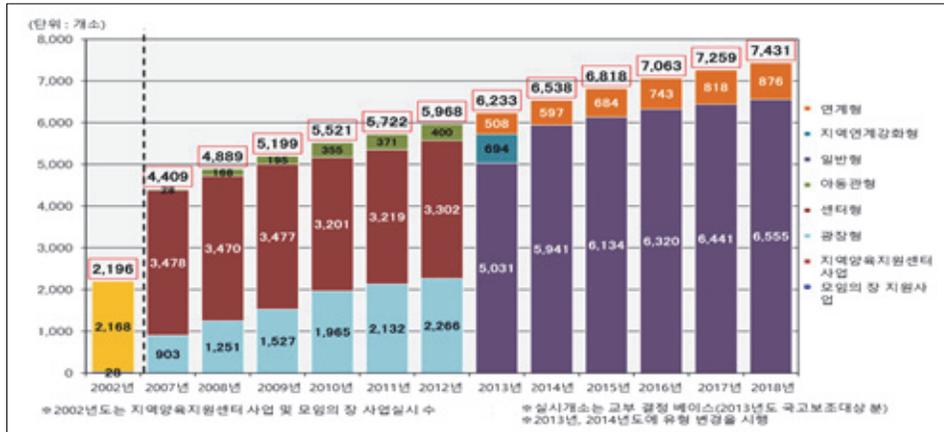
표 5-9 |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의 종류와 내용

구분	일반형	연계형
기능	지역 육아거점을 상설 설치하여 지역의 양육 지원기능을 충실히 하는 과업의 수행	아동관, 아동복지시설 등 다양한 양육 지원에 관한 시설에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양육지원을 위한 과업의 수행
기본사업	육아 가족의 교류의 장 제공과 교류의 촉진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육아에 관한 상담, 지원의 실시 육아 및 육아지원에 관한 강습 등의 실시

자료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mhlw.go.jp)

일본의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의 유형별 분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지역양육지원센터사업 및 모임의 장 지원사업이 총 2,168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7년 이후 육아지원 거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센터형 및 광장형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었으며 2007년 4,409개소에서 2012년 5,968개소로 증가하였다. 2013년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의 유형이 변경되면서 현재와 같은 일반형과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꾸준히 사업규모가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전체 7,4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계형이 876개, 일반형이 6,555개로 공간 제공과 관련된 일반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림 5-9 |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 실시개소 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mhlw.go.jp)

□ 육아지원활동 지원사업(패밀리 서포트 센터)

후생노동성의 또 다른 대표적 아동·육아지원 사업으로는 육아지원활동 지원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영유아나 초등학생 등과 육아를 희망하는 세대(근로자, 주부 등)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아동 돌봄 희망자와 돌봄 제공자를 ‘상호원조활동’ 이란 형태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육아지원활동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교부금의 지원을 받아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육아지원 교부금(2011년), 안심 아동기금(2012년)으로 이어져 2014년 보육 긴급확보사업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부터는 「아동·육아지원법」에 의한 내각부 추진의 ‘지역 아동 육아지원사업²⁹⁾’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상호원조활동에는 보육시설까지의 등·하원, 보육시설의 업무시간 전후나 학교 방과 후 아동 돌봄, 보호자의 질병 또는 긴급상황시 아동 돌봄, 관혼상제나 어린이의 학교행사시 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사업에는 863개 기초자치단체가, 병원·긴급대응 강화사업에 15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중이며 2017년 말 기준 회

29) 내각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아동 육아지원사업’은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이외에도 지역 육아지원거점사업, 어린이를 지키는 지역네트워크 기능강화사업, 육아단기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8.cao.go.jp/>(2019년 11월 14일 검색)

원수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퇴회원’이 57만명,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공회원’이 13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아동관(아동센터)

아동관은 아동복지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아동후생시설의 하나이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관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¹놀이를 통한 아동 육성, ²아동의 (방과후) 거처 마련, ³아동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⁴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대응, ⁵육아 지원(보호자 지원, 영유아지원, 보호자와 자녀세대의 체험 교류, 지역사회 내의 육아지원), ⁶지역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⁷자원봉사자 육성과 활동지원, ⁸방과후 아동클럽 시행과 연계 등이 포함된다.

아동관은 2017년 10월 1일 현재 4,541개소가 설치(공공 2,632개소, 민간 1,909개소)되어 있으며 아동관내 기본 설비로는 집회실, 유희실, 도서실, 화장실 등이 있으며, 아동후생원이라 불리는 아동관 직원들은 보통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를 지도한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이 공급하는 아동관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민간이 제공하는 아동관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후생노동성은 아동관의 운영을 위해 아동관 가이드라인, 아동관 실천 사례집 등을 제공하며, 규모별로 소형 아동관(217.6㎡이상), 아동센터(336.6㎡이상), 대형 아동센터(500㎡이상), 대형 아동관 A형(2,000㎡이상), B형(1,500㎡이상)으로 구분된다.

(4) 국토교통성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정책 [중앙정부]³⁰⁾

국토교통성의 육아 환경조성 제도는 「저출산사회대책 개요」(2004년)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출생률이 낮은 도시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육아환경만들기 형태

30) 국토교통성의 제도를 이어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맞게 활용하는 제도임, 내각부 주최 ‘청소년육성에 관한 내각부특명 담당장관과 유식자 간담회’ 자료(2007년). 출처 : 내각부 <https://www8.cao.go.jp/youth/suisin/tokumei-kondan/k-1/gijishidai.html>(2019년 9월 20일 검색)

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기존 국토교통성의 주택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¹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를 통한 재원으로 육아세대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² 고령자 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거이동 지원제도, ³ 주거지 안전을 고려한 육아 배리어프리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를 통한 주택공급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는 각 지역에서 거주 안정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용 보조 등을 통해 임대료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성은 지역우량임대주택 공급 사업(건설 및 개량)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의 일부(약 45%)를 지역주택교부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 해당자는 소득분위 0~40%인 고령자세대, 장애인세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있는 세대, 재난피해자, 밀집시가지에서 퇴거당한 사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세대당 월 4만 엔 한도에서 임대료 보조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지역우량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의 공급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139개(광역 5, 기초 134)로 공급계획 호수는 민간 3,788호, 공사 2,144호, 공공 1,990호로 총 7,922호였다. 지역우량임대주택 제도는 2007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15년에는 '육아지원' 유형을 신설하고 단독주택 등을 사업주체가 매입 또는 임대하여 육아에 적합하도록 개량하여 지역우량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개량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② 고령자 주거이동 지원제도

고령자 주거이동 지원제도는 고령자가 소유 주택 중 내진성 등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장기임대하여 양육가구에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는 상당히 커다란 주택인 반면, 육아수요가 있는 4인 이상 일반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가 작다는 주택재고와 수요의 불일치를 상쇄시키기 위해 시작되었

다. 이 제도로 인해 생애주기별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가 발생도 기존 고령자가구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증제도를 시행하여 보완하고 있다.

③ 육아 배리어프리의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를 배려하여 건축물 및 공공교통시설의 배리어프리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동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며, 통학로를 주요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도시재생)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방법등, 방법카메라 설치, 방법 순찰 지원, 영유아의 일시돌봄 등 거점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등학교시 안전을 위하여 지역 관계자와 연계하여 지역내 노선 버스를 스쿨버스로 활용하고 있다.

(5) 국토교통성: 육아를 배려한 주택과 주거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중앙정부]³¹⁾

국토교통성은 위에서와 같은 육아 환경조성과 더불어 주택 건설이나 환경조성시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에는 출산율 1.8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바 있으며(2004년 발표), 2015년에는 결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는 중점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설립된 국토교통성 내의 '안심거주정책연구회'에서는 육아세대를 위한 주택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수집하고 해당 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정리하였고, 국토기술행정종합연구소가 정리된 결과를 이용해 주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³²⁾

31) 2018년에 (안)으로 제출되었음

32) 출처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2019년 9월 20일 검색)

표 5-10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육아배려주택의 기본 관점	육아배려주택의 계획 포인트
1. 아동, 임산부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육아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주택내에서의 사고 리스크를 줄이고, 방범성능, 교통안전성, 재해안전성능 등을 갖춘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내 사고방지: 충돌, 넘어짐, 추락에 의한 사고방지, 문·창문에 손톱, 손가락 끼임 방지, 위험한 장소에 진입하거나 간힘 방지, 감전, 화상의 방지 ▪ 아동 상태의 돌봄: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기 쉬운 공간배치 ▪ 수상한자의 침입방지: 수상한자의 침입을 방지 ▪ 아동의 외출시 안전, 안심확보: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단지내 자동차 사고 방지, 교통안전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 방범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 ▪ 재해에의 대비: 재해시 피난경로의 안전을 확보, 재해발생후 피난생활에 대비, 재해안전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
2.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	아동의 건강과 학습, 지역사회 내 교류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의 건강 배려: 건강을 배려한 건축재료 사용, 채광·통풍 확보 ▪ 부모와 함께 활용하는 공간: 부엌, 거실, 욕실, 세면실, 탈의실, 침실의 크기와 사용의 편리성 확보 ▪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 화장실의 넓이 확보, 어린이의 자주성을 기르는 수납 설비의 고안, 흙과 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 확보, 아동의 성장에 맞는 방 확보(면적확보, 공간의 가변성 확보) ▪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육아세대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부모와 교류하기 용이한 환경 ▪ 육아, 아동의 성장지원 서비스 이용 용이 : 지역의 육아 상담 서비스 등이 충실하도록 정비, 아동의 일시 돌봄 등의 지원 서비스를 충실하게 정비 ▪ 아동의 보육, 교육환경: 보육소 등 보육시설의 이용 편리성, 유치원 등 유아교육시설의 이용 편리성, 초·중학교 등 교육시설의 이용 편리성, 인근에 아동의 교육상 적절하지 않은 시설의 배제 ▪ 아동의 놀이환경: 아동이 놀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의 이용 편리성
3. 쾌적하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	육아로 인해 가사활동, 정리, 돌봄 등의 부담 또한 증가하여 쌓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대응, 물건구입의 편의성 등을 갖추어 육아를 지원하는 쾌적한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소음 발생의 방지: 주택의 차음성능 향상, 생활소음을 허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육성 ▪ 육아 및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물건의 수납: 수납공간의 크기, 이용의 편리성 확보, 충분한 자전거 거치 대수 확보 ▪ 가사부담의 경감: 가사동선을 배려한 공간구조, 청소가 용이한 마감재, 설비의 고안, 비오는 날, 미세먼지 많은 날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방안 고안 ▪ 편리한 외출: 세대 내 이동, 외출 이동이 수월한 환경, 아동을 데리고 자동차로 외출하기 쉬운 환경, 아동을 데리고 공공교통기관으로 외출하기 쉬운 환경 ▪ 일상생활의 편리함: 의료기관의 이용 편리성, 식품, 일용품 등 상점, 생활시설의 이용 편리성
4. 부모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육아중의 부모의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 부모가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통근의 편리성, 숙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지인이 근처에 존재

자료 : 국토기술행정종합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ilim.go.jp>(2019년 9월 20일 검색)

(6) 도쿄도: 육아를 배려한 주택 가이드라인 [지자체]³³⁾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서 각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 단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는 ‘육아를 배려한 주택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주택지 조성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세대에 적합한 주거의 규모,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육아지원서비스와의 연계성을 위한 주택 조성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아동의 ¹놀이장소 및 육아를 위한 시설, ²주택 내 설비와 평면 계획요소, ³육아세대의 교류, ⁴관리운영 기준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5-11 | 육아를 배려한 주택 가이드라인

기준		주요 가이드라인
놀이장소 및 육아를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공간, 공원, 아동관, 도서관 및 아동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공원 등 아동의 놀이장소가 있음 ▪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동교육시설, 아동 진료시설 등 아동을 위한 시설을 충실하게 설치 ▪ 슈퍼마켓, 은행, 아동과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 자치회 등에 의한 활발한 지역활동, 안전 지도 만들기 등의 활동 시행
	주택 내 설비와 평면 계획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성능) 단차해소, 넘어짐 방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새집증후군 대책, 방음대책 등 ▪ (단위공간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관(유모차 보관장소, 센서조명) - 세면대(레버식 자동온도조절 수전, 샤워헤드수전 등) - 욕실, 화장실(핸드레일 설치, 진입방지자물쇠 설치 등) - 부엌(대면식 부엌, 차일드 펜스 등) - 창호(손가락끼임방지 장치, 레버핸들 등) - 침실(와이드 스위치, 셔터부착 콘센트 등)
	공용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성능) 추락 방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넘어짐 방지 ▪ (단위공간별) 출입로비, 공용복도,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공동현관, 위험개소 등에 출입방지,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33)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도쿄도 육아에 배려한 주택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함 http://www.juutakuseisaku.metro.tokyo.jp/juutaku_seisaku/child-care-guide.html(2019년 9월 20일 검색)

기준		주요 가이드라인
육아세대의 교류	육아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소, 가정보육사업, 소규모보육사업, 유치원, 통합형인증시설, ▪ 지역 육아지원거점, 학동클럽, 아동관, ▪ 소아과 등 의료시설
	키즈룸, 집회실 및 교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사양) 미끄럼방지 바닥, 위험장소의 펜스, 잠금장치, 손가락 끼임방지 설비, ▪ (필요공간) 수유공간, 공용화장실, 환담용 가구(테이블, 의자), 수납가구 및 공간 등 ▪ (서비스 제공예시) 근린보육시설과 연계한 육아상담, 일시보육, 입주자 대상 이벤트, 입주자간 교류, 육아지원서비스 정보제공
	옥외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기준) 모래놀이터, 미끄럼틀 설치, 텃밭 설치, 공용 세면대, 화장실, 창고 설치, 벤치, 파라솔 등 ▪ (서비스 제공예시) 입주자 대상 이벤트, 입주자간 교류, 작물 수확 이벤트
관리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계획시 배려사항) 입지의 적격여부에 대한 조사, 토지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지역사회 대상 정보제공,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 입주요건 설정 시 배려사항 ▪ (입주자 모집시 배려사항) 입주자 모집을 위한 정보제공시 배려사항, 입주자 계약 시 정보제공 배려사항, 입주자에 대한 육아지원정보 등의 제공 ▪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보내기 위한 배려사항) 기본적인 규칙의 지속적인 홍보, 거주자가 주도의 규칙 만들기, 입주자에 대한 육아지원정보의 지속적인 제공 ▪ (커뮤니티 양성을 위한 배려사항) 거주자간 교류 기회 제공, 지역주민과의 교류 기회 창출

자료 :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도쿄도 육아에 배려한 주택 가이드라인 http://www.juutakuseisaku.metro.tokyo.jp/juutaku_seisaku/child-care-guide.html (2019년 9월 20일 검색)

(7) 도쿄도: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 [지자체]³⁴⁾

도쿄도는 육아친화형 주거단지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육아를 배려한 주택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안전 향상, 가사활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조성하고 육아 지원 시설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이 육아에 적합한 환경조성을 시도한 주택단지에 대하여 육아지원주택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34) 출처: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도쿄도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 페이지 http://www.juutakuseisaku.metro.tokyo.jp/juutaku_seisaku/child-care-seido.html(2019년 9월 20일 검색)

표 5-12 | 도쿄 육아지원주택 인증기준(신축)

인증기준		주요항목	필수항목	선택 항목
입지 관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 모임의 장 등 아동의 놀이시설 등 주변입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동교육시설 등 주변입지 의료시설 등 주변입지 상업시설, 어린이를 동반하고 이용이 수월한 음식점 등 주변입지 자치회 등에 의한 범죄, 방화활동이 시행되는 지역 	1	4항목 중 1항목 이상
세대내 기준	기본성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차해소, 넘어짐 방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새집 증후군 대책 통풍, 채광확보, 방범대책, 방음성 확보 	44	19항목 중 8항목 이상
	단위공간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관, 세면실, 욕실, 화장실, 부엌, 창호, 침실, 발코니, 통로 등 		
공용 부분 기준	기본성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락 방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12	4항목 중 1항목 이상
	단위공간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로비, 공용복도,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공동현관, 위험개소 등에 출입방지,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육아지원시설, 키즈룸 등의 설치,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지원시설, 키즈룸, 집회실 및 교류 공간, 옥외공간 보육시설과 연계한 육아상담, 일시 돌봄 서비스 의료시설과 연계한 야간진료, 방문진료 베이비시터 등 방문 보육서비스 입주자 이벤트, 지역교류 등 육아 지원서비스 등의 정보제공 	0	6항목 중 1항목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반영하여 육아지원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0	1
관리 및 운영관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계획, 모집부터 입주까지의 배려사항 입주요건 등의 설정 시 배려, 모집 및 입주시 정보제공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보내기 위한 배려사항 기본적인 규칙의 알림, 육아지원정보 등 지속적 제공 커뮤니티 양성을 위한 배려사항 거주자간 교류, 지역주민과의 교류 기회 마련 	6	1
합계			63	총 35항목중 13항목 이상

자료: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http://www.juutakuseisaku.metro.tokyo.jp/>(2019년 9월 20일 검색)

인증대상주택의 요건으로는 분양 또는 임대 집합주택(기존 및 개축도 대상)으로 내화구조 또는 준내화구조를 갖춘 주택이 대상이며, 2세대 이상이며, 세대 전용면적이 50㎡ 이상(거실, 식당, 부엌, 기타 충분한 면적의 공동 이용 공간을 설치할 경우 40㎡)인 주택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건물이어야 한다.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한 인증 기준은 입지, 세대내 및 공용부분, 시설의 설치 여부, 서비스 제공, 지자체의 의견반영, 관리운영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기준에 대해 필수 및 선택항목의 충족 요건을 정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인증 주택은 21건 1,189호였으며, 인증에 따른 장점은 타 주택과의 차별화가 가능하고, 인증마크를 활용한 홍보효과, 신뢰도 향상, 일반 조성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용적률 완화 가능성 등이 있다.

(8) 요코하마시: 지역 육아지원 맨션인증제도 [지자체]³⁵⁾

요코하마시 또한 양호한 육아환경을 조성한 공동주택에 대해 육아지원 맨션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요코하마시 지역 육아지원 맨션 인증’은 분양, 임대, 신축, 기존 등에 관계없이 인증 대상이 되며 주택의 넓이, 차음성, 배리어프리 등 주택성능을 충족하고, 보육소 등 지역을 위한 육아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인증실적으로는 분양신축 6건, 임대신축 1건, 기존임대 6건 등 총 13건이다.³⁶⁾

인증을 받은 아파트단지는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에 인증단지로 소개되고 건설업체는 인증결과를 아파트의 판매, 임대시 육아세대 대응 단지라고 홍보할 수 있다. 또한, 공개공지 조성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가지환경설계제도’를 통해 보육소 등 일부 육아지원시설 부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단지 주택구입자는 금융기관에서 일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200

35) 요코하마시 지역육아지원 맨션 인증제도 페이지 내용을 참조함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suimai-kurashi/jutaku/sien/kosodate/gaiyou.html>(2019년 9월 20일 검색)

36) 안심거주정책연구회 중간보고 참고자료, 국토교통성(2016년) <http://www.mlit.go.jp/common/001082992.pdf>(2019년 9월 20일 검색)

세대 이상의 대규모 개발의 경우 ‘요코하마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시 보육시설 등의 설치 협력요청에 관한 요강’에 근거하여 (1) 계획 초기단계에 보육시설의 입지, 니즈에 대한 필요성 판단을 받을 수 있고 (2) 보육 운영사업자 선정 시 시의 지원(홈페이지에서 홍보활동 가능 등)을 받을 수 있다. 요코하마시 지역육아응원맨션으로 인증 받기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5-13 | 지역 육아응원 맨션인증제도 인증내용

구분	인증항목	세부내용
필수항목	주호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에 필요한 일정 면적을 확보한 거주공간
	배리어프리(신축인증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공용부, 세대내의 단차를 없애고 유모차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설계
	차음성(신축인증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이 두꺼워 발소리 등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을 고려한 설계
추천항목	안전, 방법, 거주편의성 등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육아지원시설의 설치로 지역 사회 내의 육아를 지원 인가 보육원, 요코하마 보육실, 요코하마시 가정보육사업, 방과후 아동클럽 등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 아동의 육성을 실시함(맨션 거주자의 우선입소를 보장하지 않음) 지역육아지원거점, 부모자녀의 모임광장: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에게 부모자녀가 머무를 장소의 제공, 육아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소아과 등 의료시설

자료: 요코하마시 www.city.yokohama.lg.jp (2019년 9월 20일 검색)

(9) UR 육아지원단지 [공공기관]³⁷⁾

공공주택공급기관인 UR도시기구에서는 2011년 「고소다테UR」이라는 이름으로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³⁸⁾ 이를 통해 전국 UR 단지를 대상으로 키즈룸 설치, 보육시설 유치 등 다양한 양육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일

37) UR도시재생기구 홈페이지 www.ur-net.go.jp(2019년 9월 20일 검색)

38) 기본 사업내용은 백혜선 외 『공적 돌봄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LH형 육아지원 공공주택단지 구축방안 연구(2019)』에 언급되어 있으며 본 원고에서는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된 내용만 정리함

환으로 주변 환경, 편의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에 대한 종합적 정보수집을 위하여 양육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사이트를 구축했다. 현재는 UR도시기구 홈페이지 내에 복지(welfare)정보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환경의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³⁹⁾

UR의 임대주택은 기존의 주거지원시설에 더하여 육아를 배려한 건축설계, 설비의 설치, 동호회를 비롯한 커뮤니티활동 등의 지원, 육아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 육아에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내부 공간에서는 육아와 동시에 요리하기 편리한 부엌, 장난감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이 포함되며, 주변환경 측면에서는 단지 내의 부지를 활용하여 육아에 적합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0) 육아세대를 위한 우량임대주택 [민간]⁴⁰⁾

도쿄도에서 시행하는 ‘육아세대를 위한 우량임대주택’은 육아세대가 안전하게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육아세대용 민간임대주택이다. 이 주택의 개발방식은 신규주택 건설방식과 기존주택을 육아세대용으로 개량하는 것이 있으며, 조성된 주택은 일정 자격 기준 이상의 관리자가 소유자로부터 관리위탁 받거나 일괄 임대하여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관리기간은 10년).

이 주택의 특징으로는 육아지원시설을 확보(신규건설주택만 해당)하고, 배리어프리에 대응하고, 아동이 홀로 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였으며, 아동이 임의로 욕실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음성을 강화하였다. 보증금은 임대료의 3개월 이내의 금액이며, 주택 전용면적은 50㎡ 이상으로 되어 있다.

39) ① 지역의료복지거점화, ② 혼합커뮤니티(mixed community), ③ 육아 환경의 조성, ④ UR 복지 네트워크 등 4가지 카테고리 구성, https://www.ur-net.go.jp/chintai_portal/welfare/index.html(2019년 9월 20일 검색)

40) 출처: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도쿄도 육아세대를 위한 우량임대주택 제도 페이지 http://www.juutakuseisaku.metro.tokyo.jp/juutaku_seisaku/child-care-chintai.html(2019년 9월 20일 검색)

3.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육친화 주거단지 및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국외사례로 프랑스와 일본의 양육친화 및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양육친화 주거단지의 국내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 주거단지는 물론 신규 일반주거단지에 대한 양육친화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이 아직은 초기단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눈에 띄는 양육친화 주거지는 최근 개발된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주택 위주였으며 그 사례도 매우 최근의 일이었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양육친화 정책이나 사례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자체(특히, 단체장)의 의지나 재정능력 등에 따라 편차가 컸다. 특히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양육친화 주거단지나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경우는 적었다.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양육시설의 설치를 하는 경우도 지자체별로 규제의 틀이 달라 일부의 경우 시간적, 행정적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민간에 의한 양육친화단지의 공급은 개별비영리단체의 의지나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여서 대규모로 공급되거나 서비스되기 어렵고 지역 네트워크로 발전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양육친화 단지의 조성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공공, 지역사회, 민간아파트, 주민이 협력관계를 통해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였다.

해외 정책 사례에서 프랑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으로 초기에는 지원금을 직접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최근에는 가족정책관련 예산을 축소, 가족 지원금을 줄이고 어린이 공간의 증설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가족지원정책은 수당지급에서 소득 등에 따른 지원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도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었으며, 동성 부모, 한부모 가족, 외국

인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다.

특히, 가족지원금은 자녀의 교육과 성장에 중점을 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수당은 자녀 출산 준비부터 양육, 정규교육과정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교육비, 양육비 등의 비용을 국가가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면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양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가족지원정책은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혜택을 주어 출산은 물론 양육비의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자녀 가족 구성을 유도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주택지원금은 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 주택 건설을 통한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체계적인 주택용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수와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용자 혜택과 주택 규모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이거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물론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유한 자가 소유자가 주택용자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면서, 프랑스 정부에서 지원 조건 검토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프랑스 정부는 지원자 선별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여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기존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와 함께 양질의 주택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책과 제도는 주로 중앙정부(국토교통성)에서 담당하였다. 하지만 주택정책이 사람과 지역 중심화 되면서 중앙정부 보다는 지자체 주도의 정책 및 제도 시행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양육가구가 중점 정책대상이 되면서 주택의 하드웨어 문제 해결 위주에서 주거 및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세대의 안정된 생활의 도모가 주요 목적이 되었다.

주택의 하드웨어 문제와 주거 및 복지서비스를 결합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중앙정부 간(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등)의 연계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아동의 경우 돌봄 및 교육 문제가 연관이 크고 국가적 이슈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가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확대되어 내각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의 연계를 통해 양육가구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간 역할 분담에서 중앙정부는 주요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실행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실행하며, 전달체계로 비영리단체 등 민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가구의 주거생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양육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입된 제도의 수혜 대상을 양육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돌봄 및 상담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사업의 이용 대상을 양육가구로 확대하는 방식 등이 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또한 대상을 확대하여 고령자주택을 양육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교류를 위한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하는 등 양육가구 간 교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와 일본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수당 및 지원금을 위주로 한 정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우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양육친화 정책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양육시설의 설치에도 적극적이었으며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는 양육비 감면 혹은 지원 등의 정책 위주로 양육 지원정책이 수립 집행되고 있으며, 양육친화적 주거지원은 법령적인 규제나 행복주택 등 신규공급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단지를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양육정책에 관심을 갖는 단계이고 민간의 경우 몇몇 사례에서 보논바와 같이 개인 및 일부단체의 필요에 의한 노력들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 민간, 참여자가 시스템화된 공조를 통해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CHAPTER 6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

-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149
- 2. 주거지원정책 발전방안 | 152
- 3. 주거인프라 확충방안 | 155
- 4.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 158
- 5.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 | 160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

본 장에서는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정책 지원 현황, 양육가구의 주거실태 및 개선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발전방안은 크게 주거지원 정책의 발전, 주거인프라 확충, 주거서비스 확대,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의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지난 10여년 동안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출산율의 회복과 이를 위한 영육아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 지원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합계출산율이라는 수치적 목표와 이를 위한 개별화된 수단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과 함께 저출산 대응정책은 출산 장려보다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수정)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저출산과 관련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등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and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위한 여건 확충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1) 정책 목표

본 연구에서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부문의 정책기조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삶의 기반 조성 및 돌봄 체계를 위한 여건 확충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양육가구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아동의 연령, 아동의 수, 가족의 형태, 혼인기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이 있는 가구가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접근성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여건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는 주거정책이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 외에 정서적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돌봄의 여건을 갖추는 것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공동 육아 및 주거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정책목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거여건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안한다.

첫 번째는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이다. 기존의 주거지원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금융지원, 주거급여 지원시 아동이 있는 가구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양육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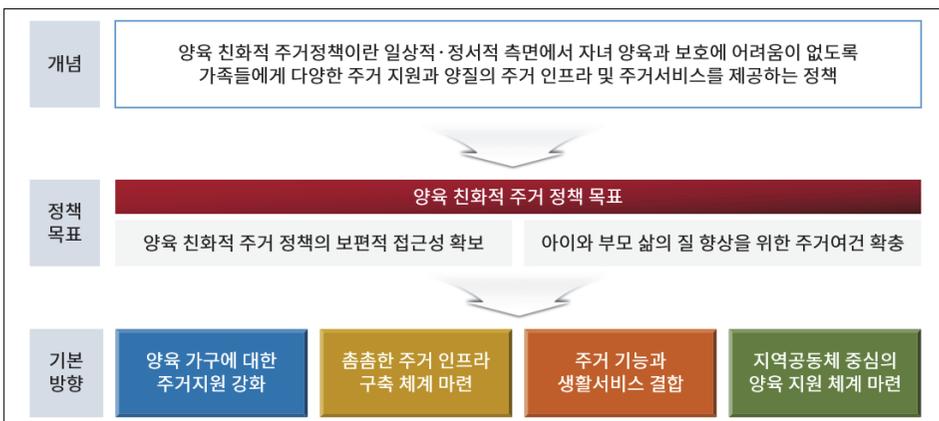
있다. 이는 양육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이키우기 좋은 촘촘한 주거인프라 구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거 인프라의 구축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며,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주거인프라는 주택유형에 따라 여건이 달라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기존주택 또는 신규주택, 아파트 또는 비아파트, 민간 또는 공공주택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주거형태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의 조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기존 주택에서 벗어나 양육가구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가사부담을 줄이며, 취미를 공유하는 등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즉, 주거 공간에서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기능과 육아, 교육, 복지, 문화, 가사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단위의 양육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가 필요하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양육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주거지원 정책 발전방안

1)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 확대

모든 양육가구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공급정책과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정책은 대부분 신혼부부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와 같이 신혼부부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은 주요 정책 대상 계층을 신혼부부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교육 및 보육 관련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혼부부에 비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 구입자금 관련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대상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주거실태조사(2018년 기준) 자료를 통해 일반가구, 신혼부부,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가구는 203.8만원, 신혼부부는 240.5만원인 것에 비하여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278.2만원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생활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자녀 수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자녀 수가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자녀 수 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을 중요한 입주기준으로 보고 있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고 있다. 현재 주거정책에 있어서 다자녀 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 ‘미성년

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 타 부처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의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으며, 평균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경우'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양육에 필요한 주거요소들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혹은 입주함에 있어서 양육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 적절한 임대료 및 점유형태, 주택의 입지와 위치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적절한 임대료(97.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택의 위치와 입지(96.3%), 주택의 품질(96.3%), 주택의 규모(9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점유형태로 전세를 83.8%가 선택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수준은 시세 대비 80% 미만인 89.1%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적절한 임대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점유형태는 현재와 같은 보증부 월세보다는 전세형태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료체계는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보증금 수준은 시세 대비 8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위치는 아동이 있는 가구들은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 인근이거나 역세권 위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시설 인근에 대한 선호가 4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역세권이 26.6%로 나타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교육환경을 고려한 입지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평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적정면적에 대해서 85㎡ 이상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방수의 경우 3개라고 응답한 비중이 83.1%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4개 이상의 방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공임대주택의 방의 수도 가구원수와 가구구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수가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적절한 방의 수가 확보된 넓은 평형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계층 및 세대 혼합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특정한 정책대상계층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인해 해당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사회적 낙인 효과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 슬럼화되거나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의 성장과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수준 및 생애주기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층 및 세대 혼합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상회할 만큼 긍정적이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 계층 및 세대 혼합 시 우선순위는 노인, 청년, 주거취약계층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낙인 효과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계층을 혼합하는 공급정책이 필요하며, 생애주기 측면에 있어서도 특정한 계층을 밀집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연령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정책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혜택 제공

구입자금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현재 2자녀 이상인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대출기준을 완화하여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가 한 명인 가구의 경우 대출상품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마련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비중이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재 ‘2자녀 이상인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해서 완화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의

규정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고, 대출한도도 더 높게 설정하고 있지만, 신청대상에 있어서 자녀 수에 따른 소득한도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녀 수에 따라 신청요건이 되는 소득한도를 차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교육 및 보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만큼 자산 축적을 위해 다자녀 저축상품 등을 개발하거나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과 같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자산 축적을 지원할 수 있는 저축상품을 개발하고 아동수가 많을수록 추가적인 금리혜택이 제공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주거인프라 확충방안

1)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주거인프라 공급 확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보육 및 교육 시설은 물론이고 야외활동이 가능한 장소, 문화시설, 의료 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주거지 인근에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이용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주택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주거인프라의 종류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도와 향후 이용의향을 고려했을 때 모든 지역에서 실내놀이터, 운동시설에 대한 인프라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은 야외활동이 가능한 장소, 도서관, 주민자치실의 이용의향이 이용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농어촌지역은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택유형별로는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야외활동 가능 장소, 실외놀이터, 도서관, 실내놀이터, 운동시설, 주민자치실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나 공급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의향이 이용도보다 높아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의 결과를 감안할 때 양육관련 주거인프라의 공급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프라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인프라별 공급 수가 아닌 이용자의 인구밀도와 주택유형 및 지역이 함께 고려되어 공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추진

앞서 양육관련 정책 현황 분석에서 초등학생의 방과후 시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에 관계없이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에 대한 필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에서 양육가구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돌봄공간 및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부처 차원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초등돌봄공간을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설정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 따르면 양육을 위한 교육, 학습, 돌봄관련 시설은 마을단위(도보기준)로 5-15분 이내로 설정¹⁾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6%(2017년 기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정의와 필수시설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열거되어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 공용취사장,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필수시설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경

1) 국토교통부. 2018.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12월 18일. 보도자료.

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즉, 초등돌봄공간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무설치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법령 개정 없이는 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주민공동시설로서 ‘방과후 초등돌봄시설’의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 주민공동시설의 ‘방과후 초등돌봄시설’로의 용도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비공동주택(단독·다세대 등)에 대한 주거인프라 공급 방안 마련

단독·다세대주택 지역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 관련 주거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까지의 이동시간이 10분을 초과하는 가구는 아파트의 경우 18.8%, 비아파트는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놀이터와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도보기준 이동시간이 10분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도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요로 하는 인프라도 야외활동 가능 장소(텃밭, 산책장소 등),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 실내놀이터, 도서관, 운동시설 등 매우 다양한 종류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일 기능의 시설보다는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방안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주거인프라 공급 시 최근 마련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국가 수준의 최저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현황에 따라 최저기준은 달리 설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최저기준을 기초로 지역단위의 최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초생활인프라 중 양육 관련 주거인프라가 국가 최저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자체가 ‘도시재생인정제도(추진 예정)’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양육친화적 주거서비스의 확대는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시설의 공급과 더불어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의 현황 및 설문조사, 국외사례를 고려할 때 양육친화적 주거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2) 공공부문 주거서비스 체계의 민간 확대, 3) 공동체 중심의 양육 서비스 확대가 주요 방안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주거서비스 확대의 궁극적 목적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육으로부터의 부담을 덜어 서 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서비스 확대라고 응답한 비중이 17.9%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서비스 중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응답은 양육관련 프로그램(60.6%), 아이돌봄서비스(44.7%), 가사지원서비스(38.2%), 양육가구 모임지원 서비스(3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양적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간을 양육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순환형 돌봄, 외부활동 연계형 돌봄 등으로 서비스의 공간범위와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과 돌봄서비스 수행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보험상품 개발 등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공공부문 주거서비스 체계의 민간 확대

최근 공공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신혼부부의 생애주기, 육아와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신혼희망타운의 설계기준에서 주거서비스 운영요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실’을 종합보육센터 및 타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거인프라와 주거서비스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특화시설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 청소, 생활가전 렌탈, 카셰어링 등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며, 대부분 물리적 공간마련에 치우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의무 규정만을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의 주요 소비계층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아동이 주요 가구원인 점을 감안할 때 육아시설 및 양육친화형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주거서비스 및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 등을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육관련 주거서비스를 도입하는 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친화형 주거서비스를 단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3) 공동체 중심의 양육 서비스 확대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많은 부모 및 보호자가 자녀 양육에 있어 물리적, 시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체 중심의 양육 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중심의 양육 서비스는 부모들이 직접 공동육아 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내의 아동을 함께 양육하는 형태이다. 이는 양육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부모 및 보호자 간에도 소통과 연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양육친화형 주택단지의 경우 대부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친밀도의 향상, 공동체 구축, 아동들의 높은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드러난 바 있다.

설문결과에서도 공동체 중심의 양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73.1%, 공동체 육아를 위해 재능기부를 할 의향이 있는 가구가 64.1%로 양육가구에서도 공동체 중심의 양육에 대한 장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공동체 중심 양육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양육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 중심 양육서비스를 희망하는 주거단지 및 공동체에게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양육전문가를 적극 양성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5.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

1)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현재 중앙정부의 일부 부처들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초등돌봄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협력관계에 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등 기존에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주무 부처들은 양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물리적 차원의 공간인 인프라 제공 관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처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은 2019년 구성되어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조직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연령대별 정책 사각지대 및 실질적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양육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현재 양육가구가 양육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또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친구, 가족,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는 것이다. 이런 사적 경로를 통해 얻게 된 정보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관심사가 유사한 그룹에서 얻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전문성에서의 한계가 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되는 양육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정책대상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 전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양육가구가 영유아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필요한 정보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의 개별 정책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는 양육관련 정보 전달체계가 분절적·단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보전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양육 정보 플랫폼은 관련 부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육 지원 정책의 정보를 포함하되, 대상은 아동뿐 아니라 양육주체인 부모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과 관련된 정보는 아동의 연령, 지역, 서비스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은 크게 신생아,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은 최근 지자체 단위의 특화사업들도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 단위 뿐 아니라 광역 시도나 마을단위의 정보 제공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내용은 교육, 보육, 건강, 문화, 체육과 같이 부처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분류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부모와 관련된 정보는 부모교육 정보, 놀이·문화·여가 정보, 양육자

건강체크,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가사 및 생활지원 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용자간 정보교환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양육가구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자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소통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보 플랫폼 개선과 양육 정책 보완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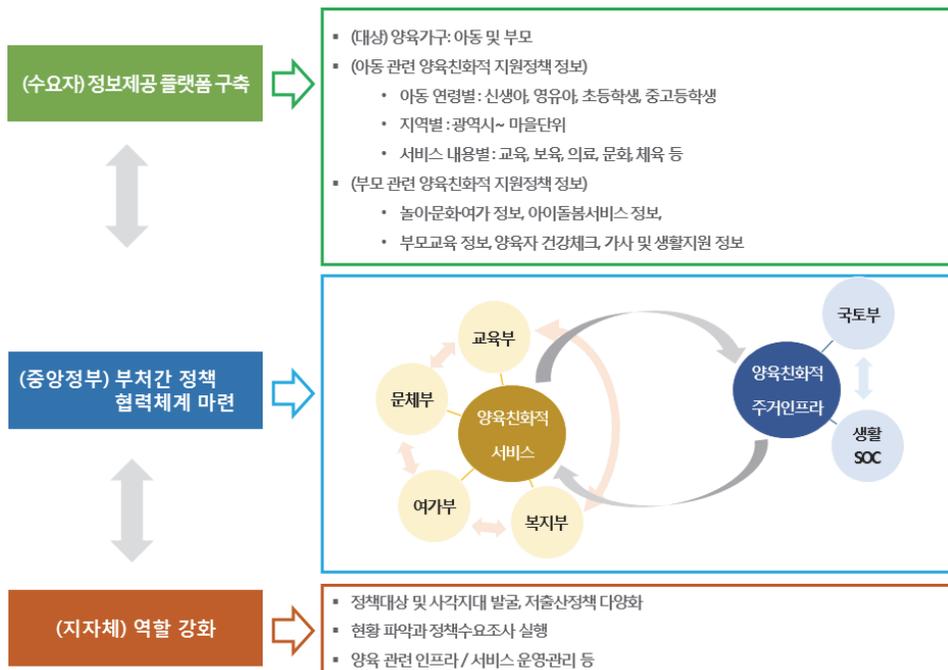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책에 있어 주민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실행체계는 급변하는 지역의 여건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 담당자에 비해 현장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양육 정책을 지원하고 실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앞선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지역의 규모나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양육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는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지역 환경에 따라 양육가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현장감을 살려 적극적으로 정책대상 및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양육 관련 정책 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정책대상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온라인,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을 알리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아직까지도 정보 획득에 곤란을 겪는 계층이 많으므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전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맞춤형 양육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대상 및 사각지대를 지역 단위에서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양육 관련 조사로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가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사의 목적도 가구의 출산, 결혼과 관련된 실태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거관련 사항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단위의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2 |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



참고문헌

REFERENCE



【 인용문헌 】

- (사)대한건축학회. 2010. 건축텍스트북 주거론. 기문당
- LH. 2016. 청약센터 임대공고문. 서울 오류동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16. 12. 29.
- 강덕성. 201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구매 특성 분석 :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순주 외. 2018. 신혼희망타운 주거서비스 운영방안 제안.
- 건설교통부. 200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내 커뮤니티센터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2018. 국토교통부훈령 제 1057호(2018년 7월 25일 일부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5호(2019. 3. 28., 일부개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8. 국토교통부훈령 제 1052호(2018년 7월 23일 일부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9. 대통령령 제 30147호(2019년 10월 22일 개정).
-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 관계부처 합동. 2018.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7월 5일
보도자료
- 교육복지정책과. 2018.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8.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12월 6일. 보도자료
- 교육부. 2018.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달성. 2월 12일. 보도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018. 대통령령 제 29180호 (2018. 9. 18. 개정)
- 국토교통부.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1월 29일.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2018.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 확정. 12월 18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18. 집 걱정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7월 4일.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권동현, 이영호. 2007.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환경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 논문집. 9(1). 89-96.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2018. 11. 22., 제정)
- 김도년 외. 2017.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공공생활 지원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SH도시연구원
- 김은혜. 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거기준 정책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 김중훈 외.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원석. 2008. 주거복지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도시와 빈곤. 84.
- 남원석. 2012.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주택도시연구. 2(2)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 (2018. 5. 8., 일부개정)
-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2018. 수서역세권 신희희망타운 당선작. (주)숨비 건축사 사무소, 노드플랜 건축사사무소(주). Life;BALANCE_The Balancing Bar
- 도난영, 최막중. 2018.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6(2). 163-18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 법률 제 16383호(2019년 4월 23일 일부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8. 법률 제 15317호(2017년 12월 26일 일부개정).
- 르몽드. 2018. Natalité : vers la fin de l'exception française. 1월 17일.
- 르몽드. 2019. 출산율: 프랑스의 끝은....., . 1월 17일. <https://prepaecocarnot.files>.

-
- wordpress.com/2018/02/natalite_2017_le_monde_janvier_2018.pdf (2019년 9월 15일 검색)
- 르몽드. 2019년. “프랑스의 출산율은 유럽 내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 1월 15일.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9/01/15/le-nombre-de-nai-ssances-continue-de-baisser-en-france-qui-reste-malgre-tout-le-pays-le-plus-fecond-de-l-ue_5409337_3224.html (2019년 9월 20일 검색)
- 박윤영. 2011.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상황과 복지. 32.
- 배영순 외. 2015.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서울: 희망제작소
- 백지혜. 2009.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영아의 상호작용의 질 및 순응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혜선 외. 2019. 公的 돌봄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LH형 육아지원 공공주택단지 구축방안 연구.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
- 범정부 공동추진단. 2017.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12월 28일. 보도자료
- 범정부공동추진단. 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 보건복지부. 2017.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2022) 발표. 12월 27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8.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보건복지부. 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서수정 외. 2016.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수정 외. 2017.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auri brief. No. 147.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7. 서울특별시조례 제 6598호 (2017년 7월 13일 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없도록 전면 확대 추진. 4월 4일. 보도자료
- 성은영 외. 2011.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성은영 외. 2019.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2019. 신내동 공동체주택 설명회 자료
- 유은경. 201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프랑스 가족수당제도 연구. 춘천: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2018-10.
- 윤주현 외. 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국토연구원.
- 이명아·이연숙. 2019.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은혜공동체주택의 특성 연구. 한국
주거학회논문집. 30(4), 31-44.
- 이소영 외. 2018. 2018 전국 출사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운재·박소운. 2018. 행복주택 커뮤니티시설 현황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6),
143-155.
- 이정원 외. 2017.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5
- 이정원, 이윤진, 김희수. 2017.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69-70
- 이주림, 구자훈. 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 이주림·구자훈. 2015. 근린생활권의 육아환경 요소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중요도-
만족도 분석 : 서울시 송파구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3), 1-9.
- 임덕영 외.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016. 법률 제 13805호(2016년 1월 19일
타법개정)
- 장명림 외. 2018.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장한두. 2010.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신도시 주거환경의 평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
- 26(4). 45-56.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 전호성. 2015. 일본 아동수당제도의 변화과정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서 연구. 일본문화학보. 66. 297-315
- 정민자 외. 2008.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개발. 경기: 보건복지가족부.
- 정소이, 박서경. 2019.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의 방향 - 신혼·육아세대의 수요 특성을 중심으로.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
- 정의철. 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18(2). 19-31.
- 주거급여법. 2018. 법률 제 15358호 (2018. 1. 16. 일부개정)
- 주거기본법. 2015. 법률 제13378호(2015년 6월 22일 제정)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2018. 대통령령 제 29459호(12월 31일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2018. 12. 11., 일부개정)
- 주택도시기금. 2019. 2019년 제5차 주택도시기금운영계획 변경
- 천현숙 외. 2012.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I). 안양: 국토연구원
- 천현숙 외. 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II). 안양: 국토연구원
- 청와대. 2018. 문재인 대통령, 서울경동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방문. 4월 4일. 보도자료
- 통계개발원. 2014. 통계개발원 2013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II. 대전: 통계개발원.
- 하성규 외. 2012. 한국 주거복지 정책 : 과제와 전망. 박영사
- 한경욱. 2019.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사례. 교육부 정부청사 발표 발표자료.
- 협동조합주택 은혜공동체. 협동조합주택 은혜공동체 설계과정 이야기
- 홍승예, 이재연. 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4(4). 83-104.
- 환경과 조경. 2018. "LH, 신혼희망타운 '맞춤형 조경시설·놀이시설' 공모 당선작 발표".

-
- 9월 19일. <http://www.lak.co.kr/news/boardview.php?id=5346> (2019년 11월 13일 검색)
- 国土交通省における子育て環境づくり, 2007, <https://www8.cao.go.jp/youth/suisin/tokumei-kondan/k-1/pdf/s4-1.pdf> (2019년 9월 20일 검색)
- 東京都 子育てに配慮した住宅のガイドライン, 2017, http://www.juutakuseisaku.metro.tokyo.jp/juutaku_seisaku/child-care-guide.html (2019년 9월 20일 검색)
- 安心居住政策研究会中間とりまとめ 参考資料集 (案), 2016, <http://www.mlit.go.jp/common/001082992.pdf> (2019년 9월 20일 검색)
- 子育てに配慮した住宅及び居住環境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案), 2018, <http://www.nilim.go.jp/lab/iag/download/honpen1.pdf> (2019년 9월 20일 검색)
- 平成30年版 厚生労働白書, 2019, <https://www.mhlw.go.jp/wp/hakusyo/kousei/18/dl/all.pdf> (2019년 9월 20일 검색)
- CAF. 2018. La branche famille de la société sociale. <https://www.caf.fr/sites/default/files/plaquette%20branche%20famille%20francais.pdf> (2019년 9월 15일 검색)
- Clark, W. A. V. and Onaka, Jun L. 1983. Life Cycle and Housing Adjustment as Explanations of Residential Mobility. *Urban Studies*. 20. 47-57.

【참고 사이트】

- UR도시재생기구 www.ur-net.go.jp (2019년 9월 20일 검색)
- 가버지뉴스(ガベージニュース). 2018. 09. 28. 일본의 출산율과 출생수를 그래프로 보다 (日本の出生率と出生数をグラフ化してみる), <http://www.garbagenews.net/archives/2013423.html> (2019년 11월 20일 검색)
- 교육부. 내게 꼭 맞는 혜택, 교육지원 한눈에. <https://eduone.moe.go.kr/search.html?type=tab4>. (2019년 6월 29일 검색).
- 구로문화재단 블로그, 오류 문화센터 소개(<https://m.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 = grarts&logNo = 221261349696&proxyReferer = https%3A%2F%2F
www.google.com%2F) (2019년 11월 21일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년 6월28일 검색)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2019년 6월
29일 검색).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http://www.juutakuseisaku.metro.tokyo.jp/>(2019년 9월 20일
검색)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2019년 6월 28일 검색)

보건복지부. 인구아동 정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 PAR_ MENU_ID=06&MENU_ID=06380102&PAGE=2&topTitle = %EC%A7%80% EC%97%AD%EC%95%84%EB%8F%99%EC%84%BC%ED%84%B0](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102&PAGE=2&topTitle=%EC%A7%80%EC%97%AD%EC%95%84%EB%8F%99%EC%84%BC%ED%84%B0). (2019년
6월 29일 검색).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플랫폼 웹페이지. <https://soco.seoul.go.kr/cohousingIntro.do>
(2019년 6월 28일 검색)

세계은행(World Bank) 웹페이지. Fertility rate, total(virths per woma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 locations =EU-FR-IE-SE](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EU-FR-IE-SE) (2019년
9월 20일 검색)

시사경제신문(2019. 3. 21.),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오픈,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 idxno=37678](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7678) (2019년 11월 21일
검색)

시정일보(2019. 2. 18.).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올해 27개 확충,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26102](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102), (2019년 11월 23일
검색)

신혼희망타운 웹페이지.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방안. <http://신혼희망타운.com/>. (2019년
6월 28일 검색)

아시아경제(2019. 8. 30.), 성동구, 아이꿈누리터 2개소 동시 문 열어, <https://www.asia>

e. co. kr/article/2019083006595768728, (2019년 11월 23일 검색)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4.do. (2019년 6월 29일 검색).

이투데이(2017. 4. 11.), SH공사·소행주, 신내동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공급, <http://www.etoday.co.kr/news/view/1479128>, (2019년 11월 23일 검색)

일본 국토교통성 www.mlit.go.jp/(2019년 9월 20일, 11월 14일 검색)

일본 국토기술행정종합연구소 <http://www.nilim.go.jp/>(2019년 9월 20일 검색)

일본 내각부 www8.cao.go.jp/(2019년 11월 14일 검색)

일본 요코하마시 www.city.yokohama.lg.jp/(2019년 9월 20일 검색)

일본 후생노동성 www.mhlw.go.jp/(2019년 9월 20일 검색)

주택도시기금. <https://enhuf.molit.go.kr/> (2019년 11월 12일 검색))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30000/d1_600058/d1_600220/d1_600226.jsp. (2019년 6월 29일 검색).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30000/d1_600058/d1_600220/d1_600226.jsp. (2019년 6월 29일 검색).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소개. <http://www.youth.go.kr/yaca/about/about.do>. (2019년 6월 29일 검색).

프랑스 가족보조금(Caisse d'allocation de familiales: CAF) 홈페이지. <http://www.caf.fr/> (2019년 9월 15일 검색)

프랑스 공공서비스.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550> (2019년 9월 15일 검색)

프랑스 국세청. <https://www.impots.gouv.fr/portail/particulier/deductions-liees-la-famille> (2019년 9월 15일 검색)

프랑스 법령포탈. 부양가족 주택 보조금.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88784&dateTexte=20190930>(2019년 9월 15일 검색)

프랑스 법안 발전을 위한 자문 사이트, <https://conseildansesperanceduroi.wordpress.com/2018/01/17/la-population-francaise-poursuit-sont-accroissement-mais/>
(2019년 9월20일 검색)

프랑스 임대주택 HLM 사이트, <https://www.hlm.coop/ressources/all/9733> (2019년 9월 15일 검색)

프랑스 통계청, <https://www.insee.fr/fr/accueil> (2019년 9월 20일 검색)

휴정심(2017. 10. 31.), 은혜공동체엔 사람을 끄는게 있다, <http://well.hani.co.kr/807373>,
(2019년 11월 23일 검색)

【 관련문헌 】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SUMMARY



Study on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Kim Jeehye, Lee Jaechoon, Lee Giljae, Kim Jungin, Joe Hanjin

Key words: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housing support policy, housing infrastructure support policy, housing service support policy

The government's paradigm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has recently changed from enhancement of fertility to guarantee of the quality of life in all households and expansion of social investment regarding future generation. This signifies that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recognize low fertility as something that had to be adapted to instead of something that had to be overcome and this also signifies that the policy stance has also changed towards minimizing various social side effects arising from low fertility. However,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household's quality of life is housing issues. To raise a child, it is necessary to have a house for stable residence and there must be an infrastructure in place that offers education, child care, health and medical, culture and sports activities for children around the place of residenc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services that support not only children but also parenting activities of parents centered on the place of residence, starting from child care services to life support services for parenting households. However, the current housing policy is focused on housing support policies such

as supply of public housing, financial support for housing and housing allowance. Therefore, in line with the evolving paradigm of low fertility policy, housing policy also has to shift its focus to securing the quality of life in parenting households.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evelopment measures of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paradigm that has changed. Prior to a full analysis, the concept of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which is still unfamiliar was established and the components as well as the scope were defined.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refers to a policy that provides various housing supports to families, high quality housing infrastructure and housing services to eliminate difficulties in parenting and protection of children from daily and emotional perspectives. Furthermore, the components of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includes housing support policy, housing infrastructure support policy and housing service support policy. Housing support policy refers to supply of housing for parenting households, financial support for housing and housing allowance policy while housing infrastructure support policy refers to establishing and supporting good housing infrastructure for raising children so it refers to facilities that residents use together in the house or that supports the lives of residents. Housing service support policy refers to services related to housing that a child and parents would receive as support in parenting process and is largely classified into parenting life support and parenting community support servi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policy, current housing status of parenting houses, actual condition of policy support and the like based on such concept and components of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97.1% of married women (aged 15~49) responded by saying that government's support for childbirth and parenting was necessary and among them, 38.8% responded by saying that the absolute support of the government was necessary. As for desirable social condition for parenting, it was in the order of income

enhancement and stabilization of employment (22.4%),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 (21.1%), creation of safe and pleasant parenting environment (10.5%), resolution of burden of parenting cost (9.9%), provision of housing service related to parenting (9.8%), indicating that housing policy was an important element in parenting. In addition, as for the factor that had to be reinforced further in the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facility) related to parenting was the highest with 35.9% followed by housing service support for parents and children with 17.9% and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housing with 17.6%. In case of housing support service, the average monthly living expenses of a household with a child below the age of 12 was KRW 2.782 million which was higher than a general household (KRW 2.038 million) and newly-wed (KRW 2.405 million) so there may be difficulty in accumulating wealth relatively.

Of course, the required support areas differed slightly depending on the type of housing (apartment house) or region (big city, small and medium city, rural village). For example, for parenting households living in non-apartment, facility expansion was more urgent compared to apartment residents due to low accessibility to housing infrastructure related to parenting. As per reg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ntion to use places with outdoor activities (vegetable garden, promenade etc.), library and others was high in big cities while the intention to use after-school study classrooms (care spac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r joint childraising shelter was high in rural villages so the expansion of related infrastructure and service was required. In relation to housing services, the importance of child care servic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order of parenting program or household chore support service. Such result is similar regardless of region or housing type and the importance of child care service was relatively higher in apartment, big, small and medium city and

non-public rental households.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 the policy development measures per components of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housing support policy, it is necessary expand the subject of policy from the current newly-wed to household with children as the housing support policy required for newly-weds and households with a child below the age of 12 is almost similar. Second, when it comes to supplying public housing, improvements considering the policy demand for parenting households such as shift to rental fe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income level of household, appointment of site considering housing infrastructure such as education facility, increase in exclusive space use and others are necessary. Third, review on preventing labelling effect and regional slumism which may occur in the current rental housing supply system as well as the basic direction of rental housing supply in the form of combined class and household instead of specialized complex when considering the change in life stages of the resident seems to be required. Forth, the subject of policy on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housing has to be expanded to households with children in order to support the wealth accumulation of parenting household and considerations must be made on measures such as developing savings with favorable interest rate.

As for the development measures of housing infrastructure support policy, it is necessary expand the supply of housing infrastructure related to parenting by considering the region and housing type and it is required to implement compulsory care space within apartment housing through amendment of law and regarding non-apartment housing, it is necessary to supply facilities with multiple fun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infrastructure supply project such as Urban Regeneration Recognition system or Living SOC projects. As for housing service support policy, measures of expanding parenting-related housing

service to enhance the children as well as parents' quality of life and expanding the model housing service cases that are recently being implemented in Newlywed Hope Town or Happy Housing to the private sector can be considered. Also, considering the case of community housing and joint childraising and others that are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among parenting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foster specialized group and expand public institute's support so that community-centered parenting service could settle in well in terms of policy.

Lastly, in order for such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to be operated effectively and for parenting households that require the policy to receive actual support, connecting the policies of the relevant ministries that are currently implementing parenting-related policies is essential above all. Therefore, from the mid/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ly divided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y preparing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not easy to obtain information even if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parenting support policies, a parenting information platform capable of playing the role of a medium in collecting opinions has to be set up in order to enhance the user's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to complement and improve policies in the future. Lastly,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is the actual implementing entity and that can analyze the policy demand of parenting households as well a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cy must be extended and a mutual cooperation system must be set up so that the voices of the site can actually be reflected in the policy that is analyzed and plan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방안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양육친화 주거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가구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9년 9월

- 조사주관기관 : 국토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Hankook Research



A. 응답자 일반특성

선문1.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미혼 → 선문3
- 2. 유배우 → 선문2
- 3. 사별/이혼/별거 → 선문3

선문2. 귀하께서는 언제 결혼하셨습니다?

- 1. ()년

선문3.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면접중단

선문4.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 1. 총 ()명

선문5.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출생연도	성별	
		남자	여자
		1	2
1. 첫째 자녀	1. ()년		
2. 둘째 자녀	1. ()년		
3. 셋째 자녀	1. ()년		
4. 넷째 자녀	1. ()년		
5. 다섯째 자녀	1. ()년		
6. 여섯째 자녀	1. ()년		
7. 일곱째 자녀	1. ()년		
8. 여덟째 자녀	1. ()년		
9. 아홉째 자녀	1. ()년		

[로직: 출생연도 2007년~2019년인 자녀가 없을 경우, 면접 중단]

// D파트와 배문에서 특정 자녀 관련한 문항의 기준 자녀는 2007~2019년인 자녀 중 출생연도가 가장 빠른 자녀 기준으로 진행함

관련 문항에서는 해당 기준 아동의 출생연도를 불러와서 제시함(파란색으로 표시)

예1: 기준 자녀가 2007~2012년생인 경우, D2~D5는 건너뛰고 D6~D9를 진행함

예2: 기준 자녀가 2013~2019년생인 경우, D2~D5를 진행하고, D6~D9는 건너뛴 //

1. 2016~2019년 : 영아 / 2. 2013~2015년 : 유아 /

3. 2010~2012년 : 초저 / 4. 2007~2009년 : 초고 //

선문6.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시/도 ()구/시/군 ()읍/면/동

A1. 귀 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명

A2. 귀 댁의 가족 구성은 다음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조부모+부모+자녀
2. 조부모+한부모+자녀
3. 부모+자녀
4. 한부모+자녀
5. 기타()

[로직: A2=2, 4인 경우는 A3=2 자동저장 후 A4로 넘어감]

A3. 귀 댁은 맞벌이입니까? [단수]

1. 예
2. 아니오

A4. 귀댁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전체 가구원의 총 소득을 응답해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149만원
3. 150~199만원
4. 200~249만원
5. 250~299만원

-
6. 300~399만원
 7. 400~499만원
 8. 500~599만원
 9. 600~699만원
 10. 700~799만원
 11. 800~899만원
 12. 900~999만원
 13. 1000만원 이상

// 쿼터(소프트 2) 체크: 저소득 가구

1. A4=1~4 : 저소득 가구
2. A4=5~13 : 비저소득 가구 //



B. 현재 주거 현황 및 만족도

// 카테고리(B1): 현재 주거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B1. 귀 닥의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1. 단독주택
2. 다가구주택
3. 연립/다세대주택
4. 아파트
5. 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여관 등) 내 주택
6.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 포함)

B2. 귀 닥의 주택 사용면적(전용면적)은 몇 평입니까?

※ 주택 사용면적은 실제 가구가 사용하는 실 평수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만 응답해 주십시오.

1. ()평

B3. 귀댁의 주택 구조는 어떻습니까?

※ 원룸형은 침실, 거실, 식당이 벽 또는 문에 의해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나의 독립된 공간 안에 전부 모여 있거나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거 형태(쪽방 포함)를 의미합니다.

1. 원룸형 → B5
2. 원룸형 아님 → B4

B4. 귀댁의 방은 몇 개입니까?

1. ()개

[로직: 선문5의 출생연도 < 2013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서로 성별이 반대인 케이스가 1쌍이라도 있는 경우만 B5에 응답함]

기준 아동과는 달리 해당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무조건 진행함]

B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나이 8세 이상의 이성 자녀가 2명 이상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해당 이성 자녀들이 현재 침실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1. 예 → B5-1
2. 아니오 → B6

[로직: B5=1인 경우만 B5-1에 응답함]

B5-1. 앞으로 3년 안에 이성자녀의 침실을 분리할 수 있는 주택환경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1. 예
2. 아니오

B6. 귀댁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5. 무상

B7. 현재 거주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직장 인근이어서
2. 전철역 등 대중교통 인근이어서
3. 보육 및 교육 시설 인근이어서
4.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등의 거주지 인근이어서

-
5. 시장, 마트 등이 가까워서
 6. 집값 또는 임차료가 저렴해서
 7. 기타

[로직: A2=1 OR 2인 경우만 B8에 응답함]

B8.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2.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3. 상호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4. 부모님의 건강 문제 때문에
5. 자식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6.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7. 기타()

[로직: B7=4인 경우만 B9에 응답함]

B9.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등의 거주지는 귀하의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편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걸어서 5~10분 거리
2. 걸어서 10~30분 거리
3. 차로 30분 이내
4. 차로 30분 초과 1시간 이내
5. 차로 1시간 초과

[로직: B6=1인 경우만 B10-1에 응답함]

B10-1.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 현재 집을 판다고 가정할 때의 금액 또는 현재 부동산 시세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억 ()만원

[로직: B6=2 OR 3인 경우만 B10-2에 응답함]

B10-2.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 가장 최근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억 ()만원

[로직: B6=3 OR 4인 경우만 B10-3에 응답함]

B10-3.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월세는 얼마입니까?

※ 가장 최근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사글세, 연세, 일세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만원

[로직: B6=1인 경우만 B11-1에 응답함]

B11-1.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항목별 비중을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주택 가격: [제시: B10-1]만원

구분	비율
1. 부모님, 친지, 다른 형제 등 무상 지원액	1. ()%
2. 은행 대출 및 빌린 금액	1. ()%
3. 자기자금	1. ()%
4. 합계 [자동 계산: SUM(1 TO 3)]	()%

[로직: B6=2 OR 3인 경우만 B11-2에 응답함]

B11-2.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항목별 비중을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주택 보증금: [제시: B10-2]만원

구분	금액
1. 부모님, 친지, 다른 형제 등 무상 지원액	1. ()%
2. 은행 대출 및 빌린 금액	1. ()%
3. 자기자금	1. ()%
4. 합계 [자동 계산: SUM(1 TO 3)]	()%

B12. 귀 닥의 월 평균 생활비는 총 얼마입니까?

※ 지난 1년 간 평균 금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150만원 미만
3. 150~200만원 미만
4. 200~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 생활비란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생활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공적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비롯해, 타 가구에 보내는 돈 등
- 2) 저축,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유가증권 부동산 구입, 빌려준 돈 등
- 3) 주택부금 상환, 빌린 돈 갚은 금액 등
- 4) 혼수장만이나 교통사고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 등

B13.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월 평균 주거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지난 1년 간 평균 금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10만원 미만
2. 10~13만원 미만
3. 13~17만원 미만
4. 17~28만원 미만
5. 28만원 이상

※ 주거관리비란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을 포괄합니다.

B14. 현재 주택 내부시설의 항목별 이용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 시설이 없다면, '해당 없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2	3	4	9
1. 거실의 면적					
2. 집의 구조					X
3. 수납공간/공간절약형 가구					
4. 방의 면적					X
5. 문턱 없는 문지방					
6. 난간 설치(주택 내 층간 등)					
7. 미끄럼 방지 바닥 마감					
8. 베란다(테라스)					
9. 주택 내부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X

B15. 다음의 주택 내부시설 중 양육친화적 주거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RANK: 3]

1. 거실의 면적
2. 집의 구조
3. 수납공간/공간절약형 가구
4. 방의 면적
5. 문턱 없는 문지방
6. 난간 설치(주택 내 층간 등)

7. 미끄럼 방지 바닥 마감
8. 베란다(테라스)

B16. 현재 주택의 주거비 항목별 부담 수준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임차료 또는 대출금이 없다면, '해당 없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부담 수준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 없음
	1	2	3	4	9
1. 임차료 지불 또는 대출금 상환					
2. 월 주거관리비					
3. 주거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C. 미래 희망 주거 현황

// 카테고리(C1):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

C1. 귀하께서 향후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1. 단독주택
2. 다가구주택
3. 연립/다세대주택
4. 아파트
5. 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여관 등) 내 주택
6.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 포함)

C2. 귀하께서 향후 희망하는 주택 사용면적(전용면적)은 몇 평입니까?

※ 주택 사용면적은 실제 가구가 사용하는 실 평수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만 응답해 주십시오.

1. ()평

C3. 귀하께서 향후 희망하는 방 수는 몇 개입니까?

1. ()개]

C5. 귀하께서 향후 희망하는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5. 무상

C6. 귀하께서는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1. 예 -> C6-1
2. 아니오 -> D1

C6-1.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1. 면적이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2. 통근시간 절약을 위해 직장인근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3.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4. 양육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나 친척집 인근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5. 병원, 문화·상업시설 등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6. 집값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7. 양호한 교육·보육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살고 싶어서
8. 녹지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살고 싶어서



D. 출산 및 양육 현황

// 카테고리(D1): 다음은 출산 및 양육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D1. 귀하는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1. 있다 -> D1-1
2. 없다 -> D1-2

D1-1. 현재 자녀 외에 몇 명의 자녀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까?

1. 추가로 계획 중인 자녀 수 ()명

[로직: D1=2 응답자만]

D1-2.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RANK: 2]

1. 현재 소득이 적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2. 자녀가 있으면 학업/취업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서(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3. 경제적 사정 때문에(육아/교육비 등이 부담되어서)
4. 육아에 도움을 받을 시설(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없어서
5.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6.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마련이 어려워서
7. 난임(불임)으로 의료시술까지 감행하기가 어려워서
8. 기타()

// D2~D5는 기준 아동의 출생연도가 2013년~2019년인 경우만 응답함 //

// 카테고리(D2): 다음은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2019년까지의 아동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D2.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는 현재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1. 예 → D3
2. 아니오 → D4

D3.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가 다니는 기관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학원(반일제 이상, 영어유치원, 유아체능단 등)
4. 기타

D3-1.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는 하원 후 누가(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돌봄시간이 긴 순서대로 최대 2가지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2]

1. 아이의 부모
2. 베이비시터
3. 아이의 조부모
4. 아이의 친인척(이모, 고모, 삼촌 등)
5. 자녀의 형제자매
6. 기타()

[로직: D2=2인 경우만 D4에 응답함]

D4.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2. 가까운 곳에 돌봄시설이 없어서
3.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없어서
4.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6. 아이가 너무 어려서
7. 직접 키우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발달 등에 좋을 것 같아서
8. 기타()

D5. 귀하께서는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를 돌보는데 누가(어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학원(반일제 이상)
4. 아이의 부모
5. 베이비시터
6. 아이의 조부모
7. 아이의 친인척(이모, 고모, 삼촌 등)
8. 자녀의 형제자매
9. 기타()

// D6~D9는 기준 아동의 출생연도가 2007년~2012년인 경우만 응답함 //

// 카테고리(D6): 다음은 초등학교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2012년까지의 아동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D6.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는 방과 후 누가(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돌봄 시간이 긴 순서대로 최대 2가지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2]

1. 정부지원 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 등)
2.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3. 학원
4. 아이의 부모
5. 베이비시터
6. 아이의 조부모

-
7. 아이의 친인척(이모, 고모, 삼촌 등)
 8. 자녀 혼자 지냄
 9. 자녀의 형제자매
 10. 기타()

// D6 응답이 2개일 경우, D7 문항에 'OOO', 'OOO' 형식으로 두 응답 엮어서 모두 제시 //
 [로직: D6=1, 2, 3 중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만 D7에 응답함]

**D7. [제시: D6=1 OR 2 OR 3]을(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 중고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3. 특기교육을 위하여
4.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5.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6.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7. 장래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8. 집 근처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여
9. 기타()

[로직: D6=1, 2, 3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만 D8에 응답함]

**D8. 정부지원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2. 집과 가까운 곳에 기관이 없어서
3.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서
4. 학원에 픽업 서비스가 잘 안되어 있어서
5. 아직은 집에서 놀게 해주고 싶어서
6. 기타()

**D9. 귀하께서는 방과 후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를 돌보는데 누가(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지원 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 등)
2.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3. 학원
4. 아이의 부모

5. 베이비시터
6. 아이의 조부모
7. 아이의 친인척(이모, 고모, 삼촌 등)
8. 자녀 혼자 지냄
9. 자녀의 형제자매
10. 기타()



E. 양육가구 대상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조사

// 카테고리(E1): 다음은 양육가구 대상 지원 정책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

E1. 귀하께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의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RANK: 2]

1. 주택가격 안정
2. 주거안정성 확보(거주기간 안정 등)
3. 소득향상 및 고용 안정
4.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5. 양육관련 주거서비스 제공(가사 또는 생활편의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6. 양성평등 구현
7.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8. (교육비를 제외한) 자녀 양육 비용 부담 해소
9.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10.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1.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12.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13. 기타()



F. 주거지원 방안

// 카테고리(F1): 다음은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

F1-1. 다음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이용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인지도			현재 이용여부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예	아니오
	1	2	3	1	2
1. 장기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2. 신혼부부 전세임대(SHIFT,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등)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4. 공공분양(신혼부부 특별공급)					
5.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6.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7. 월세자금 대출지원(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 인지도에 1, 2인 경우만 현재 이용여부를 응답함 //

F1-2. 다음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향후 이용의향	
	있다	없다
	1	2
1. 장기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2. 신혼부부 전세임대(SHIFT,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등)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4. 공공분양(신혼부부 특별공급)		
5.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6.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7. 월세자금 대출지원(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로직: F1의 항목 1~3 이용여부 중 하나라도 '1. 예'인 경우만 F2에 응답함]

F2. 귀하께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아서
2. 자주 이사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서
3. 시설이나 주변 여건이 현재 거주하는 집보다 좋아서
4. 이전 집보다 면적(또는 방수)이 넓어서
5. 유사 성격의 계층 및 그룹과 주거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육아, 신혼부부, 사회 초년, 청년 등)
6.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7. 기타()

[로직: F1의 항목 1~3 향후 이용의향 모두 2인 경우만 F3에 응답함]

F3.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기 때문에
2. 직장·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서
3.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4. 자녀 교육여건이 나빠질 것 같아서
5. 임대보증금, 임대료, 주거관리비 등이 지금 거주하는 집보다 비쌀 것 같아서
6. 가구원 수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또는 방수)가 작을 것 같아서
7.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8. 낮은 주택상태 및 품질 때문에
9. 입주자격이 안되거나 당첨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10. 기타()

[로직: F1의 항목 5~7 이용여부 중 하나라도 '1. 예'인 경우만 F4에 응답함]

F4. 정부의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대출기간이 길어서
2. 대출상환방식이 적절하기 때문에
3. 금리가 낮아서
4. 공공기관 상품이라서 신뢰가 가기 때문에
5. 개인 신용도가 나쁘더라도 대출여부에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6. 대출상담이 신속하고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7. 대출한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8. 기타()

[로직: F1의 항목 5~7 향후 이용의향 모두 2인 경우만 F5에 응답함]

F5. 주택마련 관련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대출받지 않아도 충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서(스스로 마련 가능)
2. 회사 혹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서
3.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서(대출받을 형편이 안되어서)
4. 대출/용자 등 은행으로부터 빌리기 싫어서
5. 대출 상품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연소득, 주택 면적 등)
6.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적어서(한도 부족)
7. 주택자금마련 대출 상품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8. 기타()

F6. 귀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거주 시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2	3	4
1. 주택의 품질				
2. 주택의 유형(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				
3. 주택의 규모(45㎡, 60㎡, 85㎡ 등)				
4. 적절한 임대료				
5. 주택의 입지와 위치(도심과의 거리)				
6. 임대 및 거주기간의 연장				
7. 육아특화시설 마련				

F7. 귀하께서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는 어디입니까? 희망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RANK: 2]

1. 역세권(대중교통 편리)
2. 직장근처(직주근접)
3. 교육시설 인근(학교·학원 등)
4. 상업 및 문화시설 주변(도심지)

-
5. 병원, 복지관 및 공공시설 주변
 6. 기타()

F8. 귀하는 양육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시 어떠한 환경을 고려하여 당첨 우선순위(가점, 조건 등)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RANK: 2]

1. 혼인기간
2. 부부의 나이
3. 자녀 수
4. 자녀의 나이
5. 소득규모
6. 맞벌이 유무
7. 자산

F9-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양육친화적 주거 요소를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면적(전용공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용공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40㎡ 미만(약 12평 미만)
2. 40~60㎡ 미만(약 12평~18평 미만)
3. 60~85㎡ 미만(약 18평~25평 미만)
4. 85㎡ 이상(약 25평 이상)

F9-2.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양육친화적 주거 요소를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방의 수는 몇 개입니까?

1. ()개

F9-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양육친화적 주거 요소를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세대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 30세대 미만
2. 30~50세대
3. 51~200세대
4. 201~500세대
5. 500세대 초과

F9-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양육친화적 주거 요소를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전세
2. 보증금 있는 월세

F9-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양육친화적 주거 요소를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보증금은 주변시세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1. 50% 이하
2. 60%
3. 70%
4. 80%
5. 90% 이상

F10.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공임대주택의 계층 혼합(social-mix) 및 세대 혼합(aging-mix)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 F11
2. 아니오 → G1

F11. 귀하께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시 한 건물에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층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RANK: 2]

1. 노인
2. 장애인
3. 다문화
4.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5. 청년



G. 주거지원 시설 및 서비스 방안

// 카테고리(G1): 다음은 주거지원 시설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

G1-1. 다음의 주거지원 시설별 이용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시설까지의 도보 거리를 분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현재 이용여부		도보 거리 (분)
	예	아니오	
	1	2	
1. 야외활동 가능한 장소(뒷밭, 산책장소 등)			1. ()분
2. 운동시설(휘트니스 센터)			2. ()분
3.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			3. ()분
4. 실내 놀이터(키즈카페)			4. ()분
5. 실외 놀이터			5. ()분
6. 공동육아나눔터			6. ()분
7. 어린이집/유치원			7. ()분
8. 도서관			8. ()분
9. 주민자치실			9. ()분

// 현재 이용여부에 '1. 예'인 경우만 도보 거리 응답할 수 있도록 구현 부탁드립니다. //

[로직: A파트에서 출생연도가 2013년~2019년에 해당하는 자녀가 없는데 G1-7.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1. 예'라고 응답한 경우 경고창 출력]

[경고창: 미취학 자녀가 없는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응답해 주십시오.]

[로직: G1-1 현재 이용여부에 '1. 예'인 항목만 제시]

G1-2. 현재 이용하고 계신 주거지원 시설별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1. 야외활동 가능한 장소(뒷밭, 산책장소 등)				
2. 운동시설(휘트니스 센터)				
3.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				
4. 실내 놀이터(키즈카페)				
5. 실외 놀이터				
6. 공동육아나눔터				
7. 어린이집/유치원				
8. 도서관				
9. 주민자치실				

[로직: G1-1 현재 이용여부에 '2. 아니오'인 항목만 제시]

G1-3. 다음의 주거지원 시설별 향후 이용의향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향후 이용의향	
	예	아니오
	1	2
1. 야외활동 가능한 장소(텃밭, 산책장소 등)		
2. 운동시설(휘트니스 센터)		
3.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		
4. 실내 놀이터(키즈카페)		
5. 실외 놀이터		
6. 공동육아나눔터		
7. 어린이집/유치원		
8. 도서관		
9. 주민자치실		

G1-4. 다음의 주거지원 시설 중 양육친화적 주거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RANK: 3]

1. 야외활동 가능한 장소(텃밭, 산책장소 등)
2. 운동시설(휘트니스 센터)
3.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
4. 실내 놀이터(키즈카페)
5. 실외 놀이터
6. 공동육아나눔터
7. 어린이집/유치원
8. 도서관
9. 주민자치실

G2-1. 다음의 주거서비스별 이용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서비스까지의 도보 거리를 분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현재 이용여부		도보 거리 (분)
	예	아니오	
	1	2	
1. 가사지원서비스(장보기/배달 대행, 하우스 클리닝, 세탁서비스 등)			()분
2. 조식서비스			()분
3. 카셰어링			()분
4. 개별창고			()분
5. 무인택배			()분
6. 아이돌봄 서비스			()분
7. 문화센터·주민센터 등의 양육프로그램			()분
8. 양육가구 모임(활동) 지원 서비스			()분

// 현재 이용여부에 '1. 예'인 경우만 도보 거리 응답할 수 있도록 구현 부탁드립니다. //

[로직: G2-1 현재 이용여부에 '1. 예'인 항목만 제시]

G2-2. 현재 이용하고 계신 주거서비스별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1. 가사지원서비스(장보기/배달 대행, 하우스 클리닝, 세탁서비스 등)				
2. 조식서비스				
3. 카셰어링				
4. 개별창고				
5. 무인택배				
6. 아이돌봄 서비스				
7. 문화센터·주민센터 등의 양육프로그램				
8. 양육가구 모임(활동) 지원 서비스				

[로직: G2-1 현재 이용여부에 '2. 아니오'인 항목만 제시]

G2-3. 다음의 주거서비스별 향후 이용의향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향후 이용의향 [단수]	
	예	아니오
	1	2
1. 가사지원서비스(장보기/배달 대행, 하우스 클리닝, 세탁서비스 등)		
2. 조식서비스		
3. 카셰어링		
4. 개별창고		
5. 무인택배		
6. 아이돌봄 서비스		
7. 문화센터·주민센터 등의 양육프로그램		
8. 양육가구 모임(활동) 지원 서비스		

G2-4. 다음의 주거서비스 중 양육친화적 주거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RANK: 3]

1. 가사지원서비스(장보기/배달 대행, 하우스 클리닝, 세탁서비스 등)
2. 조식서비스
3. 카셰어링
4. 개별창고
5. 무인택배
6. 아이돌봄 서비스
7. 문화센터·주민센터 등의 양육프로그램
8. 양육가구 모임(활동) 지원 서비스

G3. 다음의 주변환경 항목별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1. 의료시설(병원·의료복지시설 등)				
2. 문화시설 접근용이성(극장·공연장·박물관 등)				
3. 교육환경(학교·학원 등)				
4. 보육환경(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서비스 등)				
5.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G3-1. 다음의 주변환경 항목 중 양육친화적 주거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RANK: 2]

1. 의료시설(병원·의료복지시설 등)
2. 문화시설 접근용이성(극장·공연장·박물관 등)
3. 교육환경(학교·학원 등)
4. 보육환경(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서비스 등)
5.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G4. 주거지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정책적으로 가장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시설확충
2.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3. 저렴한 이용료
4. 시설의 위치 및 이용 시간 등에 대한 정보제공
5. 시설과 서비스(프로그램)의 연계
6. 없음

※ 주거지원 시설은 운동시설, 방과후 공부방, 실내 놀이터, 실외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입니다.

G5. 귀하께서 위의 주거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문가(예: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란? 주거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G6. 귀하께서는 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 G6-1
2. 아니오 → G7

G6-1 공동체 육아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문가
2. 마을공동체(단지 내) 청년/어르신
3. 비슷한 또래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4.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누구나 가능
5. 자원봉사 단체 등
6. 기타()

G6-2 공동체 육아를 위해 재능기부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G7. 귀하는 정부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2.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양육관련 시설의 확대
3. 주택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지원 확대
(신청자격완화, 대출기준금리인하, 대출한도확대, 대출기간연장, 신청가능 대상주택 규모 확대 등)
4.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우선)공급,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등의 확대·공급 등)
5. 아동이 이용가능한 주거서비스 확대(아이돌봄서비스 등)
6.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사/생활지원 등의 주거서비스 확대



H. 배경 질문

배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배문3.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 졸업
3. 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4.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 주양육자는 현재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 배문4-1
2. 아니오 -> 배문5

배문4-1.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 주양육자의 근무형태는 어떠한가요?

1. 정규직 상용근로자(풀타임 근무)
2. 비정규직 상용근로자(풀타임 근무)
3. 임시/일용직근로자(파트타임 근무 포함)
4.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6. 기타()

배문4-2.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 주양육자의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 시간은 어떠한가요?

1.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일
2.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시간

배문4-3.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 주양육자가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출퇴근 시간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하는 수단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승용차
2.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등)
3. 택시
4. 도보
5. 자전거
6. 오토바이
7. 재택근무
8. 기타()

[로직: 배문4-3=1~6, 8 인 경우만 응답]

배문4-4. [제시: 조사대상 자녀의 출생연도]년생 자녀 주양육자가 집에서 직장/근무처까지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 편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편도 ()시간 ()분

[로직: B10-1에 응답이 있는 경우만 주택자산 관련 제시문 출력]

배문5. 귀댁의 주택 자산은 얼마입니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주택 가격: [제시: B10-1]만원

1. 0만원(주택자산 없음)
2. 5,000만원 미만
3. 5,000만원~1억원 미만
4. 1억~2억원 미만
5. 2억~3억원 미만
6. 3억~5억원 미만
7. 5억~10억원 미만
8. 10억원 이상

[로직: B10-1에 응답이 있는 경우만 주택자산 관련 제시문 출력]

[로직: B10-2에 응답이 있는 경우만 보증금 관련 제시문 출력]

배문6. 귀댁의 총 자산은 얼마입니까?

※ 자산은 부동산 자산(주택, 건물, 토지)과 금융자산(임차보증금, 예금, 적금, 보험 등) 그 외 기타자산(농기계, 농·축·수산물의 재고자산, 골동품, 자동차,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앞에서 응답한 주택자산 [제시: B10-1]만원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앞에서 응답한 보증금 [제시: B10-2]만원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1. 0만원(자산 없음)
2. 5,000만원 미만
3. 5,000만원~1억원 미만
4. 1억~2억원 미만
5. 2억~3억원 미만
6. 3억~5억원 미만
7. 5억~10억원 미만
8. 10억원 이상

-
- [로직: 배문5=2이면 배문6의 보기 1 숨김]
 - [로직: 배문5=3이면 배문6의 보기 1~2 숨김]
 - [로직: 배문5=4이면 배문6의 보기 1~3 숨김]
 - [로직: 배문5=5이면 배문6의 보기 1~4 숨김]
 - [로직: 배문5=6이면 배문6의 보기 1~5 숨김]
 - [로직: 배문5=7이면 배문6의 보기 1~6 숨김]
 - [로직: 배문5=8이면 배문6=8 자동 코딩 후, 조사 완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본 19-20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연구진 김지혜, 이재춘, 이길제, 김정인, 조한진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쇄 2019년 11월 27일

발행 2019년 11월 30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가격 7,000원

I S B N 979-11-5898-478-6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9,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시시오.

김지혜, 이재춘, 이길제, 김정인, 조한진. 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A Study on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3장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현황 분석

제4장 양육가구 주거지원 현황 및 개선점 도출

제5장 국내 양육친화 주거지원 및 국외정책 분석

제6장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